

연구보고 2016-30

#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은 유아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자료로써 유아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수준의 교육비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비가 충족된 상태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 규모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표준유아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4차년도 연구로써 2013년부터 설정한 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으며,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산출모형(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유아교육의 향후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현장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조사에 협조해주신 공·사립유치원의 원장(감), 교사, 회계담당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애정을 담아 조언해주신 관련 학계 교수님,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2. 연구 내용 .....	14
3. 연구 방법 .....	16
4. 용어의 정의 .....	19
II. 연구의 배경 .....	22
1. 선행연구 분석 .....	22
2. 관련 법규 .....	27
3. 유아교육 재정 지원 현황 .....	29
4. 유럽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	38
III. 유치원 교육비 현황 .....	45
1.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	45
2. 비용함수를 활용한 유아교육비 산출 .....	67
3. 소결 .....	79
IV.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81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	81
2. 표준인건비 산출 .....	94
3.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	104
4. 표준공동운영 경비 산출 .....	108
5. 표준유아교육비 규모 .....	116
V.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모형 개발 .....	128
1.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분석 .....	128
2.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	136
3.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 .....	138
4. 소결 .....	143

VI. 논의 및 제언 .....	145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에 대한 논의 .....	145
2. 유아교육비 지원의 쟁점 .....	147
3.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을 위한 제언 .....	152
참고문헌 .....	154
Abstract .....	159
부록 .....	161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	163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68

## 표 차례

〈표 I-3- 1〉 분석자료 수집 대상 유치원 표본 수 .....	16
〈표 I-3- 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배경 .....	17
〈표 I-3- 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	18
〈표 I-3- 4〉 참여자 정보 및 내용 .....	19
〈표 II-2- 1〉 누리과정 관련 법령 연혁 및 현황 .....	27
〈표 II-3- 1〉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	29
〈표 II-3- 2〉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예산 .....	30
〈표 II-3- 3〉 2014년도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결산 .....	31
〈표 II-3- 4〉 항목별 예산: 2010-2014 .....	32
〈표 II-3- 5〉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2014 .....	33
〈표 II-3- 6〉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변화 추이 .....	34
〈표 II-3- 7〉 OECD 국가의 GDP대비 총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비율(2011) .....	34
〈표 II-3- 8〉 2015년 유아학비 지원 체계 .....	35
〈표 II-3- 9〉 3-5세 유아학비 지원 현황: 2014 .....	35
〈표 II-3-10〉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율 .....	36
〈표 II-3-11〉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	36
〈표 II-3-12〉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 예산 .....	37
〈표 III-1- 1〉 공립유치원 세출세부내역 .....	45
〈표 III-1- 2〉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	47
〈표 III-1- 3〉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	48
〈표 III-1- 4〉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	49
〈표 III-1- 5〉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	50
〈표 III-1- 6〉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	51
〈표 III-1- 7〉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	52
〈표 III-1- 8〉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	53
〈표 III-1- 9〉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	54
〈표 III-1-10〉 기관 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	55
〈표 III-1-11〉 기관 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	56

〈표 III-1-12〉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세부내역 .....	56
〈표 III-1-13〉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	57
〈표 III-1-14〉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	58
〈표 III-1-15〉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	59
〈표 III-1-16〉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	60
〈표 III-1-17〉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	60
〈표 III-1-18〉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	61
〈표 III-1-19〉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	62
〈표 III-1-20〉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	63
〈표 III-1-21〉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	64
〈표 III-1-22〉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	65
〈표 III-1-23〉 지역 규모별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비교: 인건비 제외 .....	66
〈표 III-1-24〉 기관 규모별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비교: 인건비 제외 .....	66
〈표 III-2- 1〉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분석 결과 비교 .....	71
〈표 III-2- 2〉 국·공립유치원 학생 및 학급 수 현황 .....	72
〈표 III-2- 3〉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 현황 및 유아교육비 .....	73
〈표 III-2- 4〉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분석 결과 비교 .....	75
〈표 III-2- 5〉 사립유치원 학생 및 학급 수 현황 .....	75
〈표 III-2- 6〉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 현황 및 유아교육비 .....	76
〈표 IV-1- 1〉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수 현황(2013-2015) .....	83
〈표 IV-1- 2〉 표준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	83
〈표 IV-1- 3〉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현황(2013-2015) .....	84
〈표 IV-1- 4〉 유치원 규모별 표준원아 수 모형 .....	84
〈표 IV-1- 5〉 학급 수별 표준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2015 .....	85
〈표 IV-1- 6〉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직원 수 현황(2013-2015) .....	86
〈표 IV-1- 7〉 표준유치원 인력 배치 기준 .....	87
〈표 IV-1- 8〉 규모별 표준교직원 수 모형 .....	87
〈표 IV-1- 9〉 학급 수별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2015 .....	88
〈표 IV-1-10〉 학급 수별 표준정규직 행정직원 수와 실제 행정직원 수: 2015 .....	89
〈표 IV-1-11〉 규모별 비정규직 표준직원 수 모형 .....	91
〈표 IV-1-12〉 규모별 전체 표준교직원수 모형 .....	91



〈표 IV-1-13〉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및 방법 .....	92
〈표 IV-2- 1〉 공립유치원 교원의 호봉과 기본급(2013-2015) .....	95
〈표 IV-2- 2〉 사립유치원 교원의 호봉 분포(2013-2015) .....	97
〈표 IV-2- 3〉 유치원 교원 1인당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	98
〈표 IV-2- 4〉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 .....	99
〈표 IV-2- 5〉 공·사립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	100
〈표 IV-2- 6〉 공·사립유치원 규모별 표준인건비 .....	100
〈표 IV-2- 7〉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	101
〈표 IV-2- 8〉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	102
〈표 IV-3- 1〉 경비지출단위별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2015 .....	104
〈표 IV-3- 2〉 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	105
〈표 IV-3- 3〉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 2016 .....	105
〈표 IV-3- 4〉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 .....	107
〈표 IV-4 1〉 학습보조 및 행정보조 인건비(1인당 평균) .....	108
〈표 IV-4 2〉 공·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결과 .....	109
〈표 IV-4 3〉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지비 산출 결과·	110
〈표 IV-4 4〉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지비 산출 결과·	110
〈표 IV-4 5〉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	111
〈표 IV-4 6〉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	111
〈표 IV-4 7〉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	113
〈표 IV-4 8〉 공·사립유치원 수·학급 수·표준원아 수 .....	113
〈표 IV-4 9〉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 경비 .....	114
〈표 IV-4-10〉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 .....	115
〈표 IV-5- 1〉 총 표준유아교육비(표준 모형) .....	117
〈표 IV-5- 2〉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비교: 2012-2016 .....	118
〈표 IV-5- 3〉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	119
〈표 IV-5- 4〉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	119
〈표 IV-5- 5〉 총 표준유아교육비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실제 원아 수 기준) ...	121
〈표 IV-5- 6〉 총 표준유아교육비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인건비 제외) ...	123
〈표 IV-5- 7〉 유치원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	124
〈표 IV-5- 8〉 유치원 규모별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	124

〈표 IV-5- 9〉 공립유치원 학급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 .....	125
〈표 IV-5-10〉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별 비중 .....	126
〈표 IV-5-11〉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학급 규모별 증가 수준 .....	126
〈표 IV-5-12〉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	127
〈표 V-1- 1〉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개념 비교 .....	128
〈표 V-1- 2〉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모형 비교 .....	130
〈표 V-1- 3〉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비교 .....	131
〈표 V-1- 4〉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항목 및 산출방법 비교 .....	134
〈표 V-2- 1〉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유아교육비 ..	136
〈표 V-2- 2〉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보육료 ..	136
〈표 V-2- 3〉 세부 구성요소 중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 .....	137
〈표 V-3- 1〉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	139
〈표 V-3- 2〉 규모별 이용아 수 .....	140
〈표 V-3- 3〉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 비교 .....	140

## 그림 차례

[그림 I-2-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	15
[그림 I-4-1]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및 구성 .....	20
[그림 II-2-1] 누리과정 재정 분담 추이 .....	28
[그림 II-4-1] 유아교육보육 기관 재정 지원의 책임: 2012~2013 .....	39
[그림 II-4-2] 주당 무상 유아교육·보육 시간: 2012~2013 .....	40
[그림 II-4-3]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 유형 .....	41
[그림 II-4-4]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월비용(PPS): 2012~2013 .....	42
[그림 IV-1-1]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	82
[그림 IV-1-2] 학급 수별 표준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차이 .....	85
[그림 IV-1-3] 학급 수별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차이 .....	89
[그림 IV-1-4] 학급 수별 표준직원 수와 실제 직원 수 차이 .....	90
[그림 IV-2-1] 공·사립유치원 표준인건비 비교 .....	102
[그림 IV-2-2]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비교: 2015-2016 .....	103
[그림 IV-3-1]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비교: 2015-2016 .....	107
[그림 IV-4-1] 공·사립유치원 공통운영비 항목별 비교 .....	112
[그림 IV-4-2]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비교: 2015-2016 .....	116
[그림 IV-5-1] 총 표준유아교육비 항목별 비중 .....	117
[그림 IV-5-2]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추이: 2012-2016 .....	118
[그림 IV-5-3]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추이: 2012-2016 .....	120
[그림 V-3-1] 모형 개발 절차 .....	138
[그림 V-3-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1안 .....	141
[그림 V-3-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2안 .....	142
[그림 V-3-4]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3안 .....	142
[그림 V-3-5]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4안 .....	143
[그림 VI-2-1] 유아교육재정 지원체계 개편(안) .....	152

## 부 록 표 차 례

〈부록 표-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	168
〈부록 표- 2〉 표준인건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68
〈부록 표- 3〉 표준교육활동경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69
〈부록 표- 4〉 표준공통운영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69
〈부록 표- 5〉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	170
〈부록 표- 6〉 인건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71
〈부록 표- 7〉 교재교구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71
〈부록 표- 8〉 관리운영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73
〈부록 표- 9〉 식단가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74
〈부록 표-10〉 시설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	174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함. 이는 추가 유아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것임.
  - 본 연구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4차년도 연구로, 기존 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또한,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산출모형, 산출방식 등을 비교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표준유아교육·보육비 산출 모형 제시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유아교육비와 보육료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 항목, 산출 기준 및 모형, 산출 방법 등을 검토하고, 유아교육비 관련 법규와 정부의 유아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함.
  - 수입·지출 구조 분석을 위해 유치원 예·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과 부모부담 비용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함수에 근거한 유아교육비 수준을 검토함.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에 근거해 기관유형별, 규모별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변화 추이, 유아교육비 규모를 분석함.
  -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 개발함.
-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함.
  - 유아교육비 관련 법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정책 검토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교육비 산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

-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2014년 유치원별 세출결산서를 분석함. 2013년 표집한 804개의 표본을 기준으로 최종 공립 196개, 사립 413개 등 총 609개원을 분석에 사용함.
  - 표준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안)을 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853명의 의견을 조사함.
  - 연구방향 설정, 설문지 문항 검토, 정책 자문을 위해 현장 및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검토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아 1인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기타 경비를 말함.

## 2. 연구의 배경

### 가. 선행연구 분석

- 표준유아교육비는 산출항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값이 상이하게 나타남. 보육료 산출 모형은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과 유사함.
-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 연구 비교 시, 유아교육비·보육료 구성항목과 산출 항목, 산출 방식 등에서 차이 보임.
- 전문가판단 모형에 기초한 표준교육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함. 대안으로 비용함수모형 등 다양한 산정 모형 적용이 강조됨.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에도 다양한 모형들을 함께 연구하여 타당성 제고할 필요 있음.

### 나. 관련 법규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하면서 누리과정 제공받는 만 5세의 유아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함.

-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함. 또한 누리과정비를 의무지출 경비로 추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함.

#### 다. 유아교육 재정 지원 현황

- 2014년 유아교육 총 예산액은 5조 3,042억 원이며, 전체 결산액은 약 4조 9,814억 원임.
-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연간 약 560만 원(월 평균 46만 원)이며, 2014년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556만 원(월 평균 46만 원)을 초과한 수치임. 유아교육예산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해 OECD 권고 수치인 1%를 상회할 것을 예측됨.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함. 2014년 3~5세 유아학비 지원액은 1조 4,343억 원임.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 예산에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사립유치원 원당 평균 약 45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49%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교사처우개선비' 과 '담임수당'이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음.

### 3. 유치원 교육비 현황

#### 가.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 2014년 세출결산서를 활용하여 지역 규모별, 유치원 규모별로 분석하고 원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여 유형별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를 제시함.
  - 공·사립간의 회계현황 보고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교육비 현황을 분석함.
- 공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세출총액은 4억 7,580만 원이

었으며, 이를 원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1만 1천 원임.

- 항목별 지출을 살펴본 결과,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액이 1억 8,240만 원이고 지출 비율 37.3%로 가장 높음.
  -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하면 공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4억 5,630만 원으로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9만 4천 원임.
- 사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립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5억 4,77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원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4만 6천 원임.
- 그 중 인건비로 2억 5,9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총지출의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2억 8,910만 원이고,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24만 6천 원임.
- 지역 규모별로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인건비 제외)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공립유치원(인적자원 운용비 제외)의 연평균 세출총액보다 현격하게 낮음.
- 기관 규모별 세출결산을 비교해 보아도 공·사립 간 큰 격차를 보임.
- 공·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지역 규모별 세출결산을 비교하면, 공·사립유치원 모두 중소도시 지역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산출되었으며, 기관 규모별로는 공립은 소규모 기관이, 사립은 대규모 기관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나타남.

#### 나. 비용함수를 활용한 유아교육비 산출

-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2개의 공립유치원과 482개의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여건을 고려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함.
- 연구의 최종모형은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lambda_i + \tau_t + e_{it}$  와 같음.
- 교육비용함수에 의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원아 1인당 월별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면 53만 5천 원임.



- 교육비용함수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원아 1인당 월별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면 13만 1천 원으로 산출됨.

#### 다. 소결

- 공립유치원의 지출 현황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총액 규모는 중소도시 7억 4,180만 원, 읍면지역 6억 790만 원, 대도시 3억 2,810만 원이고,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기관 3억 5,800만 원, 중규모기관 4억 5,730만 원, 대규모기관 6억 5,0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유치원의 지출 총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6억 2,140만 원, 중소도시 5억 4,830만 원, 읍면지역 4억 3,400만 원이고, 기관 규모별로는 대규모 8억 9,350만 원, 중규모 5억 1,790만 원, 소규모 2억 8,690만 원임.
-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결산을 2014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표준유아교육비의 표준원아 1인당 비용(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과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17만 8천 원, 사립유치원 20만 3천 원으로 사립은 실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과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2배 이상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 결산자료(2012년~2014년)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모형이라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학급당, 원아당 경비를 단위 유치원별로 산출한 결과,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사립유치원의 낮은 수준의 원아 1인당 월별 금액을 나타냄.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모든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 운영비의 회계항목으로 인건비를 모두 제외하고 종속변수를 구성한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연구(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와 동일한 개념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정의함.

- 표준유아교육비 정의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률상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 하면서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함(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동운영경비를 반영하고, 합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 표준원아 수는 3세반 15명, 4세반 20명, 5세반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유치원 규모별 학급편성 모형에 적용함.
  - 표준원아 수를 실제 학급별 원아 수와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실제 원아 수는 표준원아 수보다 15,847명 적고, 사립유치원은 표준보다 실제 원아 수가 60,199명 더 많음.
- 표준교직원 수는 10학급 이상의 극대규모 유치원에는 2명의 원감을 배치하고, 부장교사는 모형에서 제외한 2015년 연구(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의 기준을 적용함.
  -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를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실제 교직원이 12,598명 더 많고, 사립은 실제 교직원 수가 5,965명 더 많음.
  - 정규직 행정직원 수를 비교하면 공립의 경우 실제 직원 수가 164명 많으나, 사립은 597명 적음.
  - 비정규직 표준교직원 수 모형은 2015년 연구(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에 따름.
-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와 표준공동운영 경비는 공·사립별로 구분하고, 표준교육활동경비와 표준공동운영 경비는 경비지출 단위별로 산출함.
  - 학급단위와 원아단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결과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유치원 규모에 따른 학급 수, 원아 수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따름(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 나. 표준인건비 산출

- 표준인건비 구성요소는 기본급과 제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 부담금임.
  - 공립유치원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3,566만 5천 원으로, 이에 가장

근접한 24호봉을 공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기준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은 교원 1인당 연 평균 2,531만 4천 원으로, 14호봉을 기준으로 함.

- 인건비 중 기본급을 제외한 비용인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은 2015년 연구(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결과를 기준으로 당해 기본급 변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직원의 인건비 기준은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3; 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우명숙 외, 2012)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으로 함.
- 기본급과 제수당, 맞춤형복지, 법정부담금을 합산한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공립유치원 5,671만 1천 원, 사립유치원 4,000만 3천 원임.
-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는 2조 1,037억 원이고,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연 평균 329만 원, 월 27만 5천 원임.

#### 다.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 구성되고, 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 산출되며, 설비비의 경우 교직원단위 비용을 유치원단위 비용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2015년 시점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반영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에서 산출된 값을 원용함.
- 유치원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549억 2,718만 원, 사립유치원 498억 3,868만 8천 원, 학급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829억 3,542만 6천 원, 사립유치원 2,231억 7,758만 4천 원, 원아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115억 7,122만 2천 원, 사립유치원 301억 5,038만 1천 원임.
- 전체 유치원의 교육활동경비 총액은 4,526억 48만 1천 원으로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연평균 71만 원, 월평균 5만 9천 원임.

#### 라.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 선행연구 결과와의 일관성, 산출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결과를 활용함.
-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육부(2014b) '2015년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

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 결과를 준용함.

-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는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 결과에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공립 단설유치원의 공통운영비는 중간 규모인 5학급 기준 총 2억 459만 6천 원인 반면, 공립 병설유치원은 6,604만 4천 원이고, 사립유치원의 공통운영비는 1억 8,370만 원임.
-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연간 168만 9천 원, 월평균 14만 1천 원이며,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은 공립유치원이 2,264억 742만 7천 원, 사립유치원이 8,509억 1,059만 2천 원으로 총 1조 773억 1,801만 9천 원임.

#### 마. 표준유아교육비 규모

-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3조 6,336억 4,404만 6천 원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이 1조 162억 130만 4천 원, 사립유치원이 2조 6,174억 4,274만 2천 원임.
- 표준유아교육비를 구성하는 3가지 항목 중에서는 표준인건비의 비중이 57.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표준공통운영 경비 29.6%, 표준교육활동 경비 12.5% 순임.
-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569만 6천 원, 월평균 47만 5천 원이고, 공립유치원이 574만 4천 원, 사립유치원이 567만 8천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다소 높음.
- 실제 원아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532만 6천 원, 월평균 약 44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530만 9천 원(월평균 약 53만 원), 사립유치원이 502만 2천 원(월평균 약 42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월평균 11만 원 정도 높게 산출됨.
- 표준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5,299억 1,850만 원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이 3,758억 4,125만 5천 원, 사립유치원이 1조 1,540억 7,724만 5천 원이며,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239만 8천 원, 월평균 20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212만 4천 원(월평균 약 18만 원), 사립유치원이 250만 3천 원(월평균 약 21만 원)임.

- 실제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액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관 규모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대규모 1조 4,215억 248만 3천 원, 중규모 1조 2,866억 8,741만 3천 원, 소규모 9,254억 5,415만 원이고,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소규모 145만 1천 원, 중규모 201만 7천 원, 대규모 222만 8천 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함.

## 5.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모형 개발

### 가.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분석

- 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은 인건비, 교육활동비, 공통운영비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보육료는 급간식비와 시설설치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됨.
  - 세부 항목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유아교육비용의 인건비 구성항목은 정규직 교원 인건비만 포함하고, 기본급, 제수당, 맞춤형복지,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되나 보육비용은 비정규직 교원 인건비를 포함하며,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으로 구성됨.
- 유아교육비는 교육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반면 보육료는 실태조사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있음.
  - 인건비의 교원 급여 산정 시 교육통계자료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기준 호봉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비 산출 방법과 달리 보육료 산출은 실태조사에 근거한 시설유형별 호봉을 기준으로 함.

### 나.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을 위해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표준인건비의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이었음.
- 표준보육료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교재교구비의 소모품, 관리운영비의 회의비, 여비, 차량비로 나타났으며, 시설비에

서는 건축비 및 놀이터건축비로 응답됨.

- 이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항목 및 구성요소 중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가 모두 표준보육료의 비품 및 소모품은 관리운영비로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

-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함.
-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하며, 이에 따라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를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로 명명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원과 시설 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므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로 구분함.
- 교재교구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구와 설비, 재료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며,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기에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한 안을 1안으로 제시함.
-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안(인건비 포함), 3안(급간식비 포함), 4안(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을 추가함.

#### 라. 소결

-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산출은 비용 산출을 위한 개념에서부터 기관의 설립 배경,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항목, 산출 기준 등에

서 차이가 존재함.

- 이에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 개발을 위해서 동일한 조건 (상황)을 전제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공통 항목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현장의 요구,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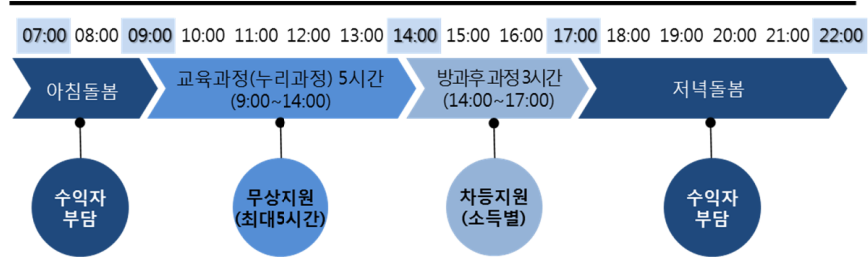
## 6. 논의 및 제언

###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에 대한 논의

- 표준유아교육비 개념에 대한 오해: 표준유아교육비 vs 1인당 지출 비용
  -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유아교육지출에 대한 유아 1인당 비용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의 활용: 예산 배분 vs 예산 확보
  - 원비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
  - 유아교육비 현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

### 나. 유아교육비 지원의 쟁점

- 예산 관련 법령상 쟁점
- 유한한 재정 총량으로 인한 반복적인 갈등
  - 지방교육재정의 유한한 총량
  -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 유아교육재정 지원체계 개편
  - 질 제고를 지향점으로 하는 재정지원 체계 개편



[그림 1] 유아교육재정 지원 체계 개편(안)

-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근거한 비용 지원
- 누리과정 이외 시간에 대한 차등 지원
- 돌봄 시간의 수익자 부담

#### 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제언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 정교화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구성 항목 및 요소 적합성 재검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은 유아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판단자료로써 유아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수준의 교육비(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비가 충족된 상태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은 추가 유아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연구는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을 반영하여 교육활동경비 산출 내역을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급식비,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에 대한 표준액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립유치원의 실제 예·결산 현황 및 유아 1인당 교육비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에 관심을 두고 보다 현실적인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2015년에는 전국 유치원 교육비의 현실 수준을 파악하고,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을 마련하며 이에 근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유아교육 산출을 위한 4차년도 연구로써 2013년부터 설정한 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산출모형, 산출방식 등을 비교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의 측면에서 표준유아교육·보육비 산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유아교육·보육 학계의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인 유·보 간 통합 논의<sup>1)</sup>를 고려할 때, 표준유아교

육·보육비 산출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1인당 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 교육비의 현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예·결산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을 토대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기년도 자료와 연속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질적 수준을 고려한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 항목, 산출 기준 및 모형, 산출 방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유아교육비 관련 법규, 정부의 유아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공·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한 수입·지출 구조 분석을 위해 유치원 예·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과 부모부담 비용 수준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용함수에 근거한 유아교육비 수준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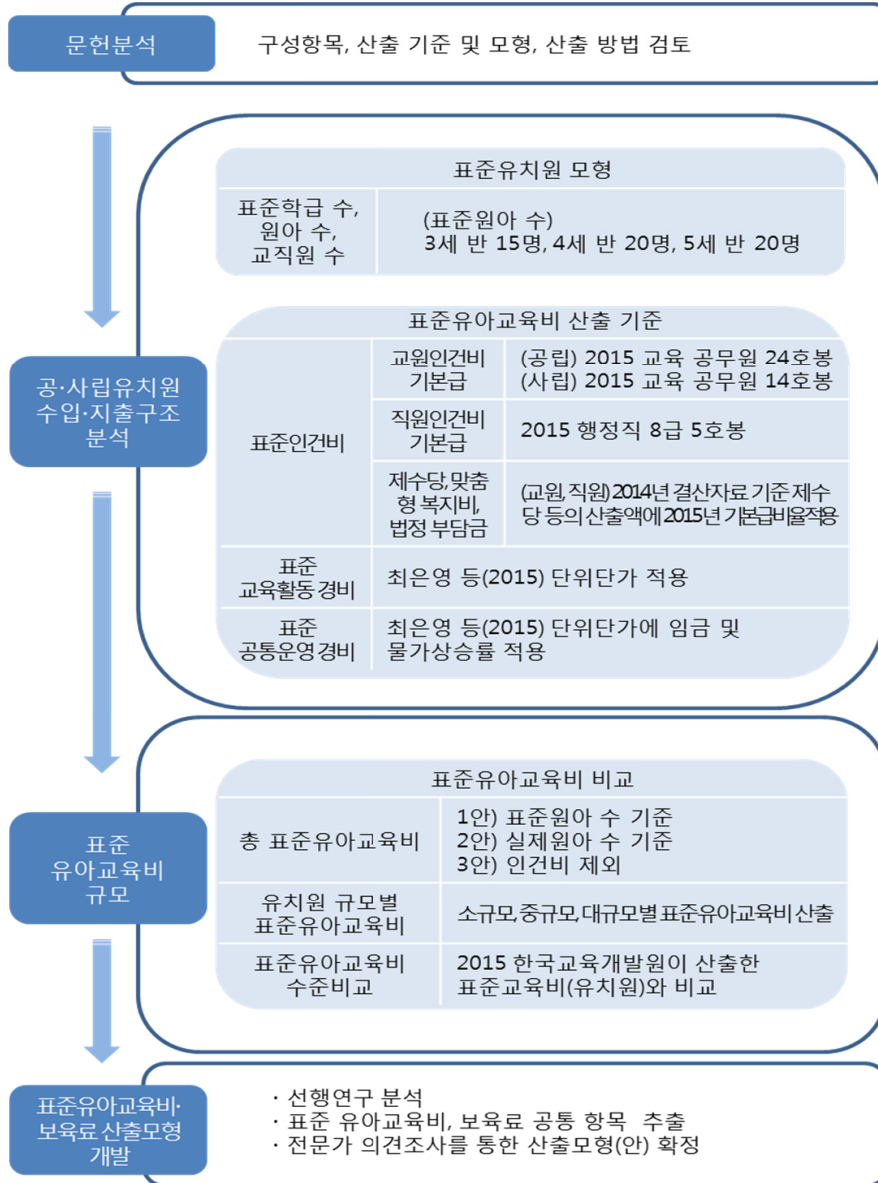
셋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기관유형별, 규모별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유아교육비 규모를 분석한다.

넷째,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을 개발한다.

다섯째, 현행 유아교육비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을 비교하여 유아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영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구성, 항목, 산출방법, 세부 내용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1-2-1]과 같다.

1) 2014년 2월 발족한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2016년까지 단계적인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 중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2. 14).



[그림 1-2-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 3. 연구 방법

#### 가. 문헌 분석

유아교육비 관련 법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교육비 산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나.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도 유치원별 세출결산서이다. 결산 자료는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수집하였다.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연간지출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정보가 상세한 세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표집한 유치원은 2013년 연구 수행을 위해 표집한 804개의 표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양질의 회계 정보를 제공했던 유치원의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본을 유지하여 2014년 세출결산서를 취합하였다. 분석을 위해 최종 선택된 유치원은 공립 196개, 사립 413개 등 총 609개원이다.

〈표 1-3-1〉 분석자료 수집 대상 유치원 표본 수

단위: 개원

지역	설립 유형	기관 규모(원아 수)			계	
		소 (60인 이하)	중 (61~120인 이하)	대 (121인 이상)		
대도시	공립	단설	-	5	19	24
		병설	40	48	4	92
		사립	46	62	67	175
중소도시	공립	단설	-	33	11	44
		병설	5	-	-	5
		사립	48	54	22	124
읍면	공립	단설	1	17	10	28
		병설	3	-	-	3
		사립	38	51	25	114
계			181	270	158	609

자료: <http://e-childschoolinfo.mest.go.kr>

유치원의 원아 수 규모는 교육비 산정을 다르게 만드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 2012), 유치원규모를 고려하여 60명 이하를 소규모, 61명 이상 120명 이하를 중규모, 121명 이상을 대규모 유치원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학급을 20명 정도로 보았을 때 연령별 1개 총 3개 학급으로 유치원이 구성된 경우 소규모로, 연령별 2개 학급, 총 6개 학급까지를 중규모로 본 결과이며, 1차년도 연구와 동일한 방식이다(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 2013). 한편 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재정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단설유치원 위주로 교육비 현황을 수집하였으나 병설유치원 중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 정보가 있는 경우(독립회계 운영 등)에는 이를 포함하였다.

#### 다.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 1) 조사 대상 및 방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853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6년부터 9월부터 10월 중순 까지 약 한 달 간 웹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일반 배경은 총 853명 중 유치원이 49%, 어린이집이 51%로 나타났다.

유치원(49%) 응답자 중 공립단설 1.8%, 공립병설 22.0%, 사립법인 6.9%, 사립사인 18.3%였고, 어린이집(51%) 응답자 중 국공립이 8.8% 사회복지법인 2.1%, 법인·단체 4.2%, 민간 18.5%, 직장 5.0%, 가정 12.3%로 나타났다. 기관의 소재 지역은 대도시가 54.9%, 중소도시 27.3%, 읍면지역이 17.8%였다. 응답자의 직위는 원장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15.9%, 원감 14.2%, 부장교사 10.7%, 기타 7.4%로 나타났다.

〈표 1-3-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배경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단위: %(수)
			전체		100.0(853)
설립 유형	유치원	49.0(418)	기관 소재지역	대도시	54.9(468)
	공립단설	1.8( 15)		중소도시	27.3(233)
	공립병설	22.0(188)		읍면지역	17.8(152)

(표 I-3-2 계속)

구분	전체	구분	전체
사립법인	6.9( 59)	원장	51.8(442)
사립사인	18.3(156)	원감	14.2(121)
어린이집	51.0(435)	직위	부장교사
국공립	8.8( 75)	교사	10.7( 91)
사회복지법인	2.1( 18)	기타	15.9(136)
법인·단체	4.2( 36)		7.4( 63)
민간	18.5(158)		
직장	5.0( 43)		
가정	12.3(105)		

## 2) 조사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은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 표준보육료 산출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로 구성하였다. 관련 교수 5인, 어린이집 원장 3인, 유치원 원장(감) 4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I-3-3> 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3-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분	문항내용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 표준유아교육비의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
	- 표준보육료의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
	- 표준 유아교육·보육비 산출 필수 항목 및 구성요소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연구방향 설정, 설문지 문항 검토, 정책 및 제언 자문을 위해 현장 및 학계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3-4>와 같다.

〈표 1-3-4〉 참여자 정보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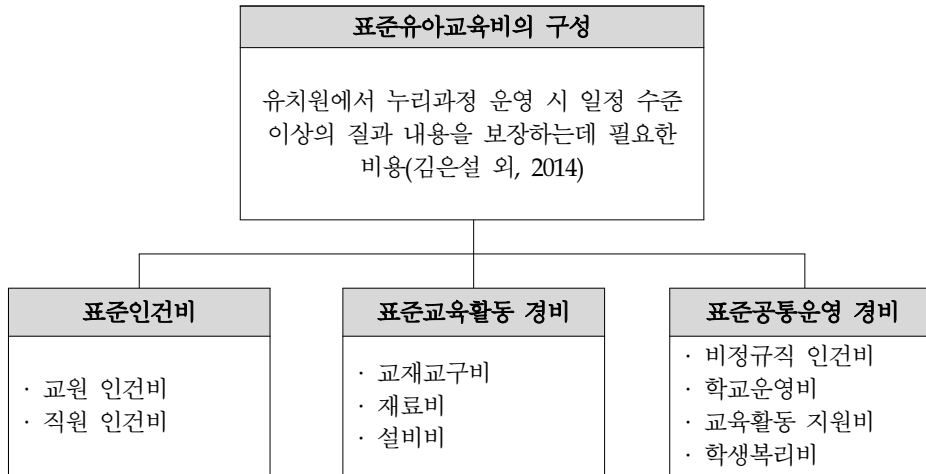
일시	대상	직위	내용
2016. 6. 7	학계	선임 연구위원	- 표준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항목 검토 -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공통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7. 18	학계	교수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7. 20	학계	교수	
2016. 8. 8~12	학계	교수 5인	- (서면자문)전문가의견조사지 검토
2016. 8. 10	어린이집	원장 3인	- 표준 유아교육·보육비 산출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8. 17	유치원	원장(감) 4인	
2016. 11. 24~30	학계	교수 3인	- (서면자문)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모형 적합성 검토
2016. 12. 2	어린이집	원장 2인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원감 1인	
	유치원	부장교사 1인	
2016. 12. 2~8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2인 원장 3인	- (서면자문)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12. 8~15	학계	교수 2인, 사무관 1인	- (서면자문)연구결과 및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12. 15	학계	교수 2인	- 국외사례 검토 및 정책 제언 논의
2016. 12. 16	학계	선임 연구위원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 검토 및 정책 제언 논의

## 4. 용어의 정의

### 가. 표준유치원 모형

본 연구에서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의한 ‘표준원아 수’, ‘표준교직원 수’, ‘표준학급 수’ 등의 조작적 용어를 쓰고 있다. 선행연구인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의 정의에 근거하여 ‘표준유치원 모형’은 유치원을 학급으로 구성된 학교로 볼 때 3세, 4세, 5세 각각 연령 단위 학급별로 15명, 20명, 20명씩 유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높은 연령부터 차례로 학급이 증가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그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교직원 인력을 배치하며, ‘고등학교 각급 학교 시설·설비 규정’에 제시된 유치원 면적 기준을 준수한 형태를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 모형에 의해 산출되는 학교규모별 유아 수, 교직원 수, 학급 수 등을 각각 ‘표준유아 수’, ‘표준교직원 수’,

‘표준학급 수’(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라고 칭하였다.



[그림 1-4-1]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및 구성

## 나. 표준유아교육비

‘표준유아교육비’는 본 보고서의 선행연구인 김은설 등(2013)의 정의에 근거하여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아 1인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를 말하며, 이 때 적정 수준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20(3세는 1:15)임을 포함한다.

### 1) 표준인건비

본 연구에서 표준인건비는 ‘단위 유치원이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에 제시된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원과 직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경비’(우명숙·박은혜·김지하·김현철·김중환·김지만·이정식·김상희, 2012: 23)로 정의한다. 다만 선행연구와 같이 표준인건비 대상은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하고, 비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는 공통운영경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우명숙 외, 2012; 김은설 외, 2013). 표준인건비는 정규직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별 기본급, 제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2)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우명숙 등(2012: 34)의 개념 정의에 준하여 '개별 유치원이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정의한다(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교구비, 설비비와 재료비로 구성되며, 각 특성에 따라 유치원단위<sup>2)</sup>, 학급단위<sup>3)</sup>, 원아단위<sup>4)</sup>의 지출단위로 분류되어 산출된다.

## 3) 표준공통운영 경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유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유치원 고유의 목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120)이다. 공통운영비의 4가지 구성요소는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지비이며, 각 구성요소별 지출단위는 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 교직원단위, 면적단위, 기타(실 수, 관리실 수 등)이다.

- 
- 2) 유치원단위는 2개 학급 이상 또는 여러 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 설비에 필요한 경비로서 학교전체 차원에서 소요물량이 결정됨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경비에 차이가 있다.
  - 3) 학급단위는 전체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량(경비)으로 1학급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4) 원아단위는 전체 학생에게 소요되는 물량(경비)으로 학생 1인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배경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출 항목, 기준, 산출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유아교육비 관련 법규, 정부의 유아교육비 예산과 유아교육 정책사업 현황을 제시하여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비 규모를 파악하였다.

### 1. 선행연구 분석

####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관련 연구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구자가 '표준'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에 따른 구성 항목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산출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항목과 기준,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경석(2003)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학급 당 원아 수를 25명으로 설정하여, 유치원의 수업과정(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과 학급 규모(1, 2, 3, 4, 5, 6학급)에 따른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는데,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항목은 표준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동운영경비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3영역의 소요 경비를 경비지출단위별로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김현숙(2008)은 시설규모(2학급, 3학급, 5학급, 8학급, 11학급), 설립유형(사립, 국공립), 서비스제공시간(연장제, 종일제)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를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표준교육활동경비와 유사), 관리운영비(표준공동운영경비와 유사), 시설설치비의 5개 항목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한편 문무경, 천세영, 황현주, 이성은, 이진경(2013)의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 규모(50명 이하 소규모, 51명~150명 중규모, 151명 이상의 대규모), 전체규모, 운영시간(반일, 종일, 시간연장)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 항목은 인건비(교원 인건비, 사무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공동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교수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

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시설비(시설설치비가 아닌 시설유지비), 교육활동경비(교과활동 관련 설비비 및 재료비)로 구성되며, 유치원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산출항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값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 항목에 따라 현실적 비용과 이상적 비용 중 무엇을 채택하는지, 교원과 유아 1인당 비용 산출 시 표준모형에 의한 표준교직원 수와 표준원아 수/실제 교직원 수와 원아 수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산출 결과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준유아교육비가 가지는 규범적, 산술적 한 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연속과제의 특성상 매년 달라지는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의 가치를 두고, 이전 연구의 산출 모형에 근거해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 나. 표준보육료 산출 관련 연구

보육료 산출 관련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표준'의 개념 없이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 2013a,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이는 '표준'의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고, 질 제고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된 보육비용이나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에는 표준의 개념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준보육료 개념을 정의한 연구는 보육시설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보육료 관련 선행연구들은 표준보육료 뿐만 아니라 표준보육단가, 표준보육비용 등으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승희와 박지은(2006)은 시설 규모,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는데,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김현숙(2009)은 조세연구원(2005)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보완하여 만 0~5세 벤치마크 표준보육비용, 시설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중앙정부 지원기준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표준보육료의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시설규모별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아동 급간식비(영유아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교재교구비(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

비)로 구성되어 있다(김현숙, 2009).

한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를 산출한 연구들도 수행이 되었는데, 임양미(2010)는 경기도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제시된 시설운영비용 현황을 토대로 경기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만 3~5세 보육료를 산출하였다. 보육료 구성항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재산조성비로 세부항목 중 시설비 대신 재산조성비라는 항목으로 비품 및 토지 등의 자산취득비와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비를 포함하였다. 김혜금, 임양미, 조혜영(2013)의 연구에서는 만 0~2세 가정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를 표준인건비, 표준업무추진비, 표준관리운영비, 표준사업운영비, 시설비의 5개 항목에서 1인당 표준비용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임양미(2013)는 민간어린이집 규모(20인, 50인, 77인)와 운영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12시간 초과)에 따라 만 3세~만 5세 유아반 보육료를 산출하였다. 구성항목별은 임양미(2010)의 연구와 동일하며,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현황을 파악하여 산출된 세부항목들은 김혜금, 임양미, 조혜영(2013)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유아 1인당 보육료를 산출하였다.

종합하면, 보육료 산출 모형은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설유형에 따른 평균비용을 제시하는 유아교육비 연구와 달리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로 보육비용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육료의 시설규모는 20, 50, 77, 97, 124, 142, 169인 기준으로 동일하다. 비용 산출을 위한 자료는 재무회계자료나 실태조사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보육료 산출 연구는 현실적인 비용 수준의 산출 뿐 아니라 향상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를 고려하여 항목별 단가 등이 상향조정된 추가의 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료 구성 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를 포함하며, 연구자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따로 구성하거나, 관리운영비에 포함하기도 한다.

## 다. 유아교육비·보육료 비교 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체계와 기준 등이 상이하여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에도 항목과 기준이 다르나 국가가 연구를 통해 표준 비용을 산정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숙(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와 연장제(6시간)로 나누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제1시나리오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필요비용 수준, 제2시나리오는 국공립유치원의 필요비용 수준에 준거하여 산출하였다. 구성항목은 김현숙(2009)의 연구와 동일하게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김영태와 심익섭(2014)은 보육포털사이트와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내용별로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한 후에 각 변수별로 합산하여 보육료, 교육비를 산출하였는데, 보육료는 보육비, 현장학습, 차량운행, 행사비 및 기타 제비용을 합친 금액이며,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 연장제(5~6시간)로 구분하여 표준보육·교육 단가를 산출하였다. 구성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김현숙(2005, 2009)의 연구들과 항목과 산출방법은 동일하며, 1안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필요비용 수준, 2안은 국공립유치원의 필요비용 수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 연구를 비교하면, 크게는 유아교육비·보육료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육료는 시설유형 및 연령별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 산출 항목, 산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라. 비용 산출 모형 관련 연구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표준교육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표준교육비는 적정교육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강경석, 2005; 김재규·공은배·백성준·이원영, 1994; 백일우·권재현, 2006; 윤홍주, 2003; 장영숙·강경석, 200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육비 또는 적정교육비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거나 '적정' 또는 '표준'의 개념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반적인 요건으로 파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윤홍주, 2012).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적정교육비를 표준교육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결과에 기반한 '충분성(adequacy)'에 따라 개념화되고, 산출

되는 적정 교육비와는 구별된다(홍지영·정동욱, 2012). 우리나라에서 개별모형을 적용하여 수행한 적정교육비 연구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은 크게 전문가판단 모형, 성공적인 학교 모형, 비용함수 모형, 증거기반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비용함수 모형은 학업성취도와 실제 교육비 지출 변수, 학교 및 학생특성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비 수준을 산출한다(엄문영·오범호·윤홍주, 2013). 비용함수 모형은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비용함수를 도출하고,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성과 1단위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한계 비용(marginal cost)을 다른 모형들에 비해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성과 중심의 교육재정 배분 모형을 수립하는데 매우 적절한 모형이다(홍지영·정동욱, 2012; Imazeki, 2008; Downes, 2004; Duncombe & Lukemeyer, 2002).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한 국내 연구들은 최근 적정교육비 산출에 적용되고 있다. 홍지영과 정동욱(2012)은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분석 연구'에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와 비교하여 기존 투입 중심의 교육비 산출과 학생 특성에 관계없이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른 포물리에 의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교육재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엄문영, 오범호, 윤홍주(2013)는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에서 적정교육비 산출시 학생 수와 특수교육 학생 등의 변인들을 우선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원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윤홍주(2014)는 전문가판단 모형과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정하고, 두 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적정교육비 산정 모형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 동안 전문가판단 모형에 기초한 표준교육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한용기·최준렬·서금택, 2009), 대안으로 비용함수 모형 등 다양한 적정교육비 산정 모형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공은배·서혜애·김규태·권재현, 2011; 홍지영·정동욱, 2012). 교육비를 산정하는 가장 좋은 모형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에도 다양한 모형들을 균형 있게 연구하여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비 관련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판단 모형에 근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 2. 관련 법규

정부는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를 개정하였다(2011. 9. 30). 이에 따라서 누리 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의 유아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누리과정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개정하여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012. 3. 21).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2012. 8. 31 개정)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2013. 2. 28. 개정)를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추가하여(2015. 5. 28),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시 포함되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법」 중 누리과정예산은 2012년 1조 818억 원에서 2016년도 4조 832억 원으로 4년 간 3.7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3~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의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부담하고 있다(그림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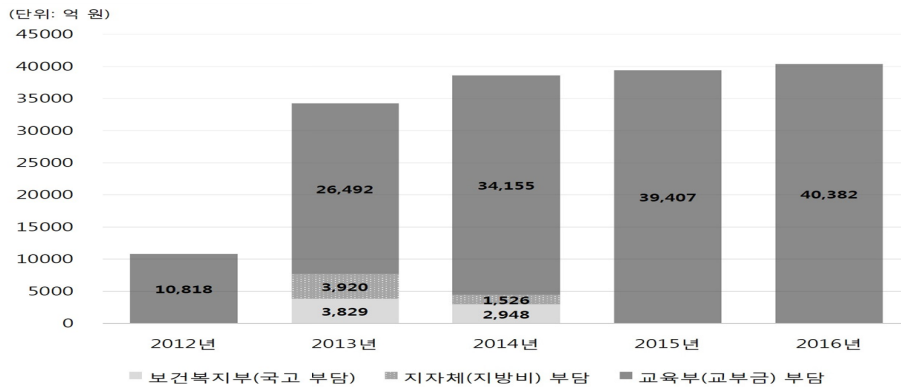
〈표 II-2-1〉 누리과정 관련 법령 연혁 및 현황

구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법률	·제24조(2012. 3. 21. 개정) 무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제34조(2013. 1. 23. 개정) 무상교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시행령에서	·제1조(1971. 12. 28.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제33조(2014. 5. 28.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령에

(표 II-2-1 계속)

구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확대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정함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을 포함 ·제36조(2005. 5. 28.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함
시 행 령	·제29조(2011. 9. 30. 개정) 무상교육 대상자를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만 5세 유아로 지정 ·제29조(2012. 8. 31. 개정) 무상교육 대상자를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만 3~5세 유아로 확대	·제22조(2011. 9. 30. 개정) 무상교육 대상자를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만 5세 유아로 지정 ·제22조(2013. 2. 28. 개정) 무상교육 대상자를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만 3~5세 유아로 확대 ·제23조(2011. 9. 30.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 로 만 5세 누리과정 비용 부담 ·제23조(2013. 2. 28.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 로 만 3~5세 누리과정 비용 부담	·제4조[별표1] (2011. 9. 30.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 수 추가 ·제4조[별표1] (2012. 10. 15.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 수 추가	·제36조(2015. 5. 28. 개정)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누리과정비를 추가

자료: 감사원(2016), 감사보고서-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p. 13



자료: 감사원(2016), 감사보고서-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p. 8.

[그림 II-2-1] 누리과정 재정 분담 추이



### 3. 유아교육 재정 지원 현황

#### 가.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 사업

##### 1)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교육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설키 시설의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각 세부사업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의 구분은 <표 II-3-1>과 같다.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 내 유아교육진흥 사업으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예산이 추가되었고,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예산이 추가되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표 II-3-1>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정규교직원 인건비, 기타 공립유치원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기간제(시간제)교사 인건비, 기타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건설팅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 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표 II-3-1 계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기타 유아학비 지원 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 기타 유아 급식 지원 사업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기타 공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비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 원아수용시설 설립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공립 단설유치원 환경 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기타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주: 밑줄은 2014년 추가된 사업임.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 2)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도 유아교육 총 예산액(2014년 8월 31일 기준)은 5조 3,042억 6천 8백만 원으로 영역별 예산은 교육복지 지원이 3조 4,666억 9천 9백만 원으로 가장 크다(표 II-3-2 참조). 유아교육 예산 중 교육복지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표 II-3-2〉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예산

지역	단위: 백만 원					계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 건개선시설	
서울	42,961	46,166	548,543	40,223	26,119	704,012
부산	17,535	32,930	201,111	6,088	14,906	272,570
대구	15,635	14,097	163,932	773	3,490	197,927
인천	25,600	13,929	174,844	10,139	2,506	227,018
광주	19,717	13,460	118,163	2,485	9,935	163,760
대전	23,565	12,418	117,155	2,976	2,472	158,586
울산	14,546	11,134	86,972	6,015	583	119,250
세종	10,755	1,827	17,878	1,460	74,876	106,796
경기	135,370	77,744	949,115	47,030	146,583	1,355,842
강원	49,922	13,280	103,106	7,248	41,890	215,446
충북	45,118	15,004	112,132	8,392	11,841	192,487
충남	48,121	18,132	156,507	1,323	3,952	228,035

(표 II-3-2 계속)

지역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 건개선시설	계
전북	44,787	20,766	127,632	17,144	3,281	213,610
전남	152,231	16,986	109,132	13,067	1,115	292,531
경북	169,133	34,011	179,276	18,228	10,185	410,833
경남	68,347	32,241	247,936	9,206	13,934	371,664
제주	13,236	3,585	53,265	2,158	1,657	73,901
총합계	896,579	377,710	3,466,699	193,955	369,325	5,304,268

주: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 예산 포함임.

자료: 1) 교육부(2014. 09. 30).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2.

지역별 예산액을 비교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1조 3,558억 4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로 739억 1백만 원이었다. 한편 2014년도 유아교육 전체 결산액은 4조 9,814억 7천 1백만 원이다. 지역별로 결산액의 절대규모를 비교하면 경기 결산이 1조 3,298억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으로 611억 4천 7백만 원이었다.

〈표 II-3-3〉 2014년도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결산

단위: 백만 원

시·도 교육청	결산액	시·도 교육청	결산액
서울	678,521	경기	1,329,808
부산	259,044	강원	216,560
대구	200,555	충북	181,148
인천	234,210	충남	237,271
광주	167,272	전북	223,214
대전	153,741	전남	204,294
울산	119,138	경북	279,088
세종	61,147	경남	370,777
총 합계	4,981,471	제주	65,683

자료: 1) 교육부(2015b). 유치원 14년 결산. 내부자료.

2)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4.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2012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년도와의 항목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표 II-3-4〉 항목별 예산: 2010-2014

단위: 백만 원

구분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10	567,573	53,102	667,431 <sup>1)</sup>	211,912	1,500,018	
2011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2012	720,019	395,261	1,618,939	287,008	3,021,225	
2013	661,737	351,608	2,128,615	403,597	3,545,557	
2014 <sup>2)</sup>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5,304,268
	896,579	377,710	3,466,699	193,955	369,325	

자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4.

### 3)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연간 약 560만 원(월 평균 46만 원)이었다. 즉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유아에게 정부는 유아교육비로 56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누리과정 지원비 월 22만 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이외에 교육활동,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을 표준유아교육비와 비교하면,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556만 원(월 평균 46만 원)을 초과한 수치이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교직원 인건비, 교육활동비, 공통운영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5〉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2014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역	교직원 운영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계	어린이집 지원예산	계	유아 인당 교육 예산 <sup>1)</sup>
전체	896,579	377,710	3,466,699	563,280	5,304,268	1,634,484	3,669,784	5.6
서울	42,961	46,166	548,543	66,342	704,012	295,162	408,850	4.5
부산	17,535	32,930	201,111	20,994	272,570	75,640	196,930	4.5
대구	15,635	14,097	163,932	4,263	197,927	62,274	135,653	3.9
인천	25,600	13,929	174,844	12,645	227,018	68,235	158,783	3.9
광주	19,717	13,460	118,163	12,420	163,760	53,165	110,595	5.0
대전	23,565	12,418	117,155	5,448	158,586	45,046	113,540	4.5
울산	14,546	11,134	86,972	6,598	119,250	33,519	85,731	4.7
세종 <sup>4)</sup>	10,755	1,827	17,878	76,336	106,796	12,347	94,449	55.6
경기	135,370	77,744	949,115	193,613	1,355,842	437,360	918,482	5.1
강원	49,922	13,280	103,106	49,138	215,446	56,205	159,241	10.0
충북	45,118	15,004	112,132	20,233	192,487	71,018	121,469	6.9
충남	48,121	18,132	156,507	5,275	228,035	87,767	140,268	5.4
전북	44,787	20,766	127,632	20,425	213,610	62,575	151,035	6.5
전남	152,231	16,986	109,132	14,182	292,531	63,303	229,228	12.1
경북	169,133	34,011	179,276	28,413	410,833	66,089	344,744	9.2
경남	68,347	32,241	247,936	23,140	371,664	108,018	263,646	5.4
제주	13,236	3,585	53,265	3,815	73,901	36,761	37,140	7.0

주: 1) 총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포함됨, 유아 1인당 교육예산 = 유아교육 예산/유치원 총 취원아 수.

2) 어린이집 지원 예산 제외된 교육예산 총액임.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일부 지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항목 예산지원과 누리과정 3,4,5세 학비지원임.

3)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액으로 취원아에 대한 교육예산임.

4) 세종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항목 예산지원액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

자료: 1) 교육부(2014.9.30). 유아교육지원13년 결산 및 '14 예산 현황-세부사업별(추경포함).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4.1). 취원아 수.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33.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78만 5천 원이었으며,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해 2014년 562만 4천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3-6〉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sup>1)</sup>	2014 <sup>2)</sup>
1인당 교육예산	1,882	2,300	2,785	3,406	4,870	6,289	5,624

주: 1) 2013년 어린이집 지원예산 포함한 2013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2013년 연차보고서 자료와 차이가 있음.

2) 2014년은 어린이집 지원예산 제외함, 유아 1인당 교육예산 = 교육예산/유치원 취원아 수.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09-2013).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2) 교육부(2014.9.30). 유아교육지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취원아 수.

4)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1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2015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던 3~4세 어린이집 기관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교육 교부금으로 통합되었는데, 2011년 기준 GDP 대비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은 0.8로 OECD 평균 수준이며, 누리과정 도입 이후의 재정지원 비율을 고려하면 OECD의 권고 수치인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표 II-3-7〉 OECD 국가의 GDP대비 총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비율(2011)

국가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GDP 대비 유아교육· 보육 재정 비율
한국	0.7	0.1	0.8
OECD 평균	0.4	0.5	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3.1. A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2011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6. 5. 6 인출.

## 나. 유아학비 지원

### 1)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비) 지원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교육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22만 원

을 지원하며,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이용자에게 국·공립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7만 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한다(교육부 2015a).

〈표 II-3-8〉 2015년 유아학비 지원 체계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3~5세아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원아
	방과후 과정비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2항에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 영 시행일 2013년 3월 1일 이후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 지원 이력부터 적용함.

자료: 교육부(2015a).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14년 3~5세 유아학비 지원액은 1조 4,343억 원으로 유치원 취원아 수 대비 교육비 지원아 수 비율은 101.8%로 집계되었으며, 100% 초과비율은 전학 등 유아의 이동에 따른 중복집계에 의한 결과이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표 II-3-9〉 3-5세 유아학비 지원 현황: 2014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지원액	지원아 수	지원율
전국	1,434,360	679,633	101.8%
서울	220,799	92,507	101.4%
부산	107,936	44,238	100.7%
대구	81,174	35,021	101.4%
인천	90,929	40,959	101.5%
광주	51,701	22,832	102.4%
대전	59,608	25,473	101.8%
울산	44,029	18,630	101.6%
세종	2,573	1,938	114.1%
경기	380,147	186,209	102.4%
강원	30,751	31,894	102.8%
충북	29,693	17,744	101.5%
충남	52,493	26,238	100.5%

(표 II-3-9 계속)

구분	지원액	지원아 수	지원율
전북	47,039	23,724	101.8%
전남	32,026	19,331	102.0%
경북	84,934	37,800	101.4%
경남	108,684	49,699	101.4%
제주	9,844	5,396	101.9%

주: 1) 취원아 수는 2014. 4. 기준, 지원아 수는 2014. 6~8(2분기) 지원액은 2014. 12. 기준임.  
 2) 유아학비 지원실적에 전년도소급, 예외지원, 방과후 과정교육비는 제외되었음.  
 3) 지원율 = (유아교육비 지원아 수/총 3-5세 취원아 수)x100.  
 자료: 1) 교육부(2014.9.30).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3) 교육부(2014a). KERIS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 수.  
 4)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34

〈표 II-3-10〉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율

단위: 백만 원, 명, %

3세 유아학비 지원			4세 유아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		
지원액	지원아 수	지원율	지원액	지원아 수	지원율	지원액	지원아 수	지원율
344,709	148,447	103.8	519,338	237,568	101.6	563,137	282,723	101.8

주: 지원율 = (유아교육비 지원아 수/총 3~5세 취원아 수)x100.  
 자료: 1) 교육부(2013.12.31). KERIS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 실적.  
 2) 교육부(2013.12.31). KERIS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 실적 지원아 수(2분기 6-8월 기준) 내부자료.  
 3)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서비스(2013. 4.1). 연령별 취원아 수.  
 4)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34

## 2)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누리과정) 지원

2012년부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 예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지원의 가장 큰 부분은 3~4세 유아학비 지원으로 2014년 예산이 2013년에 비해 2배 정도 증액되며 5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역시 증액되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표 II-3-11〉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결산	2014예산
교수- 학습활동지원	교원역량강화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70	70
		기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256	244



(표 II-3-11 계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결산	2014예산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418,279	457,305
		3-4세 유아학비 지원	355,824	711,295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389,399	465,504

자료: 1) 교육부(2014.09.30).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4.

### 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1)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 예산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약 456백만 원이었으며, 사립 유치원의 총 지출액 평균은 930백만 원(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으로 사립 유치원 지출 총액의 49%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3-12〉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개원

구분 지역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사립유치원 수	사립유치원 원당지원액
전체	1,920,645	4,207	456.5
서울	286,900	699	410.4
부산	147,777	319	463.3
대구	110,136	249	442.3
인천	110,164	258	427.0
광주	70,792	185	382.7
대전	78,438	172	456.0
울산	58,898	118	499.1
세종	1,399	3	466.3
경기	531,538	1,048	507.2
강원	44,214	108	409.4
충북	36,241	93	389.7
충남	64,327	138	466.1
전북	62,783	165	380.5
전남	40,888	117	349.5
경북	117,104	250	468.4

(표 II-3-12 계속)

구분 지역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사립유치원 수	사립유치원 원당지원액
경남	145,267	263	552.3
제주	13,779	22	626.3

주: 1)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액 =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사립유치원 수.

2)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작성 시점(2014. 4.1)으로 인해 시·도별 유치원 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1) 교육부(2014.09.30). 유아교육지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현황(추경포함).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서비스(2014. 4.1). 사립유치원 수.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34

## 2)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 지원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사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당 월 40만 원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당 교사 1인에 대해 월 1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는 기본급 외에 월 51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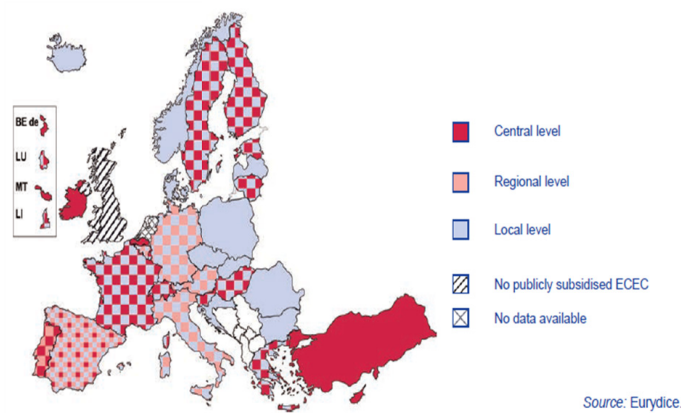
## 4. 유럽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sup>5)</sup>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유아교육·보육 투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여 국가가 이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생각하고, 상당한 액수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유럽 국가의 ECEC를 위한 재정지원 구조, 공공 및 민간 공급의 분배, 비용지원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 본 절은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4 Edition.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 가. 재정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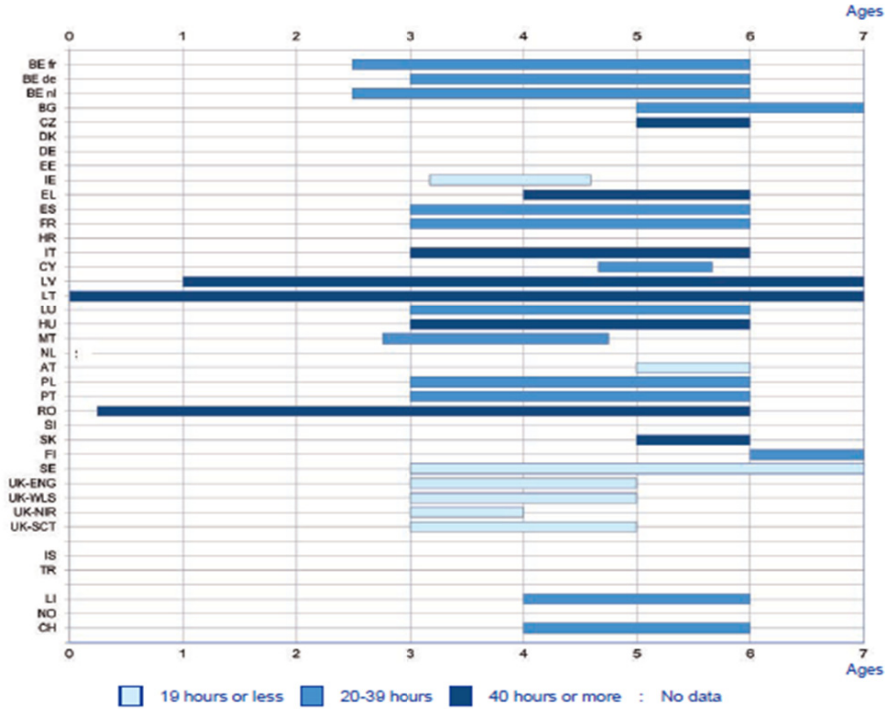
유럽의 유아교육·보육 공급은 대부분 민간 공급업자에 의해 실행되며, 민간 공급업자들은 주로 부모의 비용에 의존하는 구조로 몇몇 국가에서는 가정에 지급(세금 경감, 수당 또는 바우처)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European Commission, 2014).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unding centre-based ECEC, 2012/13(Older children). p. 78

[그림 11-4-1] 유아교육보육 기관 재정 지원의 책임: 2012~2013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중앙과 지방 재정지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수준으로 어떤 요소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중앙 정부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건물 관리 및 학습 환경의 발달에 대한 지원을 지역에 할당하고, 운영비(관리비, 직원 임금, 세금 및 교사 자료 비용)는 지방 정부와 부모가 내는 비용의 일부로 이를 감당(에스토니아)하기도 하며, 교육부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지방 정부가 인프라 비용을 책임(라트비아와 루마니아)지기도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4).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Free ECEC provision, by age and weekly hours, 2012/13,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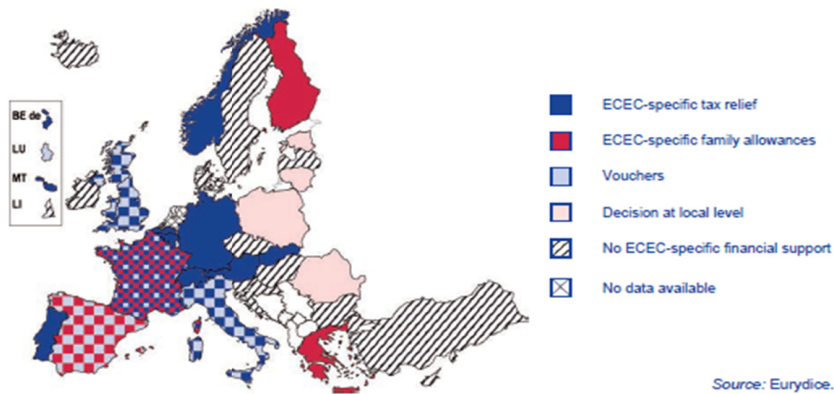
[그림 11-4-2] 주당 무상 유아교육·보육 시간: 2012~2013

재정지원이 일정 시간의 특정한 양으로 할당되기도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주로 주당 20~39시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정 시간을 중앙과 지방이 분할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투아니아에서는 중앙 당국이 주당 20시간의 비용을 지원하며('The pupils' basket), 지방 정부가 나머지를 담당한다(European Commission, 2014).

## 나. 공적 지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GDP대비 ISCED 0(취학 전 교육)의 공급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하였다는데, 취학 전 교육에 대한 평균적인 전체 공적 비용은 2006년 GDP의 0.46%에서 2010년 0.52%로 증가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ISCED 0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ECEC 공급, ECEC의 질을 향상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활용(스페인)되거나 교사의 임금을 위한 재정지원(라트비아), 취학 전 의무교육 연령을 도입(오스트리아)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구매력 표준(PPS)에 의한 아동/학생 당 직접적인 공적 지출 역시 대부분 유럽 국가의 각 교육 단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취학 전 교육을 적어도 1년 제공하고 있으며, ISCED 0 이전의 영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교육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Types of financial support available to parents with children in ECEC, 2012/13(Younger children).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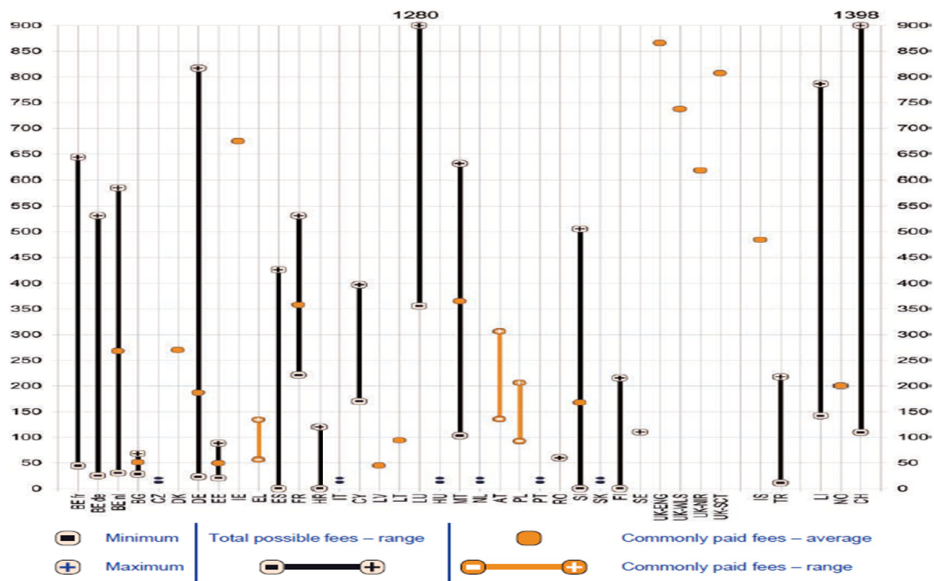
[그림 II-4-3]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 유형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학 전 무상교육은 공립기관 중심의 유아교육·보육 또는 초등학교로 제공되며, 취학 전 무상교육이 가능한 곳에서 부모는 보통 기관에서 이뤄지는 급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아동을 위한 차량은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몇몇 국가들은 비용의 감면, 면제 또는 세금 경감, 수당 혹은 바우처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개별 가구의 비용을 줄이거나 상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 다. 비용 규제

유아교육·보육 비용은 유럽 국가마다, 공급의 유형마다 매우 상이하여, 이러

한 규제는 보통 공공 유아교육·보육 공급자에게 적용되며(공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관은 종종 덜 규제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로 비용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유아교육·보육 비용, 최소 임금 또는 가정의 소득에 대한 비율로 규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부모의 비용이 운영비의 25% 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에스토니아에서 아동당 부모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최소 임金的 20%를 넘을 수 없으며, 헝가리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수업료 및 급식비용이 한 사람 당 가정의 순수입의 25% 이상을 넘을 수 없다(European Commission, 2014). 월평균 비용은 민간 공급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 민간 부문이 유아교육·보육의 주를 이루는 룩셈부르크에서는 매달 비용의 한도가 PPS 1,280달러에 달하지만 정부가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Monthly fees for younger children in the largest ECEC sector(s), in PPS, 2012/13, p. 86

[그림 II-4-4]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월비용(PPS): 2012~2013

## 라. 비용지원 기준

유아교육·보육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비용 감면 또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를 해 주기도 하는데, 가족의 수입과 같은 필요 중심의 기준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 가정의 아동 수는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준으로 공공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세 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50% 감면(리투아니아)되며, 더 어린 아동의 비용이 종종 더 높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 또한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European Commission, 2014).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유아교육·보육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를 위한 선별적 지원으로 부모 수당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출석과는 관련되지 않는다(European Commission, 2014).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경감 또한 보편적인데, 이러한 유형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은 세금을 낼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부모의 선택에 기초를 두고, 아동보육 서비스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에게는 현금 지급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아동이 3세가 되기 전까지 이용 가능하다(European Commission, 2014).

## 마. 시사점

유럽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보다는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유아교육·보육 공급의 민간 의존율이 높을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세금경감, 수당, 바우처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중앙과 지방 재정지원의 배분)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과 재정지원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 시간의 특정한 양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할당하기도 하는데, 중앙 정부가 필수 시간(예를 들어, 주당 20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지원을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ISCED 0에 해당하는 교육·보육에 대한 비용의 공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유아교육·보육 기관 공급과 질 제고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ISCED 0 이전단계인 영아의 보육비용은 부모가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취학전 무상교육은 공립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학전 무상교육·보육은 주로 주당 무상교육 시간으로 제공되며, 무상교육·보육 시간 안에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비용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제는 공공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비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보육 비용, 최소 임금, 가정의 소득에 의한 비율로 정해진다.

여섯째,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중요한 요소는 부모를 위한 선별적 지원이다. 부모 수당, 세금 경감은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이용과는 무관한 보편적 권리이며, 기관 이용에 따른 세금경감 혜택, 바우처 제공 등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이용을 장려하기도 한다.



### Ⅲ. 유치원 교육비 현황

본 장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 앞서 공·사립유치원의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유치원 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유치원정보공시 사이트에 탑재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세출 결산서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지역 규모별, 유치원 규모별로 분석하여 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수집된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비용함수를 활용한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 1.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본 절에서는 공·사립 유치원 간의 회계양식이 상이하고, 특히, 사립의 회계양식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각각의 교육비를 제시하였다.

##### 가. 공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서의 항목은 인적자원 운영,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별도 책정되기 때문에 세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를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공립유치원 세출 세부내역

내역	세부내역
1.인적자원 운영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연수, 맞춤형 복지, 처우개선비
2)교직원기타보수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교육보육 통합지원비(하모니활동비), 교직원대체 인건비

(표 III-1-1 계속)

내역	세부내역
2.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 급식 관리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 급식재료비, 급식관리비, 간식비, 우유급식비
2) 보건 관리	보건위생 관리(약품구입비), 안전망 확보(학교안전공제회비)
3) 교육격차해소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 치료지원비, 학급운영비, 다문화지원비, 5세 누리과정 학비지원 등
4)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졸업앨범제작, 공립유치원거점버스, 영유아발달 사업운영비(인건비포함, 적립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수학급 돌봄운영 지원비 등
3. 기본적 교육활동	
1) 교과 활동	특수학급교과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보조원(에듀케어) 인건비, 기타 교과 활동
2)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미화, 청소활동, 학생행사(입학졸업식, 어린이날, 학부모참여수업 등)활동비 등
4. 선택적 교육활동	
1) 방과후 학교 운영	에듀케어반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급식관련 비용, 급식비), 특성화 교육활동비 등
2)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지역유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비
3) 독서활동	
4) 평생교육	
5. 교육활동 지원	
1)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교육보조원인건비, 교육과정운영)
2) 학습지원실 운영	정보화실 운영(학내망 관리 및 PC유지관리, 인터넷 통신요금), 도서관 운영(도서구입)비
3) 교육여건 개선	교단선진화용 기기
4) 연구학교 운영	인성교육 우수기관 운영
5) 생활지도 운영	
6. 학교 일반운영	
1) 부서 기본 운영	원장실 운영, 부서공통운영
2) 시설 장비 유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용역료, 무인기계정비 용역, 시설일반관리비, 화장실관리
3) 일반 행정 관리	비품구입비, 사무용 기기임대료 및 수리비
4) 학교 운영 협력	
5) 학부모 지원	
7. 학교시설확충 1) 시설확충 및 개선	건설시설비(옥상창고설치비, 소방장비 교체비, 도색비, 소화기구입 등)
8. 학교재무활동 1) 예비비	

자료: 김은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46<표 III-2-1>를 수정·보완함.

공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4억 7,580만 원이다.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1만 1천 원이다. 항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240만 원이고 지출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유아 1인당 월평균 15만 3천 원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격차해소 비용은 7만 7천 원이다. 학생복지/교육격차 다음으로 총액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항목은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으로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 전체 세출총액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475,800	370,000	4,941.5	411.8	196	
1.인적자원 운용	20,800	33,700	202.3	16.9	184	4.1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6,000	7,500	52.6	4.4	167	
2)교직원 기타보수	15,100	26,300	119.6	10.0	150	
2.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82,400	152,100	1,845.6	153.8	191	37.3
1)급식 관리	59,700	71,100	528.2	44.0	167	
2)보건 관리	3,100	3,200	28.7	2.4	176	
3)교육격차해소	107,800	63,700	924.8	77.1	162	
4)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27,300	40,500	228.3	19.0	158	
3.기본적 교육활동	59,500	54,700	610.9	50.9	194	12.4
1)교과 활동	47,400	49,000	443.9	37.0	177	
2)창의적 체험활동	13,300	18,600	122.9	10.2	175	
4.선택적 교육활동	105,500	67,600	1,051.1	87.6	188	21.3
1)방과후 학교 운영	103,100	62,900	934.1	77.8	171	
2)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5,800	26,900	25.9	2.2	31	
3)독서활동	3,100	4,200	16.5	1.4	102	
4)평생교육	10,600	15,100	1.7	0.1	3	
5.교육활동 지원	37,600	34,500	384.4	32.0	193	7.8
1)교무업무 운영	18,500	16,700	171.5	14.3	175	
2)학습지원실 운영	6,500	9,400	43.6	3.6	127	
3)교육여건 개선	15,300	15,000	101.8	8.5	126	
4)연구학교 운영	11,200	12,600	23.7	2.0	40	
5)생활지도 운영	4,100	3,900	1.3	0.1	6	
6.학교 일반운영	59,600	42,500	615.6	51.3	195	12.5
1)부서 기본 운영	13,600	14,300	128.2	10.7	178	
2)시설 장비 유지	37,200	24,700	352.5	29.4	179	

(표 III-1-2 계속)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3)일반 행정 관리	9,600	14,100	75.6	6.3	149	
4)학교 운영 협력	700	1,500	3.4	0.3	94	
5)학부모 지원	1,100	1,000	4.7	0.4	81	
7.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53,800	248,100	222.4	18.5	78	4.5
8.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2,200	3,000	9.2	0.8	79	0.2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공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세출총액은 4억 5,630만 원으로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9만 4천 원이다. 항목별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24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38.9%로 가장 높아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하더라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지출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456,300	366,100	4,739.2	394.9	196	
1.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82,400	152,100	1,845.6	153.8	191	38.9
2.기본적 교육활동	59,500	54,700	610.9	50.9	194	12.9
3.선택적 교육활동	105,500	67,600	1,051.1	87.6	188	22.2
4.교육활동 지원	37,600	34,500	384.4	32.0	193	8.1
5.학교 일반운영	59,600	42,500	615.6	51.3	195	13.0
6.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53,800	248,100	222.4	18.5	78	4.7
7.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2,200	3,000	9.2	0.8	79	0.2

### 1) 지역 규모별 공립유치원 지출현황

지역의 도시화 수준과 인프라 구축 정도 및 특히 행·재정상의 환경에 따라 공립 유치원의 각 비용항목별로 지출 규모 및 지출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도시화된 곳일수록 물가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지역적 특

성에 따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조달비용이 다른 경향이 있다(김은설 외, 2013).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 단위로 나누어 유치원 교육비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유치원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유치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 대도시 공립유치원

대도시 지역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 평균 총액은 3억 2,810만 원으로 공립 연 평균 세출총액 4억 7,580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대도시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유아 1인당 31만 7천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 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이 30.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은 선택적 교육활동(23.6%)으로 연 평균 8,230만 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약 7만 4천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 다음으로 기본적 교육활동(14%), 학교 일반운영(12%), 교육활동 지원(10.9%) 순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328,100	185,000	3,808.2	317.3	116	
1.인적자원 운용	25,100	41,400	275.3	22.9	110	7.2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800	4,400	37.1	3.1	98	
2)교직원기타보수	20,200	30,900	193.5	16.1	96	
2.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103,900	84,100	1,164.2	97.0	112	30.6
1)급식 관리	21,100	39,900	196.0	16.3	93	
2)보건 관리	2,600	3,000	25.6	2.1	101	
3)교육격차해소	77,400	44,600	719.7	60.0	93	
4)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16,200	35,800	147.3	12.3	91	
3.기본적 교육활동	46,600	44,200	531.5	44.3	114	14.0
1)교과 활동	36,100	38,300	368.5	30.7	102	
2)창의적 체험활동	13,100	23,300	134.3	11.2	103	
4.선택적 교육활동	82,300	53,600	897.8	74.8	109	23.6
1)방과후 학교 운영	84,900	51,900	814.7	67.9	96	
2)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3,600	27,800	20.3	1.7	15	
3)독서활동	1,800	1,400	8.9	0.7	51	
4)평생교육	0	0	0	0	0	
5.교육활동 지원	36,100	32,900	414.5	34.5	115	10.9
1)교무업무 운영	19,400	18,600	199.0	16.6	103	

(표 III-1-4 계속)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2)학습지원실 운영	6,600	12,400	42.5	3.5	65	
3)교육여건 개선	15,300	17,000	117.1	9.8	77	
4)연구학교 운영	14,400	17,900	18.6	1.6	13	
5)생활지도 운영	700	800	0.1	0.01	2	
6. 학교 일반운영	39,800	29,200	457.8	38.1	115	12.0
1)부서 기본 운영	10,100	15,300	103.4	8.6	103	
2)시설 장비 유지	25,900	17,700	269.6	22.5	104	
3)일반 행정 관리	6,600	8,300	48.2	4	74	
4)학교 운영 협력	500	700	1.7	0.1	37	
5)학부모 지원	900	1,000	3	0.3	35	
7. 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12,000	17,200	56.3	4.7	47	1.5
8. 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1,900	2,200	10.9	0.9	58	0.3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다. 따라서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하였다(총액대비 비율임).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 평균 총액은 3억 440만 원으로, 월 평균 유아 1인당 29만 4천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5〉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304,400	177,200	3,532.9	294.4	116	
1.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03,900	84,100	1,164.2	97.0	112	33.0
2. 기본적 교육활동	46,600	44,200	531.5	44.3	114	15.0
3. 선택적 교육활동	82,300	53,600	897.8	74.8	109	25.4
4. 교육활동 지원	36,100	32,900	414.5	34.5	115	11.7
5. 학교 일반운영	39,800	29,200	457.8	38.1	115	13.0
6. 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12,000	17,200	56.3	4.7	47	1.6
7. 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1,900	2,200	10.9	0.9	58	0.3

나)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중소도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 평균 세출총액이 7억 4,180만 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 세출총액인 연 평균 4억 7,580만 원과 큰 차이가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 공립유치원의 30.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 평균은 해당 항목의 공립유치원 전체 평균 1억 8,240만 원보다 높은 3억 원이었다.

〈표 III-1-6〉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741,800	535,500	6,447.7	537.3	49	
1.인적자원 운용	18,200	16,700	151.3	12.6	47	2.3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11,500	11,100	87.1	7.3	43	
2)교직원기타보수	7,200	11,200	43.4	3.6	34	
2.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300,000	162,800	2,607.3	217.3	49	40.4
1)급식 관리	116,400	73,900	928.6	77.4	45	
2)보건 관리	4,700	3,800	37.6	3.1	46	
3)교육격차해소	139,100	57,200	1,061.0	88.4	43	
4)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41,600	32,800	294.5	24.5	40	
3.기본적 교육활동	79,800	67,000	693.3	57.8	49	10.8
1)교과 활동	63,500	59,400	506.9	42.2	45	
2)창의적 체험활동	14,000	8,100	106.6	8.9	43	
4.선택적 교육활동	136,100	75,900	1,183	98.6	49	18.3
1)방과후 학교 운영	121,900	68,800	994.5	82.9	46	
2)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3,300	17,000	25.9	2.2	11	
3)독서활동	4,500	6,900	24.7	2.1	31	
4)평생교육	10,600	15,100	5.6	0.5	3	
5.교육활동 지원	43,300	43,400	368.1	30.7	48	5.7
1)교무업무 운영	18,400	14,000	146.8	12.2	45	
2)학습지원실 운영	6,500	3,700	41.3	3.4	36	
3)교육여건 개선	15,600	10,600	74.4	6.2	27	
4)연구학교 운영	11,200	10,400	35.5	3.0	18	
5)생활지도 운영	4,900	3,800	2.6	0.2	3	
6.학교 일반운영	94,300	46,800	819.1	68.3	49	12.7
1)부서 기본 운영	18,200	8,200	144.6	12.0	45	
2)시설 장비 유지	54,700	25,800	446.1	37.2	46	
3)일반 행정 관리	15,400	21,500	112.6	10.2	45	

(표 III-1-6 계속)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4)학교 운영 협력	1,100	2,400	6.3	0.5	33	
5)학부모 지원	1,300	1,000	6.5	0.5	29	
7.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173,900	477,700	616.7	51.4	20	9.6
8.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3,000	4,900	8.8	0.7	17	0.1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중소도시 공립유치원의 연 평균 세출총액은 7억 2,440만 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 세출총액 연 평균 4억 5,630만 원과 큰 차이가 있다.

〈표 III-1-7〉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724,400	525,900	6,296.4	524.7	49	
1.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300,000	162,800	2,607.3	217.3	49	41.4
2.기본적 교육활동	79,800	67,000	693.3	57.8	49	11.0
3.선택적 교육활동	136,100	75,900	1,183.0	98.6	49	18.8
4.교육활동 지원	43,300	43,400	368.1	30.7	48	5.8
5.학교 일반운영	94,300	46,800	819.1	68.3	49	13.0
6.학교시설확충 1)시설확충 및 개선	173,900	477,700	616.7	51.4	20	9.8
7.학교재무활동 1)반환금	3,000	4,900	8.8	0.7	17	0.1

#### 다)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지출현황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세출총액은 6억 790만 원으로, 이는 전체 공립유치원 평균 4억 7,580만 원보다 높은 수치이다.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48만 4천 원 정도이다.



〈표 III-1-8〉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607,900	285,800	5,816.2	484.7	31	
1.인적자원 운용	8,000	8,000	66.2	5.5	27	1.1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5,000	4,900	40.1	3.3	26	
2)교직원기타보수	4,000	6,900	24.4	2.0	20	
2.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283,200	151,400	2,621.8	218.5	30	45.1
1)급식 관리	95,700	68,700	855.9	71.3	29	
2)보건 관리	2,600	2,300	22.9	1.9	29	
3)교육격차해소	164,600	69,300	1,320.6	110.1	26	
4)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43,600	53,400	362.8	30.2	27	
3.기본적 교육활동	74,500	56,200	712.4	59.4	31	12.2
1)교과 활동	61,300	55,600	557.0	47.2	30	
2)창의적 체험활동	13,000	9,400	115.8	9.7	29	
4.선택적 교육활동	139,900	66,500	1,294.8	107.9	30	22.3
1)방과후 학교 운영	133,800	67,800	1,197.3	99.8	29	
2)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28,100	42,000	43.3	3.6	5	
3)독서활동	4,200	2,600	25.7	2.1	20	
4)평생교육	0	0	0	0	0	
5.교육활동 지원	34,600	22,000	320.1	26.7	30	5.5
1)교무업무 운영	15,600	12,300	129.4	10.8	27	
2)학습지원실 운영	6,400	5,400	50.9	4.2	26	
3)교육여건 개선	15,100	12,800	102.2	8.5	22	
4)연구학교 운영	6,800	5,000	18.7	1.6	9	
5)생활지도운영	8,700		2.7	0.2	1	
6.학교 일반운영	78,200	33,200	748.0	62.3	31	12.9
1)부서 기본 운영	19,100	14,500	176.1	14.7	30	
2)시설 장비 유지	49,800	22,700	445.2	37.1	29	
3)일반 행정 관리	8,500	7,800	78.3	6.5	30	
4)학교 운영 협력	600	400	3.9	0.3	24	
5)학부모 지원	1,300	1,000	6.8	0.6	17	
7.학교시설확충	14,300	10,000	48.3	4.0	11	0.8
1)시설확충 및 개선						
8.학교재무활동	3,700	3,500	4.5	0.4	4	0.1
1)반환금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공립유치원의 지출 현황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공립유치

원의 연간 평균 세출총액은 4억 7,580만 원이다. 총액 규모를 지역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가 7억 4,180만 원, 읍면지역이 6억 790만 원, 대도시가 3억 2,81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대도시 31만 7천 원, 중소도시 53만 7천 원, 읍면지역이 48만 4천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세출총액은 6억 1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공립유치원 평균 4억 5,63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47만 9천 원 정도이다.

〈표 III-1-9〉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601,000	282,900	5,749.9	479.2	31	
1.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283,200	151,400	2,621.8	218.5	30	45.6
2. 기본적 교육활동	74,500	56,200	712.4	59.4	31	12.4
3. 선택적 교육활동	139,900	66,500	1,294.8	107.9	30	22.5
4. 교육활동 지원	34,600	22,000	320.1	26.7	30	5.6
5. 학교 일반운영	78,200	33,200	748	62.3	31	13.0
6. 학교시설확충	14,300	10,000	48.3	4.0	11	0.8
7. 학교재무활동	3,700	3,500	4.5	0.4	4	0.1

## 2) 기관 규모별 공립유치원 지출현황

기관 규모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세출총액 평균은 4억 7,580만 원이고,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기관 3억 5,800만 원, 중규모기관 4억 5,730만 원, 대규모기관 6억 5,0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규모 시설에서 제일 적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은 494만 1천 원이었으며, 소규모 기관의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이 660만 3천 원, 중규모 기관은 472만 3천 원, 대규모 기관은 458만 2천 원이었다. 소규모 기관, 중규모 기관 모두 대규모 기관보다 유아 1인당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2.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7. 학교시설 확충'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확인되고 있다.

〈표 III-1-10〉 기관 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합계)	475,800	370,000	4,941.5	411.8	196	
대규모	650,100	269,900	4,582.1	381.8	44	
중규모	457,300	243,700	4,723.8	393.6	103	
소규모	358,000	567,400	6,603.5	550.3	49	
1. 인적자원 운용(합계)	20,800	33,700	202.3	16.9	184	4.1
대규모	16,900	15,100	113.7	9.5	42	2.5
중규모	21,100	39,300	208.6	17.4	99	4.4
소규모	24,000	33,200	387.0	32.3	43	5.9
2.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합계)	182,400	152,100	1,845.6	153.8	191	37.3
대규모	279,800	140,200	1,972.1	164.3	44	43.0
중규모	178,400	134,000	1,806.4	150.5	101	38.2
소규모	97,900	149,600	1,695.5	141.3	46	25.7
3. 기본적 교육활동(합계)	59,500	54,700	610.9	50.9	194	12.4
대규모	82,800	68,200	583.6	48.6	44	12.7
중규모	57,500	47,500	587.9	49.0	102	12.4
소규모	42,200	48,600	761.1	63.4	48	11.5
4. 선택적 교육활동(합계)	105,500	67,600	1,051.1	87.6	188	21.3
대규모	133,000	60,000	915.6	76.3	43	20
중규모	106,300	68,400	1,054.7	87.9	99	22.3
소규모	78,400	63,000	1,356.3	113	46	20.5
5. 교육활동 지원(합계)	37,600	34,500	384.4	32.0	193	7.8
대규모	44,300	24,200	311.8	26.0	44	6.8
중규모	35,300	30,800	364.5	30.8	103	7.7
소규모	36,400	47,900	630.2	52.5	46	9.5
6. 학교 일반운영(합계)	59,600	42,500	615.6	51.3	195	12.5
대규모	79,700	31,200	561.3	46.8	44	12.2
중규모	60,900	39,400	628.8	52.4	103	13.3
소규모	38,400	48,400	693.4	57.8	48	10.5
7. 학교시설 확충(합계)	53,800	248,100	222.4	18.5	78	4.5
대규모	46,200	126,700	118.3	9.9	16	2.6
중규모	15,000	19,100	63.0	5.3	42	1.3
소규모	141,500	473,700	1,065.1	88.8	20	16.1
8. 학교 재무활동(합계)	2,200	3,000	9.2	0.8	79	0.2
대규모	3,300	3,700	5.8	0.5	11	0.1
중규모	2,400	2,900	9.8	0.8	42	0.2
소규모	1,600	3,000	14.9	1.2	26	0.2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기관 규모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세출총액 평균은 4억 5,630만 원으로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기관 3억 3,700만 원, 중규모기관 4억 3,710만 원, 대규모기관 6억 3,4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중규모, 소규모 시설보다 대규모 시설이 제일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기관 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연간	월간	
총액(합계)	456,300	366,100	4,739.2	394.9	196
대규모	634,000	268,000	4,468.5	372.4	44
중규모	437,100	240,600	4,515.1	376.3	103
소규모	337,000	559,400	6,216.4	518.0	49

##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을 2014년 세출결산서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공립유치원과 회계 양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립과 구분하여 교육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립유치원 세출결산서와 양식상 상이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항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기관 운영에 높은 비중으로 쓰인다는 점, 둘째,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은 학부모에게 지원받는 항목으로 세입·세출액이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공립에서 가장 비중 있게 지출되었던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수익자부담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표 III-1-12〉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세부내역

내역	세부내역
1. 인건비	
1) 봉급	기본급, 교원봉급, 직원봉급
2) 정액수당	직책수당, 교원수당, 사무직원수당, 고용원수당, 근속수당
3) 기타제수당	강사료,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u>직급보조비</u>
4)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5) 부담금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보험금, 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고용보험금, 퇴직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표 III-1-12 계속)

내역	세부내역
6)임시직급여	임시직급여, 일용잡급
2.관리운영비	
1)공통운영비	공과금, 기본운영비, 연료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용역비, 수수료, 특정사업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재산관리비(건물유지비, 공과보험료),
2)교수학습활동비	교육활동재료비, 행사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
3)연구장학비	장학금, 연구비
3.학교재무활동	
1)상환반환금	상환금, 반환금
2)적립금	
3)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토지 및 건물매입비),
4)과년도지출	
5)예비비	
4.학교운영지원비	
1)수익자부담교육비	방과후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특성화교육비, 특별활동비, 졸업앨범비, 교통비, 종일반운영비
2)학생복리비	학생보건비, 체력관리비, 안전공제회비

자료: 김은철·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56. <표 III-2-7> 를 수정·보완함.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연간 5억 4,77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건비로 2억 5,9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총지출의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전체지출 대비 비중 높은 항목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1억 4,060만 원, 25.5%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구성 항목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가 22.4%, 학교재무활동이 4.6% 순으로 전체 지출을 구성하고 있다.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560만 2천 원이고 이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 6천 원이 지출된다. 그 중 인건비 항목으로 22만 원이 지출되고, 관리운영비로 11만 8천 원이 지출된다.

<표 III-1-13>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547,700	328,600	5,602.9	446.9	413	
1.인건비	259,800	148,700	2,645.2	220.4	411	47.2
1)봉급	179,700	102,600	1,241.8	102.6	279	
2)정액수당	21,000	25,100	102.8	8.6	198	
3)기타제수당	16,700	20,700	95.4	7.9	231	
4)퇴직금	6,600	7,700	20.4	1.7	125	

(표 III-1-13 계속)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5)부담금	22,300	17,400	150.0	12.5	272	
6)임시직급여	26,500	35,800	121.8	10.1	186	
2. 관리운영비	140,600	113,700	1,427.2	118.9	410	25.5
1)공통운영비	78,800	73,400	698.1	58.2	358	
2)교수학습활동비	64,000	70,800	546.4	45.5	345	
3)연구장학비	4,800	8,900	10.8	0.9	91	
3. 학교재무활동	30,700	36,500	258.4	21.5	340	4.6
1)상환반환금	10,700	23,200	26.0	2.2	99	
2)적립금	22,600	21,500	34.7	2.9	62	
3)재산조성비	28,600	33,300	190.1	15.8	269	
4)과년도지출	6,300	7,500	4.0	0.3	26	
5)예비비	2,500	5,000	3.6	0.3	59	
4. 학교운영지원비	123,900	97,000	1,255	104.6	409	22.4
1)수익자부담교육비	120,300	96,100	1,176.7	98.1	395	
2)학생복리비	8,500	17,300	40.9	3.4	195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건비를 제외한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연간 2억 8,9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공립유치원 1개원 평균 세출총액 4억 5,630만 원보다 약 1억 6,720만 원 정도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 중 관리운영비로 1억 4,0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총지출의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 내역을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295만 7천 원으로 유아 1인당 월평균 24만 6천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289,100	200,400	2,957.7	246.5	413	
1. 관리운영비	140,600	113,700	1,427.2	118.9	410	48.3
2. 학교재무활동	30,700	36,500	258.4	21.5	340	8.7
3. 학교운영지원비	123,900	97,000	1,255.0	104.6	409	42.4

1) 지역 규모별 사립유치원 지출 현황

가) 대도시 사립유치원

대도시 사립유치원의 연간 지출총액은 6억 2,140만 원이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3억 500만 원을, 관리운영비의 경우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총액은 전체평균 세출총액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간 세출총액은 560만 2천 원으로 나타나 연간 579만 9천 원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총지출 규모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3억 2,810만 원, 사립유치원은 6억 2,14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전체 지출 규모가 큰 편이다. 이를 월 평균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도시의 공립유치원은 31만 7천 원, 사립유치원은 48만 3천 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지출 규모가 크다.

〈표 III-1-15〉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621,400	340,500	5,799.4	483.3	175	
1. 인건비	305,000	160,000	2,830	235.8	174	48.8
1) 봉급	220,400	118,300	1,093.2	91.1	93	
2) 정액수당	27,900	28,600	99.7	8.3	67	
3) 기타제수당	21,900	24,900	94.4	7.9	81	
4) 퇴직금	7,600	7,800	19.6	1.6	49	
5) 부담금	25,900	19,000	125.6	10.5	91	
6) 임시직급여	41,900	47,000	131.8	11.0	59	
2. 관리운영비	147,000	113,200	1,364	113.7	174	23.5
1) 공통운영비	86,900	69,200	676.5	56.4	146	
2) 교수학습활동비	64,600	63,100	488.8	40.7	142	
3) 연구장학비	5,200	10,200	10.9	0.9	40	
3. 학교재무활동	30,900	36,100	235.6	19.6	143	4.1
1) 상환반환금	4,300	8,900	7.2	0.6	32	
2) 적립금	41,200	31,100	35.1	2.9	16	
3) 재산조성비	30,700	34,600	184.9	15.4	113	
4) 과년도지출	5,500	6,700	3.8	0.3	13	
5) 예비비	2,500	5,300	4.6	0.4	35	
4. 학교운영지원비	146,800	106,600	1,369.8	114.2	175	23.6
1) 수익자부담교육비	145,300	105,900	1,317.2	109.8	170	
2) 학생복리비	5,800	16,000	31.5	2.6	103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건비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 지출총액은 3억 1,820만 원으로 대도시 사립유치원의 세출총액은 전체평균 세출총액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체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간 세출총액은 295만 7천 원이고, 대도시 사립유치원은 연간 296만 9천 원이다. 총지출 규모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3억 440만 원, 사립유치원은 3억 1,82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전체 지출규모가 다소 큰 편이다.

〈표 III-1-16〉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318,200	202,100	2,969.4	247.4	175	
1. 관리운영비	147,000	113,200	1,364	113.7	174	45.9
2. 학교재무활동	30,900	36,100	235.6	19.6	143	7.9
3. 학교운영지원비	146,800	106,600	1,369.8	114.2	175	46.1

#### 나)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중소도시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5억 4,830만 원이고, 인건비 항목은 2억 4,420만 원으로 전체 세출총액에서 인건비 항목이 44.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관리운영비가 1억 5,840만 원으로 세출총액의 28.6%를 구성한다. 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 44만 6천 원보다 높은 46만 4천 원이다. 이를 중소도시에 위치한 공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총액 7억 4,180만 원보다 중소도시 사립유치원의 지출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공립유치원이 53만 7천 원, 사립유치원이 46만 4천 원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III-1-17〉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548,300	338,700	5,572	464.3	124	
1. 인건비	244,200	141,800	2,461.7	205.1	123	44.2
1) 봉급	172,300	90,900	1,242.4	103.5	88	
2) 정액수당	18,000	25,400	103.1	8.6	70	
3) 기타제수당	16,300	20,800	102.6	8.5	77	
4) 퇴직금	6,100	5,500	17.3	1.4	35	



(표 III-1-17 계속)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5)부담금	20,300	14,900	146.0	12.2	88	
6)임시직급여	23,500	33,900	125.0	10.4	65	
2. 관리운영비	158,400	131,400	1,596.2	133	123	28.6
1)공통운영비	85,200	98,100	726.1	60.5	104	
2)교수학습활동비	76,000	86,400	635.0	52.9	102	
3)연구장학비	7,400	10,700	13.3	1.1	22	
3. 학교재무활동	33,100	36,900	262.6	21.9	97	4.7
1)상환반환금	15,300	31,100	41.3	3.4	33	
2)적립금	17,600	13,300	37.3	3.1	26	
3)재산조성비	28,700	31,700	181	15.1	77	
4)과년도지출	4,400	6,500	1.4	0.1	4	
5)예비비	1,900	3,000	1.5	0.1	10	
4. 학교운영지원비	119,500	88,000	1,194.6	99.5	122	21.4
1)수익자부담교육비	116,200	85,300	1,141.9	95.2	120	
2)학생복리비	10,900	21,700	38.2	3.2	43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인건비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사립유치원의 지출 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세출 총액은 3억 610만 원이고, 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 24만 6천 원보다 많은 25만 9천 원이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공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총액 7억 2,440만 원보다 중소도시 사립유치원의 지출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공립유치원이 52만 4천 원, 사립유치원이 25만 9천 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표 III-1-18〉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306,100	215,300	3110.3	259.2	124	
1. 관리운영비	158,400	131,400	1,596.2	133.0	123	51.3
2. 학교재무활동	33,100	36,900	262.6	21.9	97	8.4
3. 학교운영지원비	119,500	88,000	1,194.6	99.5	122	38.4

## 다)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4억 3,4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는 2억 780만 원으로 전체 지출에서 47.9%를 차지한다. 같은 읍면지역 공립유치원은 연간 총 지출규모가 6억 79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은 48만 4천 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43만 7천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1-19〉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434,000	262,000	5,254.2	437.9	114	
1. 인건비	207,800	114,500	2,514.9	209.6	114	47.9
1) 봉급	147,700	82,400	1,536.8	128.1	98	
2) 정액수당	16,800	18,500	108.4	9.0	61	
3) 기타제수당	11,400	14,100	88.2	7.3	73	
4) 퇴직금	6,000	9,100	25.7	2.1	41	
5) 부담금	20,700	17,700	203.7	17.0	93	
6) 임시직급여	14,900	13,900	97.6	8.1	62	
2. 관리운영비	111,400	85,600	1,336.6	111.4	113	25.4
1) 공통운영비	61,500	41,900	704.9	58.7	108	
2) 교수학습활동비	51,600	61,300	553.2	46.1	101	
3) 연구장학비	2,400	2,900	7.2	0.6	29	
3. 학교재무활동	28,100	36,700	298.3	24.9	100	5.7
1) 상환반환금	12,500	23,100	43.5	3.6	33	
2) 적립금	14,400	9,800	30.6	2.5	20	
3) 재산조성비	25,300	33,100	212.3	17.7	79	
4) 과년도지출	8,300	9,100	7.9	0.7	9	
5) 예비비	2,800	5,500	4.1	0.3	14	
4. 학교운영지원비	92,900	80,500	1,104.5	92.0	112	21
1) 수익자부담교육비	84,500	78,200	941.9	78.5	105	
2) 학생복리비	12,200	14,700	63.2	5.3	49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지역 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5억 4,770만 원으로 공립유치원 4억 7,580만 원보다 높다. 사립유치원의 지출총액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6억 2,140만 원, 중소도시 5억 4,830만 원, 읍면지역 4억 3,400만 원 순으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여도 대도시 48만 3천 원, 중소도시 46만 4천 원, 읍면지역 43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건비를 제외한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 전체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2억 2,63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 공립유치원의 연간 총 지출 비용인 6억 10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은 47만 9천 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2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로 공립유치원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사립유치원은 한 학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유아가 배치되어 유아 1인당 비용이 적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표 III-1-20〉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	226,300	165,000	2,739.4	228.3	114	
1. 관리운영비	111,400	85,600	1,336.6	111.4	113	48.8
2. 학교재무활동	28,100	36,700	298.3	24.9	100	10.9
3. 학교운영지원비	92,900	80,500	1,104.5	92.0	112	40.3

## 2)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 지출 현황

사립유치원의 기관 규모별 분석에서 기관 규모의 분류기준은 공립유치원 기관 규모별 분석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세출총액을 보면, 대규모 기관이 8억 9,350만 원, 중규모 기관이 5억 1,790만 원, 소규모 기관이 2억 8,690만 원 이고, 이를 유아 1인당 연간지출액으로 보면, 대규모기관이 555만 7천 원, 중규모 581만 1천 원, 소규모기관이 528만 9천 원이다.

사립유치원의 기관 규모별 분석에서 유아 1인당 세출을 보면 중규모기관의 세출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 세출 비중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관리

운영비, 학교재무활동 항목을 제외하고 유아 1인당 항목비용이 중규모기관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 항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억 4,060만 원이며,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1만 8천 원이다.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대규모 기관은 12만 1천 원, 중규모 기관 12만 원, 소규모 기관 10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학교재무활동 항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3,070만 원이며,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2만 1천 원이다.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유아 1인당 월평균 학교재무활동비의 경우, 대규모 기관은 2만 2천 원, 중규모 기관 2만 1천 원, 소규모 기관 1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비율 (%)
			연간	월간		
총액(합계)	547,700	328,600	5,581.3	465.1	413	
대규모	893,500	300,800	5,557.7	463.1	114	
중규모	517,900	211,000	5,811.1	484.3	167	
소규모	286,900	176,800	5,289.1	440.8	132	
1. 인건비(합계)	259,800	148,700	2,635.0	219.6	411	47.2
대규모	417,200	140,100	2,572.3	214.4	113	46.3
중규모	245,200	92,700	2,734.8	227.9	166	47.1
소규모	143,500	79,100	2,645.5	220.5	132	50
2. 관리운영비(합계)	140,600	113,700	1,421.7	118.5	410	25.5
대규모	234,200	129,900	1,456.4	121.4	114	26.2
중규모	130,200	88,400	1,451.4	120.9	166	25
소규모	71,900	59,600	1,305.6	108.8	130	24.7
3. 학교재무활동(합계)	30,700	36,500	257.4	21.4	340	4.5
대규모	49,300	46,800	268.9	22.4	100	4.8
중규모	27,200	28,800	262.5	21.9	144	4.5
소규모	16,700	24,900	222.9	18.6	96	4.2
4. 학교운영지원비(합계)	123,900	97,000	1,250.1	104.2	409	22.4
대규모	204,400	112,200	1,260.1	105	113	22.7
중규모	118,700	72,600	1,315.8	109.7	165	22.6
소규모	61,000	48,500	1,115.2	92.9	131	21.1

주: 목수준의 평균은 그 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으로 목수준의 비용 평균의 합이 항수준의 비용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비율의 경우도 총합이 100%가 넘을 수 있어 항목별 사례수를 제시함(총액대비 비율임).

기관 규모별 세출결산을 공립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사립유치원은 대규모 8억 9,350만 원, 중규모 5억 1,790만 원, 소규모 2억 8,690만 원이었으며,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6억 5,010만 원, 중규모 4억 5,730만 원, 소규모 3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평균 지출액은 대규모 555만 7천 원, 중규모 581만 1천 원, 소규모 528만 9천 원이고,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458만 2천 원, 중규모 472만 3천 원, 소규모 660만 3천 원으로 공·사립 간 유아 1인당 지출 규모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편 인건비를 제외한 사립유치원의 기관 규모별 세출총액을 살펴보면, 대규모 기관이 4억 8,000만 원, 중규모 기관이 2억 7,420만 원, 소규모 기관이 1억 4,340만 원이었으며, 유아 1인당 연간지출액은 대규모 기관이 298만 5천 원, 중규모 307만 6천 원, 소규모 기관이 264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연간	월간	
총액(합계)	289,100	200,400	2,957.7	246.5	413
대규모	480,000	203,500	2,985.4	248.8	114
중규모	274,200	140,900	3,076.4	256.4	167
소규모	143,400	108,800	2,643.7	220.3	132

#### 다.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비교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인건비 제외)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2억 8,910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4억 5,630만 원보다 현격하게 낮았다. 사립유치원의 지출 총액을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 3억 1,820만 원, 중소도시 3억 610만 원, 읍면지역 2억 2,630만 원 순으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사립유치원의 1인당 지출 총액은 중소도시 25만 9천 원, 대도시 24만 7천 원, 읍면지역 22만 8천 원 순이며, 공립유치원의 1인당 지출총액은 중소도시가 52만 4천 원, 읍면지역이 47만 9천 원, 대도시가 29만 4천 원이었다.

〈표 III-1-23〉 지역 규모별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비교: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연간	월간		
공립	총액	456,300	366,100	4,739.2	394.9	196
	대도시	304,400	177,200	3,532.9	294.4	116
	중소도시	724,400	525,900	6,296.4	524.7	49
	읍면지역	601,000	282,900	5,749.9	479.2	31
사립	총액	289,100	200,400	2,957.7	246.5	413
	대도시	318,200	202,100	2,969.4	247.4	175
	중소도시	306,100	215,300	3,110.3	259.2	124
	읍면지역	226,300	165,000	2,739.4	228.3	114

기관 규모별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을 공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전체 세출총액의 규모는 사립유치원이 대규모 4억 8,000만 원, 중규모 2억 7,420만 원, 소규모 1억 4,340만 원,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6억 3,400만 원, 중규모 4억 3,710만 원, 소규모 3억 3,700만 원이다. 유아 1인당 지출액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연평균 대규모 298만 5천 원, 중규모 307만 6천 원, 소규모 264만 3천 원이고,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446만 8천 원, 중규모 451만 5천 원, 소규모 621만 6천 원으로 나타나 유아 1인당 지출 규모면에서도 공·사립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III-1-24〉 기관 규모별 공·사립유치원 세출결산 비교: 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		사례수	
			연간	월간		
공립	총액	456,300	366,100	4,739.2	394.9	196
	대규모	634,000	268,000	4,468.5	372.4	44
	중규모	437,100	240,600	4,515.1	376.3	103
	소규모	337,000	559,400	6,216.4	518.0	49
사립	총액	289,100	200,400	2,957.7	246.5	413
	대규모	480,000	203,500	2,985.4	248.5	114
	중규모	274,200	140,900	3,076.4	256.4	167
	소규모	143,400	108,800	2,643.7	220.3	132

인건비를 제외한 공·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을 지역 규모별로 비교하면, 공·사립유치원 모두 중소도시 지역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았으며, 기관 규모별로는 공립은 소규모 기관이, 사립은 중규모 기관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준유아교육비의 표준원아 1인당 비용(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과 비교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17만 8천 원, 사립유치원 20만 3천 원으로 사립은 실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과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2배 이상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는 소규모 44만 6천 원, 중규모 44만 2천 원, 대규모 42만 5천 원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아 1인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3). 공립유치원은 규모가 클수록 실제 지출이 적어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공시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신뢰도, 공·사립유치원의 회계항목의 불일치 등이 반영된 자료의 활용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비용함수를 활용한 유아교육비 산출<sup>6)</sup>

우리나라 공립, 사립유치원은 아직 예·결산의 표준화 및 공개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공립의 경우는 공립 초·중등학교의 예산회계 과목과 일치율을 보이나, 사립은 운영주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관계로 사립 간 또는 공립유치원간 일관된 예·결산 과목으로 상호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유아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이후로 활용된 공립<sup>7)</sup> 및 사립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을 비용함수모형에 의해 새롭게 산출하여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와의 비교를 해 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립 및 사립유치원 별로 확보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 결산자료(2012년~2014년)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모형이라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급당, 원아당 경비를 단위 유치원별로 산출하였다.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이 전문가판단모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본 장에서 산출되는 유아교육비가 기존 연구와 얼마나 유사한지 향후 안정적인 유아교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본 절은 공동연구자인 엄문영 교수(경인교육대학교)에 의해 작성된 원고임.

7) 기존 표준유아교육비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의 병설인 경우 초등학교와 병합하여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로 초등과 분리가 쉽지 않아 주로 단설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범위 제한은 비용함수모형에서 중요한 사례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가. 분석 방법 및 자료 수집

본 절에서는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출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이 가능한 사례 유치원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자료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집하였다.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총 8,864개원(공립 4,646개원, 사립 4,218개원)의 공시대상 중 8,838개원이 2016년 10월 유치원 정보공시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공시항목은 정시항목(유치원 원비 현황 등) 11종, 수시항목(식단표, 위반 내용 등) 2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동일한 정보를 3년의 회계연도 간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별로 자료를 정리하였고,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아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산출 및 추정된 원아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를 활용해서 설립주체별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출결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사례수는 공립유치원은 3년간 총 876개원(292개원의 3년간 자료), 사립유치원은 3년간 총 1,446개원(482개원의 3년간 자료)이었다. 최초로 수합된 유치원 표본은 공립유치원 293개원, 사립유치원 497개원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결산액의 값이 없거나, 학급 수, 원아 수 값이 비정상적인 유치원의 사례 등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교육비용함수 산출 시에 결측치가 회귀계수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되, 최대한 적은 표본수를 감안하여 연도별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1~2년 데이터만이라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급적 표본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분석에 포함된 총 사례수는 공립 292개원, 사립 482개원이었다.

## 나. 분석을 위한 모형: 패널 분석에 의한 이원고정효과모형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설립 유형별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2개의 공립유치원과 482개의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 여건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이라 함은 동일하지 않지만 어떠한 개체에 대해 관측 시점이 여러개인 시계열데이터와 특정한 시점에서의 관측 개체가 여러 개인 횡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놓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3년간 결산자료를 유치원명과 지역이라는 기준 변수를 토대로 동일한 유치원의 결산액, 원아 수, 학급 수 등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므로 패널데이터의 성격에 부합하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은 횡단면데이터나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분석은 일반적으로 횡단면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다른 개체의 여러 시점에서의 관측 자료를 모은 시계열데이터 분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남수경·윤홍주·이희숙·안미라·이쌍철·이호준, 2016; 민인식·최필선, 2012).

첫째, 패널분석은 동일한 개체를 연도별로 반복 관찰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에 비해 더 많은 관찰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 검증 과정에서 늘어난 사례수 만큼의 표준오차가 줄어들어 추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패널분석은 횡단면자료가 한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는 한계를 극복해 준다. 즉, 여러 번 같은 개체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한 시점에서 측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개체별 이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 기준변수 등의 효과가 개체가 가지는 특수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을 제거하여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시간별로 달라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시간의 효과를 제어하는 것에서도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따라 개체가 성숙되거나 개체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충격으로써 시간적 효과(예, 갑작스런 경제충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정책 또는 우리가 모형에서 관심을 가지는 기준변수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패널데이터는 이러한 시간의 효과도 동시에 제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본 장에서는 패널분석에 의한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립 유형별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 활용한 기본 분석모형은 <수식 1>과 같다.

$$\text{<수식 1>}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mu_{it}$$

여기서  $Y_{it}$ 는 't'년도에 'i' 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X_{it}$ 는 't'년도에 'i' 유치원의 원아 수를,  $Z_{it}$ 는 't'년도에 'i' 유치원의 학급 수를,  $\mu_{it}$ 는 확률오차항을 의미한다. 회귀분석결과로 도출될 절편  $\alpha$ 는 모든 유치원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비로 볼 수 있다. 또한  $\beta$ 는 원아 수가 1명 더 증가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유치원 기본운영비이며,  $\gamma$ 는 학급 수가 1학급 더 증가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유치원 기본운영비를 의미한다.

패널분석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기술한 개체 및 시간의 고정적 효과는 특정 유치원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불변적 특성인 개체고정효과와 특정 시점에 모든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인 시간고정효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유치원이 속한 지역적 특성, 관찰하기 어려운 유치원의 풍토나 문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체고정효과는 모형에서 당연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유치원으로 교부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에 따른 국세 내국세 수입, 물가 상승률, 특정 지역의 시·도세 및 지방교육세 수입 등과 같은 요인은 특정한 연도에만 나타나지만, 모든 유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특정 시점별 이질적인 외부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간고정효과에 대한 고려도 개체고정효과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산출되는 유아교육비의 비용함수모형은 언급한 개체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한 <수식 2>와 같은 최종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text{<수식 2>}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lambda_i + \tau_t + e_{it}$$

<수식 1>에서 오차항  $\mu_{it}$ 는 개체고정효과인  $\lambda_i$ , 시간고정효과인  $\tau_t$ , 그리고 확률오차인  $e_{it}$ 로 분해된다. 본 연구는 <수식 2>와 같은 최종모형을 활용하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 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 결과

### 1) 회귀분석 결과

유치원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에 의한 교육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2-1>과 같다. 유아교육비를 합동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독립 및 종속변수로 활용된 값은 원아 수와 학급 수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 내역 중 유치원 기본운영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1) 기본적인 교육활동, (2) 학교 일반운영, (3) 학교 재무활동, (4)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중 급식과 보건 관리 비용, (5) 교육활동 지원 중 교무업무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비를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유치원 기본운영비만을 분리하여 설정한 이유는 누리과정 등의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인적자원 운용비, 특수교육,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비 등 학부모 부담수입으로 운영되는 각종 경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표 III-2-1〉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분석 결과 비교

단위: 원, 개

변수	합동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원아 수	-727,267** (258,652)	-1,347,152 (945,807)	-1,223,358 (936,700)
학급 수	13,700,000*** (2,838,187)	-2,693,420 (7,419,603)	-2,846,489 (7,336,472)
상수항	225,000,000*** (21,600,000)	374,000,000*** (82,000,000)	388,000,000*** (81,200,000)
개체고정	No	Yes	Yes
시간고정	No	No	Yes
N	876	876	876

주: ( )안에 제시된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임.

\*  $p < .05$  \*\*  $p < .01$  \*\*\*  $p < .001$

본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유아교육비 산출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용한 유아교육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유아교육비} = (\text{기본경비}) + (\text{학급당 경비} \times \text{학급 수}) + (\text{원아당 경비} \times \text{원아 수})$$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비는 모든 유치원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원당 기

본경비', '학급당 경비'와 '학급 수'를 곱한 값, '원아당 경비'에 '원아 수'를 곱한 값을 더해서 산출하게 된다. '기본경비'는 모든 유치원에 원아 수나 학급 수에 관계없이 주어져야 하는 일종의 '원당 경비'의 의미를 가지며, 상수항의 값이다. '원아당 경비'는 원아 수의 회귀계수를, '학급당 경비'는 학급 수의 회귀계수 값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산출한 유아교육비는 <표 III-2-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은 2014년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2장에서 제시한 표본 유치원의 항목별 공립유치원별 평균 세출액을 바탕으로 이를 전국 기준의 유치원수 현황자료와 결합하여 전국 가상치를 계산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각 공립유치원이 지출한 기본운영비라고 가정하고, '유아교육비 산출액'은 교육비용함수의 이원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산된 전국 공립유치원 원아 수, 학급 수, 유치원 수와 학급당 경비, 원아당 경비, 기본경비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닌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서 유치원별 필요 기본운영비를 의미한다.

차액(C)은 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과 유아교육비 산출액 간 규모의 차이를 의미한다. 여기서 양(+)의 값은 유치원 기본운영비가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음(-)의 값이 나타나는 경우는 원아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한 후 표준유아교육 즉, 필요 기본운영비 만큼의 유치원 기본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표 III-2-2> 국·공립유치원 학생 및 학급 수 현황

단위 : 명, 개, 개원

구분		2016	2015	2014
유치원 수	전체	4,696	4,678	4,619
	국립	3	3	3
	공립	4,693	4,675	4,616
원아 수	전체	170,349	161,339	148,269
	국립	258	256	258
	공립	170,091	161,083	148,011
학급 수	전체	9,810	9,283	8,693
	국립	15	15	15
	공립	9,795	9,268	8,678

〈표 III-2-3〉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 현황 및 유아교육비

단위 : 천 원, 개원

산출기초(2014 기준)		기본운영비 지출액(A)	유아교육비 산출액(B)	차액(C=A-B)
원당 평균	209,100	965,832,900	1,586,098,735	-620,265,835 (-C/A=0.64)
유치원 수	4,619			
원아 수	148,269			
학급 수	8,693			

주: 제시된 지출액과 유아교육비 결산 기준 연도는 2014년임.

분석 결과 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이 산출된 유아교육비보다 6,202억 6,583만 5천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유치원, 원아 수, 학급 수와 실제 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을 기초로 비교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액은 2014년에 유치원들이 실제로 지출했다고 가정되는 기본운영비 수준을 기준으로 64%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2014년에 필요 유아교육비 대비 지출 비율이 61% 수준에 그쳤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 2) 보정율의 적용 : 현행 예산 규모 하에서의 유아교육비 재산출

교육비용함수를 통해 산출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총액은 2014년 기준으로 지출된 유치원 기본운영비 총액에 비해 6,202억 6,583만 5천 원을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2014년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배분 규모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한 교육활동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202억 6,583만 5천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유·초·중등 예산과 요즘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액을 확보하고 또 실제로 유치원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는 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은 다소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정책 목표와 가용재원 규모에 따라서 결정될 일인 것이다.

따라서 산출된 유아교육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공립유치원의 교육재정 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추가적인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출된 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과 유아교육비 간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앞서 <표 III-2-2>, <표 III-2-3>을 통해 지출된 유치원 기본운영비는 9,658억 원 수준이었고, 산출된 유아교육비는 1조 5,861억 원 수준이었다. 이 둘 간의 비율은 0.609이다. 이를 실제 공립유치

원의 실제 기본운영비 배분 시에 적용한다면 원아 수, 학급 수를 고려한 공립유치원별 기본운영비의 배분 비율은 유지하되, 실제로 운용 가능한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각 공립유치원이 공통의 보정률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C_k = 388,000 - 1,223x_{k1} - 2,846x_{k2}$$

여기서,  $SC_k$ 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단위: 천 원)

388,000(천 원)은 기본경비,

1,223(천 원)은 원아당 경비,  $x_{k1}$ =유치원 원아 수,

2,846(천 원)은 학급당 경비,  $x_{k2}$ =유치원 학급 수.

※ 보정률 적용시, 위의 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0.609를 곱하여 재산출

### 3) 원아 1인당 유아교육비의 산출

이상과 같이 산출된 교육비용함수에 의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원아 1인당 월별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앞서 제시한 공립유치원의 2014년 기준 평균 학급 수와 평균 학급당 원아 수를 고려하고, 위의 함수식에서 보정률 0.609를 곱하여 원당, 학급당, 원아당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출 결과 표준 조건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32명이고, 학급 수가 2개인 유치원인데, 이러한 표준 조건의 공립유치원은 전체 유아교육비가 2억 860만 원, 원아 1인당 64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53만 5천 원으로 산출된다.

## 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 결과

### 1) 회귀분석 결과

사립유치원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에 의한 교육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2-4>와 같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합동회귀

모형, 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독립 및 종속변수로 활용된 값은 원아 수와 학급 수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 내역 중 유치원 기본운영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1) 관리운영비 중 공통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2) 학교재무활동 중 재산조성비를 제외한 금액, (3) 학교운영지원비 중 학생복리비를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고려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의 분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인건비 중 봉급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운영비 항목을 선정하였다.<sup>8)</sup>

〈표 III-2-4〉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분석 결과 비교

(단위: 원, 개)

변수	합동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원아 수	-134,031 (1,881,309)	2,729,620 (4,533,124)	3,270,902 (4,589,528)
학급 수	-6,849,427 (35,800,000)	-59,800,000 (76,900,000)	-38,700,000 (77,600,000)
상수항	280,000,000 (174,000,000)	322,000,000 (504,000,000)	33,200,000 (558,000,000)
개체고정	No	Yes	Yes
시간고정	No	No	Yes
N	1,446	1,446	1,446

주: ( )안에 제시된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임.

〈표 III-2-5〉 사립유치원 학생 및 학급 수 현황

단위 : 명, 개, 개원

구분	2016	2015	2014
유치원 수	4,291	4,252	4,207
원아 수	533,789	521,214	504,277
학급 수	25,980	24,792	24,348

8) 연구 과정에서 각 사립유치원의 세출항목이 상이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집된 유치원의 세출금액들도 이상치나 잘못된 오기가 일부 발견되었다. 데이터의 클리닝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되, 적은 사례수를 감안하여 개체 자체를 상실하는 방법 대신, 항목별로 결측치를 고려하여 분석에 가능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III-2-6〉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 현황 및 유아교육비

단위 : 천 원, 개원

산출기초(2014 기준)		기본운영비 지출액(A)	유아교육비 산출액(B)	차액(C=A-B)
원당 평균	193,400	813,633,800	846,894,867	-33,261,067 (-C/A=0.04)
유치원 수	4,207			
원아 수	504,277			
학급 수	24,348			

주: 제시된 지출액과 유아교육비 결산 기준 연도는 2014년임.

분석 결과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이 산출된 유아교육비보다 불과 332억 6,106만 7천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사립유치원, 원아 수, 학급 수와 실제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 지출액을 기초로 비교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액은 2014년에 유치원들이 실제로 지출했다고 가정되는 기본운영비 수준을 기준으로 4%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2014년에 필요 유아교육비 대비 지출 비율이 96%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며, 이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35%p 더 유아교육비에 근접하여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

## 2) 보정율의 적용 : 현행 예산 규모 하에서의 유아교육비 재산출

교육비용함수를 통해 산출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총액은 2014년 기준으로 지출된 유치원 기본운영비 총액에 비해 332억 6,106만 7천 원이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2014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배분 규모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가 332억 6,106만 7천 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한정된 교육재정과 국가 경제상황,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투자의 방향과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만,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 규모에 있어 공립유치원의 6,200억 원보다는 현실성이 있다. 앞서 <표 III-2-5>와 <표 III-2-6>을 통해 지출된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는 8,136억 원 수준이었고, 산출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8,469억 원 수준이었다. 이 둘 간의 비율은 0.961이다. 이를 실제 사립유치원의 실제 기본운영비 배분 시에 적용한다면 원아 수, 학급 수를 고려한 공립유치원별 기본운영



비의 배분 비율은 유지하되, 실제로 운용 가능한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각 사립 유치원의 지원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C_k = 33,200 + 3,271x_{k1} - 38,700x_{k2}$$

여기서,  $SC_k$ 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단위: 천 원)

33,200(천 원)은 기본경비,

3,271(천 원)은 원아당 경비,  $x_{k1}$ =유치원 원아 수,

38,700(천 원)은 학급당 경비,  $x_{k2}$ =유치원 학급 수.

※ 보정을 적용시, 위의 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0.961을 곱하여 재산출

### 3) 원아 1인당 유아교육비의 산출

이상과 같이 산출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원아 1인당 월별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앞서 제시한 사립유치원의 2014년 기준 평균 학급 수와 평균 학급당 원아 수를 고려하고, 위의 함수식에서 보정률 0.961을 곱하여 원당, 학급당, 원아당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출 결과 표준 조건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122명이고, 학급 수가 6개인 유치원인데, 이러한 표준 조건의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아교육비가 1억 9,163만 원, 원아 1인당 157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원아 1인당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13만 1천 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원아 1인당 월별 금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모든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운영비의 회계항목으로 인건비를 모두를 제외하고 종속변수를 구성한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마. 시사점

이상과 같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2012~2014년 세출결산 자료를 패널 분석에 의해서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유아교육비 증축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향후 계속적으로 비용함수모형에 의한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루 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간 예산 과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산과목과 이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립유치원의 평균 지출액과 사립유치원의 평균 지출액을 201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출액은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이 원당 1,600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큰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투자 정도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는 서로 다른 회계 항목을 활용하고 있고, 항목별 하위 포함 회계과목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해 볼 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산출된 유아교육비의 96.1%가 투자되었고, 공립유치원은 이에 못 미치는 60.9%가 투자된 것으로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공립유치원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통해 유아교육비의 충족률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함수식은 원아 수와 학급 수 관계에서 다른 양상(+, - 부호)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수와 학급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두 원당 필요 유아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수는 (+)의 방향으로, 학급 수는 (-)의 방향으로 원당 유아교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적어 전체 학급 수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학급당 원아 수도 사립유치원이 많은 관계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 수 증가가 비용체증을 유발하는 요소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원아 수가 늘어날수록 여차피 투입되는 고정비용 성격의 비용이 단위당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산출된 유아교육비는 제한된 사례수를 제한된 회계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추정 효율치를 보장하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다. 그러나 사례수와 결측치는 전국 규모로 유아교육비를 적용했을 때, 여전히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투자액과 산출된 유아교육비 간의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유치원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 결과를 실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기본운영비 배분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유치원정보공시 사이트에 탑재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세출결산서를 지역 규모별, 유치원 규모별로 분석하여 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수집된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비용함수를 활용한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유치원의 연평균 세출총액은 4억 7,580만 원으로,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1만 1천 원이다. 공립유치원의 지출 현황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총액 규모를 지역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가 7억 4,180만 원, 읍면지역이 6억 790만 원, 대도시가 3억 2,810만 원 순으로 세출총액이 높았다.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도시 31만 7천 원, 중소도시 53만 7천 원, 읍면지역이 48만 4천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기관 3억 5,800만 원, 중규모기관 4억 5,730만 원, 대규모기관 6억 5,0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은 494만 1천 원이었으며, 소규모 기관의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이 660만 3천 원, 중규모 기관은 472만 3천 원, 대규모 기관은 458만 2천 원이었다. 소규모, 중규모 기관 모두 대규모 기관보다 유아 1인당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사립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5억 4,77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인건비로 2억 5,9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총지출의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립유치원의 지출총액을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 6억 2,140만 원, 중소도시 5억 4,830만 원, 읍면지역 4억 3,400만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여도 대도시 48만 3천 원, 중소도시 46만 4천 원, 읍면지역 43만 7천 원으로 마찬가지로의 순서이다. 공립유치원의 1인당 지출총액은 중소도시가 53만 7천 원, 읍면지역이 48만 4천 원, 대도시가 31만 7천 원 순으로 세출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유

치원의 기관 규모별 세출결산을 비교하면, 전체 세출총액의 규모면에서 사립유치원은 대규모 8억 9,350만 원, 중규모 5억 1,790만 원, 소규모 2억 8,690만 원,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6억 5,010만 원, 중규모 4억 5,730만 원, 소규모 3억 5,800만 원이다. 한편 유아 1인당 지출액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연평균 대규모 555만 7천 원, 중규모 581만 1천 원, 소규모 528만 9천 원이고, 공립유치원은 대규모 458만 2천 원, 중규모 472만 3천 원, 소규모 660만 3천 원이다. 공·사립 간 유아 1인당 지출규모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건비를 제외한 지역 규모별 세출결산을 비교하면, 공·사립유치원 모두 중소도시 지역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았으며, 기관 규모별로는 공립유치원은 소규모 기관이, 사립유치원은 대규모 기관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준유아교육비의 표준원아 1인당 비용(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과 비교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17만 8천 원, 사립유치원 20만 3천 원으로 사립은 실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과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2배 이상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립 및 사립유치원 별로 확보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 결산 자료(2012년~2014년)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모형이라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급당, 원아당 경비를 단위 유치원별로 산출한 결과, 표준 조건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32명이고, 학급 수가 2개인 유치원인데, 이러한 표준 조건의 공립유치원은 전체 유아교육비가 2억 860만 원, 원아 1인당 64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53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표준 조건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122명이고, 학급 수가 6개인 유치원인데, 이러한 표준 조건의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아교육비가 1억 9,163만 원, 원아 1인당 157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원아 1인당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13만 1천 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원아 1인당 월별 금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모든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운영비의 회계항목으로 인건비를 모두를 제외하고 종속변수를 구성한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IV.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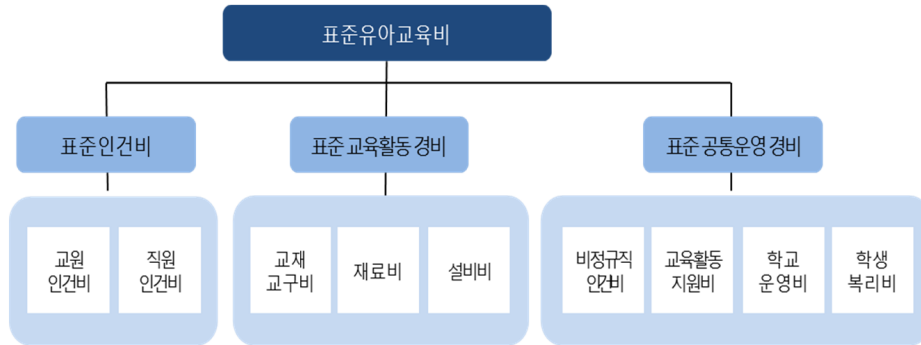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을 수정·보완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모형을 토대로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를 산출하였으며, 표준유아교육비 규모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표준유치원 모형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유치원 모형의 구성요소인 표준학급 수, 표준원아 수, 표준교직원 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통계자료(2015년)와 비교하여 2016년 산출 모형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의 유치원 수,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 직원 수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모형을 적용·산출하여 2016년 산출결과를 2015년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추이를 분석하였다.

#### 가.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및 구성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수행된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4차년도 연구로서,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연구(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와 동일한 개념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정의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률상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19). 또한,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에서의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인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 반영하고, 세 항목을 합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세부 내용은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 나. 표준유치원 모형<sup>9)</sup>

표준유치원 모형은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선행연구인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의 모형을 따르되, 산출한 수치는 최근 통계자료와 비교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2016년 표준 모형을 확정하였다.

### 1) 표준학급 수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을 검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 국립유치원을 제외한 총 공·사립유치원 수는 8,927개원으로 공립유치원 52.4%, 사립유치원 47.6%로 공립유치원 비율이 다소 높다. 반면, 학급 수는 총 34,060학급으로,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공립유치원보다 약 2.7배 많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대다수인 병설유치원이 1~2학급의 소규모 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립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는 2.0학급, 사립유치원은 5.8학급으로 평균 학급 수에서도 공·사립 간 차이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기관 당 평균 학급 수도 공·사립 모두 증가하였는데, 사립유치원이 5.5학급에서 5.8학급으로 상승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표 IV-1-1 참조).

9) 표준유치원 모형은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김은설 등(2014)의 모형을 적용하되,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함. 이에 따라 김은설 등(2014)의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고, 이를 2014년 기준 통계자료와 비교 검토함.

〈표 IV-1-1〉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수 현황(2013-2015)

단위: 개원(%)

구분	유치원 수			학급 수			평균 학급 수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공립	4,675 (52.4)	4,616 (52.3)	4,574 (52.7)	9,268	8,678	8,205	2.0	1.9	1.8
사립	4,252 (47.6)	4,207 (47.7)	4,101 (47.3)	24,792	24,348	22,377	5.8	5.8	5.5
계	8,927 (100.0)	8,823 (100.0)	8,675 (100.0)	34,060	33,026	30,582	-	-	-

주: 국립유치원은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의 모형을 적용한 표준유치원 규모별·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표준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단위: 학급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3세반	0	0	1	1	1	2	2	2	3	3	3	4	4	4	
4세반	0	1	1	1	2	2	2	3	3	3	4	4	4	5	
5세반	1	1	1	2	2	2	3	3	3	4	4	4	5	5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3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3세반	5	5	5	6	6	6	7	7	7	8	8	8	9	9	11
4세반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1
5세반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1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56.

## 2) 표준원아 수

2015년 기준, 전체 유치원 원아 수는 총 682,297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 원아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당 평균 원아 수는 공립 34.5명, 사립 122.6명이다. 설립 유형별 학급 당 원아 수는 공립 17.4명, 사립 21.0명으로 공·사립 평균 20.0명이다.

〈표 IV-1-3〉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현황(2013-2015)

단위: 명

구분	전체 원아 수			기관 당 원아 수			학급 당 원아 수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공립	161,083	148,011	141,827	34.5	32.1	31.0	17.4	17.1	17.3
사립	521,214	504,277	516,136	122.6	119.9	125.9	21.0	20.7	23.1
계	682,297	652,288	657,963	76.4	73.9	75.8	20.0	19.8	21.5

주: 국립유치원은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세반 15명, 4세반 20명, 5세반 20명을 기준으로 표준원아 수를 결정하고, 이를 유치원 규모별 학급편성 모형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치원 규모별 표준원아 수 모형을 제시하였다(표 IV-1-4 참조).

〈표 IV-1-4〉 유치원 규모별 표준원아 수 모형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3세반	0	0	15	15	15	30	30	30	45	45	45	60	60	60	
4세반	0	20	20	20	40	40	40	60	60	60	80	80	80	100	
5세반	20	20	20	40	40	40	60	60	60	80	80	80	100	100	
계	20	40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205	220	240	260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3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3세반	75	75	75	90	90	90	105	105	105	120	120	120	135	135	165
4세반	100	10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160	160	180	180	180	220
5세반	10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160	160	180	180	180	200	220
계	275	295	315	330	350	370	385	405	425	440	460	480	495	515	605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57.

모형에 따라 산출한 학급별 표준원아 수를 실제 원아 수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IV-1-5>와 같다. 공립유치원의 실제 원아 수는 표준원아 수보다 15,847명 적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원아 수보다 실제 원아 수가 60,199명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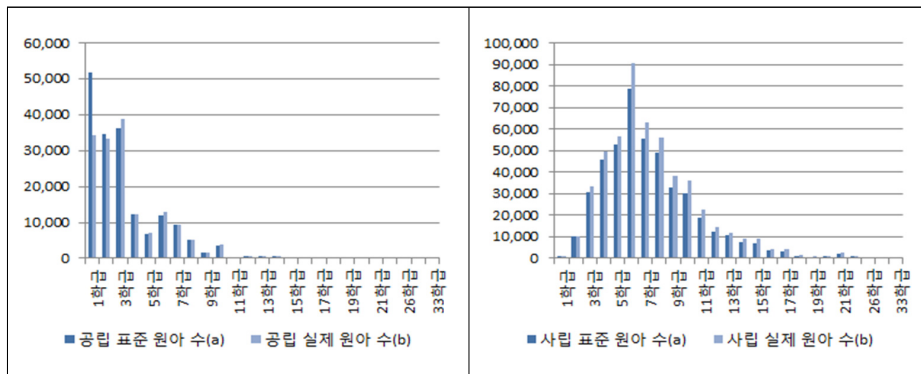
〈표 IV-1-5〉 학급 수별 표준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2015

단위: 개원, 명

구분	유치원 수			표준원아 수(a)			실제 원아 수(b)			차이(a-b)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1학급	2,598	66	2,664	51,960	1,320	53,280	34,357	1,170	35,527	17,603	150
2학급	868	261	1,129	34,720	10,440	45,160	33,251	10,378	43,629	1,469	62
3학급	661	564	1,225	36,355	31,020	67,375	38,836	33,393	72,229	-2,481	-2,373
4학급	163	612	775	12,225	45,900	58,125	12,363	49,496	61,859	-138	-3,596
5학급	72	556	628	6,840	52,820	59,660	7,004	56,935	63,939	-164	-4,115
6학급	110	719	829	12,100	79,090	91,190	12,883	90,770	103,653	-783	-11,680
7학급	72	429	501	9,360	55,770	65,130	9,372	63,119	72,491	-12	-7,349
8학급	35	328	363	5,250	49,200	54,450	5,110	55,972	61,082	140	-6,772
9학급	9	201	210	1,485	33,165	34,650	1,501	38,492	39,993	-16	-5,327
10학급	20	163	183	3,700	30,155	33,855	3,739	36,034	39,773	-39	-5,879
11학급	2	93	95	410	19,065	19,475	424	22,650	23,074	-14	-3,585
12학급	3	56	59	660	12,320	12,980	579	14,392	14,971	81	-2,072
13학급	3	44	47	720	10,560	11,280	682	11,957	12,639	38	-1,397
14학급	2	30	32	520	7,800	8,320	551	9,308	9,859	-31	-1,508
15학급	-	26	26	-	7,150	7,150	-	9,092	9,092	-	-1,942
16학급	1	12	13	295	3,540	3,835	259	4,206	4,465	36	-666
17학급	-	11	11	-	3,465	3,465	-	4,172	4,172	-	-707
18학급	1	4	5	330	1,320	1,650	172	1,552	1,724	158	-232
19학급	-	2	2	-	700	700	-	957	957	-	-257
20학급	-	3	3	-	1,110	1,110	-	1,262	1,262	-	-152
21학급	-	6	6	-	2,310	2,310	-	2,759	2,759	-	-449
22학급	-	3	3	-	1,215	1,215	-	1,263	1,263	-	-48
26학급	-	1	1	-	480	480	-	604	604	-	-124
27학급	-	1	1	-	495	495	-	528	528	-	-33
33학급	-	1	1	-	605	605	-	753	753	-	-148
계	4,675	4,252	8,927	176,930	461,015	637,945	161,083	521,214	682,297	15,847	-60,199

주: 1) 국립유치원은 통계에서 제외함.  
 2) 유치원 수는 0학급 115개원(공립 55개원, 사립 60개원) 제외.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그림 IV-1-2] 학급 수별 표준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차이

### 3) 표준교직원 수

#### 가) 정규직 표준교직원 수

2015년 기준, 유치원의 정규직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12,598명, 사립유치원은 38,379명으로 총 50,977명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공·사립유치원 모두 교원 수가 증가하였다. 기관 당 평균 교원 수는 공립이 2.7명, 사립이 9.0명이고, 학급 당 교원 수는 공립 1.4명, 사립 1.5명으로 2014년과 동일하다. 유치원의 정규직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은 752명, 사립은 3,057명으로 총 3,809명이다. 2013년과 비교하여 약 절반 정도 줄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공립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립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당 직원 수는 공립 0.2명, 사립 0.7명이고, 학급 당 직원 수는 공립 0.1명, 사립 0.1명으로 공·사립 모두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표 IV-1-6 참조).

〈표 IV-1-6〉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직원 수 현황(2013-2015)

단위: 명

구분			공립	사립	계
교원	전체 교원 수	2015	12,598	38,379	50,977
		2014	11,911	36,599	48,510
		2013	10,974	35,129	46,103
	기관 당 교원 수	2015	2.7	9.0	-
		2014	2.6	8.7	-
		2013	2.4	8.6	-
	학급 당 교원 수	2015	1.4	1.5	-
		2014	1.4	1.5	-
		2013	1.3	1.6	-
직원	전체 직원 수	2015	752	3,057	3,809
		2014	616	3,505	4,121
		2013	1,762	6,962	8,724
	기관 당 직원 수	2015	0.2	0.7	-
		2014	0.1	0.8	-
		2013	0.4	1.7	-
	학급 당 직원 수	2015	0.1	0.1	-
		2014	0.1	0.1	-
		2013	0.2	0.3	-

주: 국립유치원은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10학급 이상의 극대규모 유치원에는 2명의 원감을 배치하고, 부장교사는 모형에서 제외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IV-1-7〉 표준유치원 인력 배치 기준

단위: 명

구분		인력 배치기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교원	원장	1	1	1	1
	원감	0	1	1	2
	담임교사	학급당 1명			
행정원		0	1	2	2

주: 소규모 1~3학급, 중규모 4~6학급, 대규모 7~9학급, 극대규모 10학급 이상인 유치원임.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60.

유치원 인력 배치 기준을 토대로 규모별로 표준교직원 수 모형을 제시하면 <표 IV-1-8>과 같다. 공립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1, 2학급의 경우 원장(감)을 따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의 연구와 동일하게 병설유치원 1, 2학급은 별도의 원장(감) 없이 담임교사만 배치하였다.

〈표 IV-1-8〉 규모별 표준교직원 수 모형

단위: 명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11 학급	12 학급	13 학급	14 학급
교원	소계	1	2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원장(감)	1*	1*	1	2	2	2	2	2	2	3	3	3	3	3
	정규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행정직(계)		0	0	0	1	1	1	2	2	2	2	2	2	2	2
구분		극대규모													
		15 학급	16 학급	17 학급	18 학급	19 학급	20 학급	21 학급	22 학급	26 학급	27 학급	30 학급	33 학급	36 학급	
교원	소계	18	19	20	21	22	23	24	25	29	29	30	36	36	
	원장(감)	3	3	3	3	3	3	3	3	3	3	3	3	3	
	정규교사	15	16	17	18	19	20	21	22	26	26	27	33	33	
행정직(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주: \* 표시는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고려하여 교원 수 합계에 담임교사만 포함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60.

2015년 교육통계에 제시된 실제 유치원 교직원 수와 표준교직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IV-1-9>와 같다. 공립의 경우 표준교원 수 10,892 명, 실제 교원 수 12,598명으로 실제 교원이 1,706명 더 많고, 사립은 표준교원 수 32,414명, 실제 교원 수 38,379명으로 실체가 5,965명 더 많다.

<표 IV-1-9> 학급 수별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2015

단위: 원, 명

구분	유치원 수			표준교원 수(a)			실제 교원 수(b)			차이(a-b)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1학급	2,598	66	2,664	2,598	66	2,664	3,294	162	3,456	-696	-96
2학급	868	261	1,129	1,736	522	2,258	2,315	1,043	3,358	-579	-521
3학급	661	564	1,225	2,644	2,256	4,900	2,599	2,975	5,574	45	-719
4학급	163	612	775	978	3,672	4,650	909	4,068	4,977	69	-396
5학급	72	556	628	504	3,892	4,396	558	4,401	4,959	-54	-509
6학급	110	719	829	880	5,752	6,632	1,116	6,801	7,917	-236	-1049
7학급	72	429	501	648	3,861	4,509	770	4,565	5,335	-122	-704
8학급	35	328	363	350	3,280	3,630	433	3,959	4,392	-83	-679
9학급	9	201	210	99	2,211	2,310	116	2,669	2,785	-17	-458
10학급	20	163	183	260	2,119	2,379	277	2,383	2,660	-17	-264
11학급	2	93	95	28	1,302	1,330	27	1,456	1,483	1	-154
12학급	3	56	59	45	840	885	47	942	989	-2	-102
13학급	3	44	47	48	704	752	59	759	818	-11	-55
14학급	2	30	32	34	510	544	36	570	606	-2	-60
15학급	-	26	26	-	468	468	-	557	557	-	-89
16학급	1	12	13	19	228	247	16	246	262	3	-18
17학급	-	11	11	-	220	220	-	269	269	-	-49
18학급	1	4	5	21	84	105	25	89	114	-4	-5
19학급	-	2	2	-	44	44	-	53	53	-	-9
20학급	-	3	3	-	69	69	-	79	79	-	-10
21학급	-	6	6	-	144	144	-	151	151	-	-7
22학급	-	3	3	-	75	75	-	79	79	-	-4
26학급	-	1	1	-	29	29	-	26	26	-	3
27학급	-	1	1	-	30	30	-	38	38	-	-8
33학급	-	1	1	-	36	36	-	34	34	-	2
계	4,675	4,252	8,927	10,892	32,414	43,306	12,598	38,379	50,977	-1,706	-5,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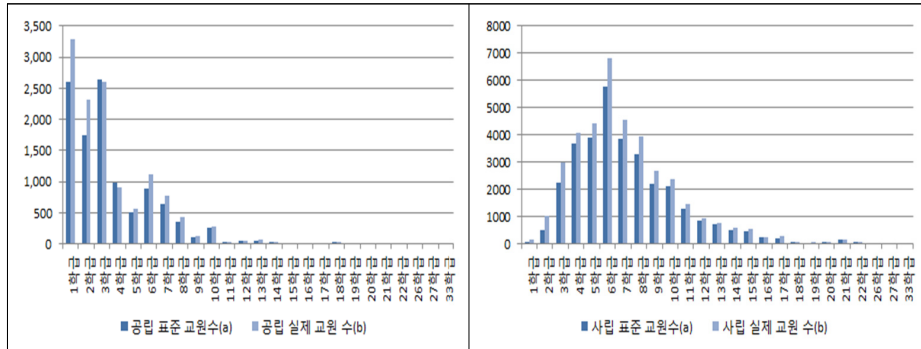
주: 1) 국립유치원 3개원은 통계에서 제외함.

2) 유치원 수는 0학급 115개원(공립 55개원, 사립 50개원) 제외 값임.

3) 교원 수는 0학급 6명(공립1명, 사립5명) 제외 값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그림 IV-1-3] 학급 수별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차이

표준정규직 직원 수와 실제 정규직 직원 수를 비교하면 <표 IV-1-10>과 같다. 공립의 경우 표준 모형에 의한 직원 수에 비해 실제 직원 수가 164명 많으나 사립은 597명 적다. 이는 정규직 행정직원 배치 기준을 공·사립에 적용했을 때, 사립유치원의 정규직 행정직원이 상대적으로 공립에 비해 적으나 표준 모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표준 모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표 IV-1-10> 학급 수별 표준정규직 행정직원 수와 실제 행정직원 수: 2015

단위: 원, 명

구분	유치원 수			표준직원 수(a)			실제 직원 수(b)			차이(a-b)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1학급	2,598	66	2,664	-	-	-	27	17	44	-	-
2학급	868	261	1,129	-	-	-	24	133	157	-	-
3학급	661	564	1,225	-	-	-	10	359	369	-	-
4학급	163	612	775	163	612	775	12	486	498	151	126
5학급	72	556	628	72	556	628	83	559	642	-11	-3
6학급	110	719	829	110	719	829	256	727	983	-146	-8
7학급	72	429	501	144	858	1,002	190	516	706	-46	342
8학급	35	328	363	70	656	726	83	383	466	-13	273
9학급	9	201	210	18	402	420	30	233	263	-12	169
10학급	20	163	183	40	326	366	55	202	257	-15	124
11학급	2	93	95	4	186	190	5	121	126	-1	65
12학급	3	56	59	6	112	118	9	78	87	-3	34
13학급	3	44	47	6	88	94	6	81	87	0	7

(표 IV-1-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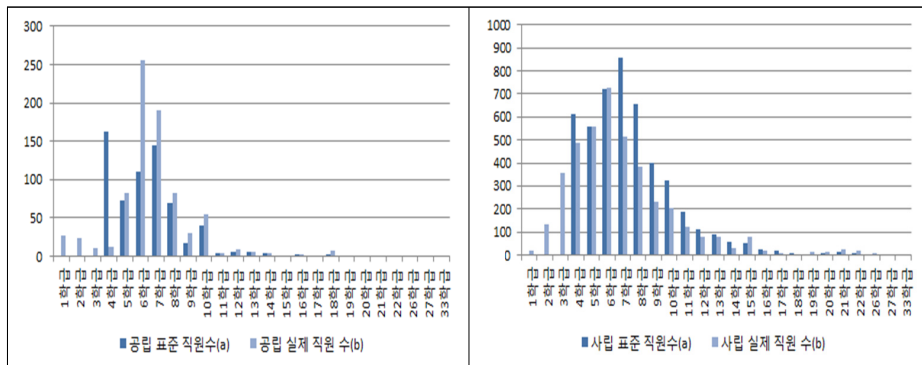
구분	유치원 수			표준직원 수(a)			실제 직원 수(b)			차이(a-b)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14학급	2	30	32	4	60	64	4	31	35	0	29
15학급	-	26	26	-	52	52	-	80	80	-	-28
16학급	1	12	13	2	24	26	3	20	23	-1	4
17학급	-	11	11	-	22	22	-	7	7	-	15
18학급	1	4	5	2	8	10	8	-	8	-6	-
19학급	-	2	2	-	4	4	-	14	14	-	-10
20학급	-	3	3	-	6	6	-	12	12	-	-6
21학급	-	6	6	-	12	12	-	27	27	-	-15
22학급	-	3	3	-	6	6	-	21	21	-	-15
26학급	-	1	1	-	2	2	-	7	7	-	-5
27학급	-	1	1	-	2	2	-	1	1	-	1
33학급	-	1	1	-	2	2	-	3	3	-	-1
계	4,675	4,252	8,927	641	4,715	5,356	805	4,118	4,923	-164	597

주: 1) 공립의 일부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립의 실제 직원 수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2) 유치원 수는 0학급 115개원(공립 55개원, 사립 50개원) 제외 값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그림 IV-1-4] 학급 수별 표준직원 수와 실제 직원 수 차이

나) 비정규직 표준교직원 수

유치원의 비정규직 표준직원 수 모형은 학습보조와 행정보조로 구성된다. 학습보조는 학급 수와 원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이 필요한 인력임을 고려하여 3학

급 당 1명씩 추가 배치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에 따라 규모별 비정규직 표준교직원 수 모형은 <표 IV-1-11>과 같다.

<표 IV-1-11> 규모별 비정규직 표준직원 수 모형

단위: 명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11 학급	12 학급	13 학급	14 학급
계	2	2	2	3	3	3	4	4	4	6	6	6	7	7
학습보조	1	1	1	2	2	2	3	3	3	4	4	4	5	5
행정보조	1	1	1	1	1	1	1	1	1	2	2	2	2	2
구분	극대규모													
	15 학급	16 학급	17 학급	18 학급	19 학급	20 학급	21 학급	22 학급	26 학급	27 학급	33 학급			
계	7	8	8	8	9	9	9	10	11	11	13			
학습보조	5	6	6	6	7	7	7	8	9	9	11			
행정보조	2	2	2	2	2	2	2	2	2	2	2			

주: 소규모 1~3학급, 중규모 4~6학급, 대규모 7~9학급, 극대규모 10학급 이상인 유치원임.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63.

다) 전체 표준교직원 수

규모별 전체 표준교직원 수 모형은 정규직 표준교직원 수와 비정규직 표준교직원 수를 모두 반영한 결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12>와 같다.

<표 IV-1-12> 규모별 전체 표준교직원수 모형

단위: 명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11 학급	12 학급	13 학급	14 학급	
계	3	4	6	10	11	12	15	16	17	21	22	23	25	26	
교 원	소계	1	2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원장(감)	1*	1*	1	2	2	2	2	2	2	3	3	3	3	3
	정규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행정직(계)	0	0	0	1	1	1	2	2	2	2	2	2	2	2	
비 정 규 직	소계	2	2	2	3	3	3	4	4	4	6	6	6	7	7
	학습보조	1	1	1	2	2	2	3	3	3	4	4	4	5	5
	행정보조	1	1	1	1	1	1	1	1	1	2	2	2	2	2

(표 IV-1-12 계속)

구분	극대규모											
	15 학급	16 학급	17 학급	18 학급	19 학급	20 학급	21 학급	22 학급	26 학급	27 학급	33 학급	
계	27	29	30	31	33	34	35	37	42	43	51	
교원	소계	18	19	20	21	22	23	24	25	29	30	36
	원장(감)	3	3	3	3	3	3	3	3	3	3	3
	정규교사	15	16	17	18	19	20	21	22	26	27	33
행정직(계)	2	2	2	2	2	2	2	2	2	2	2	
비정규직	소계	7	8	8	8	9	9	9	10	11	11	13
	학습보조	5	6	6	6	7	7	7	8	9	9	11
	행정보조	2	2	2	2	2	2	2	2	2	2	2

주: \* 표시는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고려하여 교원 수 합계에 담임교사만 포함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64.

#### 다.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로 설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별로 품명, 경비지출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2013~2016년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IV-1-13>과 같다.

<표 IV-1-13>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및 방법

항목	구성 요소	산출 기준 및 방법(2016)	산출 기준 및 방법(2015)	산출 기준 및 방법(2014)	산출 기준 및 방법(2013)	
표준유아교육비	표준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공립)2015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24호봉	-(공립)2014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24호봉	-(공립)2013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24호봉	-(공립)2012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24호봉
			-(사립)2015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14호봉	-(사립)2014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14호봉	-(사립)2013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14호봉	-(사립)2012년 교육 공무원 봉급표 13호봉 급여
			-방법 전체 교원의 총 기본급/총 교원 수	-방법 전체 교원의 총 기본급/총 교원 수	-방법 전체 교원의 총 기본급/총 교원 수	-방법 전체 교원의 총 기본급/총 교원 수
		-(직원)2015년 행정직 8급 5호봉	-(직원)2014년 행정직 8급 5호봉	-(직원)2013년 행정직 8급 5호봉	-(직원)2012년 행정직 8급 5호봉	
		-방법 8급 5호봉 기본급 적용	-방법: 8급 5호봉 기본급 적용	-방법: 8급 5호봉 기본급 적용	-방법: 8급 5호봉 기본급 적용	



(표 IV-1-13 계속)

항목	구성요소	산출 기준 및 방법(2016)	산출 기준 및 방법(2015)	산출 기준 및 방법(2014)	산출 기준 및 방법(2013)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 (교원)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2015년 기본급 비율 적용 - (직원) 2014년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기본급 비율 적용	- 2014년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분석자료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 방법: 시·도별 총 인건비 중 유치원 교원 비율 적용하여 산출 후 시·도 평균 산출	- (교원)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2013년 기본급 비율 적용 - (직원) 2012년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기본급 비율 적용	- (교원)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공·사립 기본급 비율 적용 - (직원) 2012년 기준 제수당 등의 산출액에 기본급 비율 적용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 김은설 등(2014)의 항목/내구연한 검토 2015년 단위단가 적용 - 방법: 경비지출 단위별 (단위단가×소요기준/내구연한) 합산	- 시·도교육청 교구 기준 - 3-5세 누리과정 지도서를 토대로 필요물품을 기준으로 가격 산출 후 2014년 단가 산정 - 방법: 경비지출 단위별 (단위단가×소요기준/내구연한) 합산	- 시·도교육청 교구 기준 -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근거하여 소요물량 산출 후 시장가격 - 방법: 경비지출 단위별 (단위단가×소요기준/내구연한) 합산
	재료비	- 최은영 등(2015) 연구의 단위단가 적용 (2015년 시장 가격 반영)			
	설비비		- 우명숙 등(2012)년 설비비에 항목/내구연한 검토 수정·보완 후 2015년 단가 적용 - 방법: 경비지출 단위별 단위단가×소요기준/내구연한 합산	- 시·도 설비비에 물가상승률 적용 - 방법: 우명숙 등(2012) 설비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교무실 설비를 추가하여 산출	- 시·도 교육청 설비기준 - 방법: 우명숙 등(2012) 설비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표준공통운영	비정규직 인건비 (학습보조, 행정보조) 공공요금	- 최은영 등(2015) 연구의 단위단가에 임금, 물가상승률 적용	- 김은설 등(2014)의 운영비 항목 검토, 수정·보완 -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총액인건	- 인건비는 2012년 연구결과(우명숙 외, 2012) 적용 -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지비는 공·사립	- 2012년 세출 예산서의 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재무활동비를 기준으로 규모별 산출

(표 IV-1-13 계속)

항목	구성 요소	산출 기준 및 방법(2016)	산출 기준 및 방법(2015)	산출 기준 및 방법(2014)	산출 기준 및 방법(2013)
경비	기본적 경비		비 예비산정 기준 토대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방법: 2014 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중 공립 40개원 사례조사한 경비지출단위별 단위단가를 표준유치원 모형에 적용	유치원 15개 기관의 사례조사 결과로 산출 -방법: 2012 결산 내역 토대로 공립유치원 15개원 사례조사한 경비지출단위별 단위단가를 표준유치원 모형에 적용	-비정규직(학습보조, 행정보조) 공통 운영비를 규모별 산출인건비 산출 -방법: 유치원 규모별, 도시급별 공·사립 유치원 세출예산서의 항목별 연간 평균
	학생 복리비				

표준인건비와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공·사립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이는 공립과 사립 교직원의 호봉별 분포에 차이가 있고, 운영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교육활동경비와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경비 지출 단위별로 산출하게 되는데, 유치원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치원단위, 원아 수에 따라 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원아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 때 학급단위와 원아단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결과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유치원 규모에 따른 학급 수, 원아 수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따른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 2. 표준인건비 산출

### 가.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표준인건비의 구성 요소는 기본급과 제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 부담금이다.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고, 제수당은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며,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력 분포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기본급은 각각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 1) 공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산출 방법

공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의 별표 11에 제시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15.1.6. 개정)에 의해 지급된다. 봉급표에 제시된 최대 호봉인 40호봉 이후부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의하면 40호봉 이후 근가 1부터 근가 10까지는 1단계 상승 시 월 61,100원이 가산된다(2015.1.6. 개정).

2015년 공립유치원 호봉별 월 기본 지급액 및 교원 수는 <표 IV-2-1>과 같다. 2014년과 비교하면 1호봉이 1,363,900원에서 1,425,300원으로 61,400원 올랐고, 호봉 단계별 가산금도 다소 상승했다. 총 교원 수 역시 687명 증가하여 호봉별 교원 분포는 35호봉이 707명으로 가장 많고, 33~36호봉에 밀집되어 있다.

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호봉을 산출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의 연간 총 기본급을 합산한 결과는 4,493억 원<sup>10)</sup>이었으며,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3,566만 5천 원(월 297만 2천 원)이었다.

산출 결과를 토대로 평균 기본급과 가장 근접한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24호봉(301만 6천 원)을 공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기준으로 하였다. 2014년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3,452만 2천 원(월 287만 9천 원)으로 2014년에 비하여 기본급은 월 11만 5천 원 정도 상승했으며, 평균 호봉은 24호봉으로 동일하다.

<표 IV-2-1> 공립유치원 교원의 호봉과 기본급(2013-2015)

단위: 원, 명

구 분	2015		2014		2013 <sup>3)</sup>	
	월 기본급	교원수	월 기본급	교원수	월 기본급	교원수
1호봉	1,425,300	-	1,363,900	-	1,337,200	-
2호봉	1,468,600	-	1,405,400	-	1,377,800	-
3호봉	1,512,400	99	1,447,300	123	1,418,900	27
4호봉	1,556,000	4	1,489,000	1	1,459,800	8
5호봉	1,600,000	1	1,531,100	1	1,501,100	3
6호봉	1,643,900	51	1,573,100	42	1,542,300	60
7호봉	1,687,200	65	1,614,500	54	1,582,800	52
8호봉	1,730,600	246	1,656,100	194	1,623,600	166
9호봉	1,774,600	385	1,698,200	418	1,664,900	297

10) 호봉별 월지급액×호봉별 교원수×12개월을 1호봉부터 근가 10호봉까지 합한 총 금액으로 449,306,700,000 원이다.

(표 IV-2-1 계속)

구분	2015		2014		2013 <sup>3)</sup>	
	월 기본급	교원수	월 기본급	교원수	월 기본급	교원수
10호봉	1,822,500	544	1,744,000	452	1,709,800	326
11호봉	1,869,600	558	1,789,100	430	1,754,000	343
12호봉	1,917,600	536	1,835,000	407	1,799,000	376
13호봉	2,005,000	447	1,918,700	362	1,881,100	346
14호봉	2,092,700	498	2,002,600	417	1,963,300	423
15호봉	2,180,300	419	2,086,400	409	2,045,500	451
16호봉	2,268,000	440	2,170,300	485	2,127,700	472
17호봉	2,354,800	490	2,253,400	486	2,209,200	528
18호봉	2,445,600	517	2,340,300	545	2,294,400	494
19호봉	2,536,100	491	2,426,900	474	3,379,300	437
20호봉	2,626,300	480	2,513,200	420	2,463,900	322
21호봉	2,716,500	392	2,599,500	313	2,548,500	310
22호봉	2,816,800	322	2,695,500	311	2,642,600	259
23호봉	2,916,300	286	2,790,700	252	2,736,000	259
24호봉	3,016,000	256	2,886,100	255	2,829,500	205
25호봉	3,115,700	247	2,981,500	197	2,923,000	204
26호봉	3,215,600	204	3,077,100	204	3,016,800	156
27호봉	3,319,800	187	3,176,800	151	3,114,500	169
28호봉	3,423,900	143	3,276,500	163	3,212,300	144
29호봉	3,532,700	176	3,380,600	145	3,314,300	133
30호봉	3,641,900	147	3,485,100	140	3,416,800	194
31호봉	3,750,800	126	3,589,300	205	3,518,900	445
32호봉	3,859,300	206	3,693,100	428	3,620,700	555
33호봉	3,969,700	431	3,798,800	560	3,724,300	708
34호봉	4,079,800	562	3,904,100	715	3,827,500	731
35호봉	4,190,000	707	4,009,600	698	3,931,000	422
36호봉	4,299,800	695	4,114,600	413	4,033,900	313
37호봉	4,395,400	390	4,206,100	293	4,123,600	204
38호봉	4,491,100	273	4,297,700	200	4,213,400	193
39호봉	4,586,900	181	4,389,400	187	4,303,300	126
40호봉	4,682,100	175	4,480,500	130	4,392,600	41
근가1	4,743,200	117	4,539,000	49	4,450,000	31
근가2	4,804,300	43	4,597,500	31	4,507,400	21
근가3	4,865,400	26	4,656,000	44	4,564,800	7
근가4	4,926,500	18	4,714,500	33	4,622,200	3
근가5	4,987,600	7	4,773,000	27	4,679,600	6
근가6	5,048,700	6	4,831,500	19	4,737,000	-
근가7	5,109,800	2	4,890,000	7	4,794,400	2
근가8	5,170,900	-	4,948,500	12	4,851,800	2
근가9	5,232,000	1	5,007,000	6	4,909,200	-
근가10	5,293,100	1	5,065,500	3	4,966,600	-
계		12,598		11,911		10,974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16, 일부개정).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3)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71

## 2)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산출 방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사립유치원 교원이 동등한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기준을 공립유치원 교원 호봉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IV-2-2〉 사립유치원 교원의 호봉 분포(2013-2015)

단위: 명

구분	교원수			구분	교원수		
	2015	2014	2013 <sup>2)</sup>		2015	2014	2013 <sup>2)</sup>
1호봉	-	-	-	26호봉	290	266	278
2호봉	-	-	-	27호봉	255	247	222
3호봉	421	619	329	28호봉	254	246	221
4호봉	96	83	63	29호봉	211	207	173
5호봉	58	66	38	30호봉	223	208	208
6호봉	666	770	837	31호봉	202	208	154
7호봉	4,530	4,087	4,311	32호봉	185	168	176
8호봉	4,362	4,395	4,109	33호봉	169	178	147
9호봉	4,759	4,292	4,292	34호봉	165	141	119
10호봉	3,819	3,727	3,696	35호봉	170	151	117
11호봉	3,215	3,130	2,996	36호봉	129	112	92
12호봉	2,629	2,462	2,392	37호봉	100	94	69
13호봉	2,047	1,843	1,785	38호봉	107	81	71
14호봉	1,472	1,435	1,354	39호봉	70	78	62
15호봉	1,277	1,269	1,248	40호봉	312	260	177
16호봉	1,093	1,034	1,026	근가1	73	44	34
17호봉	927	887	846	근가2	31	27	19
18호봉	800	727	696	근가3	23	16	14
19호봉	632	602	508	근가4	14	7	14
20호봉	612	547	547	근가5	10	9	13
21호봉	485	452	380	근가6	2	13	9
22호봉	410	389	370	근가7	12	8	7
23호봉	369	355	328	근가8	8	6	5
24호봉	353	314	288	근가9	5	7	5
25호봉	303	312	267	근가10	24	20	17
				계	38,379	36,599	35,129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72

2015년 공립유치원 교원 호봉표에 적용한 사립유치원의 호봉별 교원 수는 <표 IV-2-2>와 같다. 총 교원 수는 공립의 약 3배인 38,379명으로, 호봉별 교원 분포는 작년과 동일하게 7~9호봉이 가장 많고 이후 점차 감소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기본급 산출한 결과, 9,715억 원<sup>11)</sup>이었으며,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2,531만 4천 원(월 211만 원)이었다.

2014년 평균 기본급인 2,409만 6천 원(월 200만 8천 원)과 비교하여 월 10만 2천 원이 높아졌으나 공립의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인 연 3,566만 5천 원(월 297만 2천 원)과 비교하면 월 86만 2천 원이 낮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기본급은 공립유치원 호봉표의 14호봉인 월 209만 3천 원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평균 호봉은 14호봉을 기준으로 하였다.

### 3) 교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산출 방법<sup>12)</sup>

인건비 중 기본급을 제외한 비용인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은 시·도별로 지급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그 총액이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명시되어 있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분석자료를 활용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당해 기본급 변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IV-2-3> 유치원 교원 1인당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구분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2015	공립	12,638	544	7,864
	사립	8,821	379	5,489
2014 <sup>1)</sup>	공립	12,625	543	7,856
	사립	8,812	379	5,483
2013 <sup>2)</sup>	공립	16,290	604	7,083
	사립	11,187	415	4,864

주: 사립은 공·사립 평균 호봉(공립 24호봉, 사립 14호봉) 기준 비율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2014).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분석자료. 내부자료.

2)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74.

11) 공립유치원 호봉별 월지급액×사립유치원 호봉별 교원수×12개월을 1호봉부터 근가 10호봉까지 합한 총 금액으로 971,527,292,400원이다.

12) 표준인건비의 교·직원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산출은 본 연구의 연구 협력자인 김현철(전라남도교육청 사무관)이 집필하였음.

#### 4) 직원의 표준인건비 산출 방법

직원의 인건비 기준은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3; 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우명숙 외, 2012)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으로 한다.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의 별표 3인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2015. 1. 6)에 따라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직원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호봉표가 없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 나. 산출 결과

#### 1) 교원 및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맞춤형복지, 법정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공립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5,671만 1천 원,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4,000만 3천 원이다.

〈표 IV-2-4〉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기본급(연)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2015	공립	평균 24호봉 35,665	12,638	544	7,864	56,711
	사립	평균 14호봉 25,314	8,821	379	5,489	40,003
2014 <sup>2)</sup>	공립	평균 24호봉 34,522	12,625	543	7,856	55,546
	사립	평균 14호봉 24,096	8,812	379	5,483	38,770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1.6., 일부개정).

2)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의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2014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분석자료.

정규직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은 공무원 수당규정(2015. 1. 6. 일부개정)을 토대로 기본급 8급 5호봉(2,088만 2천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공·사립유치원 직원의 1인당 표준인건비는 3,535만 7천 원이다.

〈표 IV-2-5〉 공·사립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단위: 천 원

	기본급(연)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2015	8급 5호봉 20,882	8,382	451	5,642	35,357
2014 <sup>2)</sup>	8급 5호봉 20,882	8,374	450	5,636	35,342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015. 1. 6. 일부 개정)인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75.

## 2) 유치원 규모별 표준인건비

공·사립유치원의 규모별로 유치원당 소요되는 표준인건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 규모에 따른 표준인건비는 3학급 2억 2,684만 4천 원, 4학급 3억 7,562만 3천 원, 7학급 5억 8,111만 3천 원, 10학급 8억 795만 7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규모별 표준인건비는 3학급 1억 6,001만 2천 원, 4학급 2억 7,537만 5천 원, 7학급 4억 3,074만 1천 원, 10학급 5억 9,075만 3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IV-2-6〉 공·사립유치원 규모별 표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학급										
	1	2	3	4	5	6	7	8	9	10	
공립	계	2	4	6	10	11	12	15	16	17	21
		56,711	113,422	226,844	375,623	432,334	489,045	581,113	637,824	694,535	807,957
	교원	1	2	4	6	7	8	9	10	11	13
		56,711	113,422	226,844	340,266	396,977	453,688	510,399	567,110	623,821	737,243
	직원	0	0	0	1	1	1	2	2	2	2
		0	0	0	35,357	35,357	35,357	70,714	70,714	70,714	70,714
사립	계	2	4	6	10	11	12	15	16	17	21
		40,003	80,006	160,012	275,375	315,378	355,381	430,741	470,744	510,747	590,753
	교원	1	2	4	6	7	8	9	10	11	13
		40,003	80,006	160,012	240,018	280,021	320,024	360,027	400,030	440,033	520,039
	직원	0	0	0	1	1	1	2	2	2	2
		0	0	0	35,357	35,357	35,357	70,714	70,714	70,714	70,714



## 다. 표준인건비 규모

### 1)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규모

공·사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수에 표준인건비를 적용하여 총 표준인건비 소요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공·사립유치원 총 표준교직원 수는 48,662명으로 표준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 표준인건비는 2조 1,037억 2,554만 6천 원이다.

<표 IV-2-7>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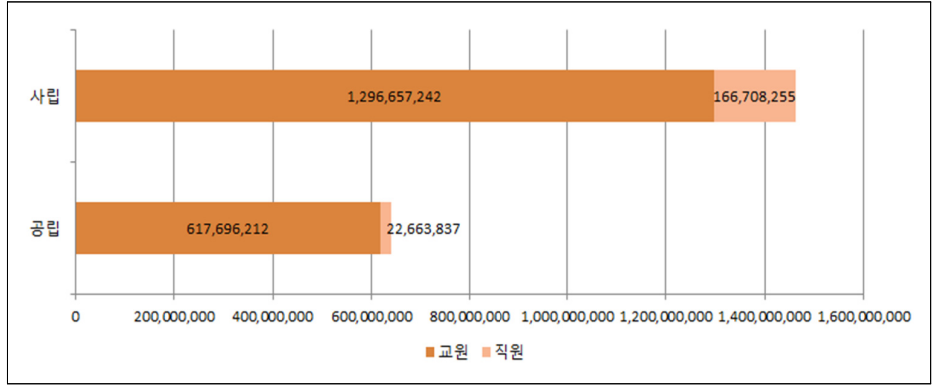
단위: 명, 천 원

구분	표준교직원수	1인당 평균단가	표준인건비 소요액		
총 계	48,662	-	2,103,725,546		
교직원 유형	교원	공립	10,892	56,711	617,696,212
		사립	32,414	40,003	1,296,657,242
		계	43,306	-	1,914,353,454
	직원	공립	641	35,357	22,663,837
		사립	4,715	35,357	166,708,255
		계	5,356	-	189,372,092
설립 유형	공립	교원	10,892	56,711	617,696,212
		직원	641	35,357	22,663,837
		계	11,533	-	640,360,049
	사립	교원	32,414	40,003	1,296,657,242
		직원	4,715	35,357	166,708,255
		계	37,129	-	1,463,365,497

주: 표준교직원 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교직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원은 1조 9,143억 5,345만 4천 원, 직원은 1,893억 7,209만 2천 원이다.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총 11,533명으로 총 표준인건비는 6,403억 6,004만 9천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총 37,129명으로 소요액은 총 1조 4,633억 6,549만 7천 원이다. 교직원 1인당 인건비 평균 단가는 공립이 사립보다 높으나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공립보다 약 3배 이상 많아서 총 소요액이 크다.

단위: 천 원



[그림 IV-2-1] 공·사립유치원 표준인건비 비교

2)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공·사립유치원의 교직원 표준인건비 소요액은 2조 1,037억 2,554만 6천 원으로 표준원아 수인 637,945명으로 나눈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연 평균 329만 8천 원, 월 27만 5천 원이다. 교직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준원아 1인당 공·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는 연 평균 300만 1천 원, 월 25만 원이다. 표준원아 1인당 공·사립유치원 직원 인건비는 연 평균 29만 7천 원, 월 2만 5천 원이다.

<표 IV-2-8>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6			2015		
	표준인건비 소요액	표준 원아 수	표준원아 1인당 표준 인건비 (월평균)	표준인건비 소요액	표준 원아 수	표준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월평균)
총 계	2,103,725,546	637,945	3,298(275)	1,983,168,892	619,935	3,199(267)
교직원 유형	공립	617,696,212	176,930	566,180,378	167,120	3,388(282)
	사립	1,296,657,242	461,015	2,813(234)	1,234,553,110	452,815
계	1,914,353,454	637,945	3,001(250)	1,800,733,488	619,935	2,905(242)
직원	공립	22,663,837	176,930	19,367,416	167,120	116( 10)
	사립	166,708,255	461,015	362( 30)	163,067,988	452,815
계	189,372,092	637,945	297( 25)	182,435,404	619,935	29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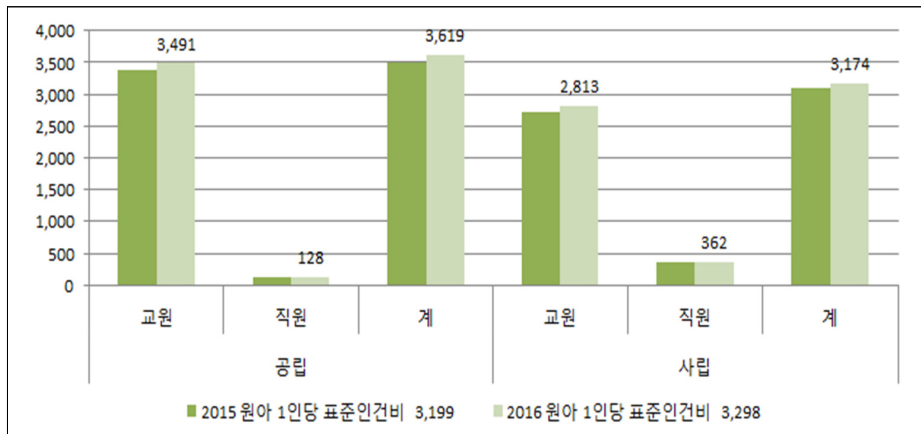
(표 IV-2-8 계속)

구분	2016			2015		
	표준인건비 소요액	표준 원아 수	표준원아 1인당 표준 인건비 (월평균)	표준인건비 소요액	표준 원아 수	표준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월평균)
공립	교원	617,696,212	3,491(291)	566,180,378	3,388(282)	
	직원	22,663,837	176,930	19,367,416	167,120	116( 10)
설립 유형	계	640,360,049	3,619(302)	585,547,794		3,504(292)
사립	교원	1,296,657,242	2,813(234)	1,234,553,110	2,726(227)	
	직원	166,708,255	461,015	163,067,988	452,815	360( 30)
	계	1,463,365,497	3,174(265)	1,397,621,098		3,087(257)

자료: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77의 결과임.

설립유형별로 공·사립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 표준원아 1인당 교원 인건비는 연 349만 1천 원(월 29만 1천 원)이고, 직원은 연 12만 8천 원(월 1만 1천 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원아 1인당 교원 인건비 연 281만 3천 원(월 23만 4천 원), 직원 인건비는 연 36만 2천 원(월 3만 원)으로, 교직원의 표준인건비를 합산하면 공립이 사립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15년 대비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연평균 9만 9천 원, 월평균 약 8천 원 상승하였다.

단위: 천 원



[그림 IV-2-2]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비교: 2015-2016

### 3.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 가.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 구성된다.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단위<sup>13)</sup>, 학급단위<sup>14)</sup>, 원아단위<sup>15)</sup>로 산출되며, 설비비의 경우 교직원단위 비용을 유치원단위 비용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2015년 시점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반영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에서 산출된 값을 원용하였다.

#### 나. 산출 결과

##### 1) 경비지출단위별 표준교육활동 경비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에서 산출된 표준교육활동 경비를 살펴보면 유치원단위 경비는 1,188만 9천 원, 학급단위는 900만 2천 원, 원아단위는 6만 5천 원이었다.

〈표 IV-3-1〉 경비지출단위별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2015

단위: 천 원

구분	유치원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교구비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2,644	16.4
재료비	-	-	-	-	-	-	-	-	-	-	3,361	-
설비비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2,997	49
계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9,002	65.4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91.

13) 유치원단위는 2개 학급 이상 또는 여러 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 설비에 필요한 경비로서 학교전체 차원에서 소요물량이 결정되므로 원 규모에 따라 경비에 차이가 있다.

14) 학급단위는 전체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량(경비)으로 1학급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15) 원아단위는 전체 유아에게 소요되는 물량(경비)으로 유아 1인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2) 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활동 경비

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3학급 4,154만 1천 원, 5학급 6,130만 9천 원, 7학급 8,107만 7천 원, 10학급 1억 1,072만 9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10학급의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3학급에 비해 약 2.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계	2,173	31,657	41,541	51,425	61,309	71,193	81,077	90,961	100,845	110,729
교구비	4,500	7,144	9,788	12,432	15,076	17,720	20,364	23,008	25,652	28,296
재료비	3,361	6,722	10,083	13,444	16,805	20,166	23,527	26,888	30,249	33,610
설비비	13,912	17,791	21,670	25,549	29,428	33,307	37,186	41,065	44,944	48,823

## 다. 표준교육활동 경비 규모

### 1) 유치원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

유치원단위와 학급단위 비용에 공·사립유치원 규모별 유치원 수와 학급 수 현황 자료를 적용하고, 원아단위 비용은 표준유치원 모형의 원아 수를 활용하여 유치원 규모별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를 추정한 결과, 유치원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549억 2,718만 원, 사립유치원 498억 3,868만 8천 원, 학급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829억 3,542만 6천 원, 사립유치원 2,231억 7,758만 4천 원, 원아단위 경비는 공립유치원 115억 7,122만 2천 원, 사립유치원 301억 5,038만 1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IV-3-3〉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교육활동 경비: 2016

단위: 천 원

구분	유치원단위 경비		학급단위 경비		원아단위 경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016	54,927,180	49,838,688	82,935,426	223,177,584	11,571,222	30,150,381
1학급	30,887,622	784,674	23,387,196	594,132	3,398,184	86,328
2학급	10,319,652	3,103,029	15,627,472	4,699,044	2,270,688	682,776
3학급	7,858,629	6,705,396	17,850,966	15,231,384	2,377,617	2,028,708
4학급	1,937,907	7,276,068	5,869,304	22,036,896	799,515	3,001,860

(표 IV-3-3 계속)

구분	유치원단위 경비		학급단위 경비		원아단위 경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5학급	856,008	6,610,284	3,240,720	25,025,560	447,336	3,454,428
6학급	1,307,790	8,548,191	5,941,320	38,834,628	791,340	5,172,486
7학급	856,008	5,100,381	4,537,008	27,033,006	612,144	3,647,358
8학급	416,115	3,899,592	2,520,560	23,621,248	343,350	3,217,680
9학급	107,001	2,389,689	729,162	16,284,618	97,119	2,168,991
10학급	237,780	1,937,907	1,800,400	14,673,260	241,980	1,972,137
11학급	23,778	1,105,677	198,044	9,209,046	26,814	1,246,851
12학급	35,667	665,784	324,072	6,049,344	43,164	805,728
13학급	35,667	523,116	351,078	5,149,144	47,088	690,624
14학급	23,778	356,670	252,056	3,780,840	34,008	510,120
15학급	0	309,114	0	3,510,780	0	467,610
16학급	11,889	142,668	144,032	1,728,384	19,293	231,516
17학급	0	130,779	0	1,683,374	0	226,611
18학급	11,889	47,556	162,036	648,144	21,582	86,328
19학급	0	23,778	0	342,076	0	45,780
20학급	0	35,667	0	540,120	0	72,594
21학급	0	71,334	0	1,134,252	0	151,074
22학급	0	35,667	0	594,132	0	79,461
26학급	0	11,889	0	234,052	0	31,392
27학급	0	11,889	0	243,054	0	32,373
33학급	0	11,889	0	297,066	0	39,567
2015 <sup>2)</sup>	57,806,674	60,229,090	78,119,356	219,180,696	10,929,648	29,614,101
2014 <sup>1)</sup>	79,558,514	80,633,118	81,803,850	223,098,690	7,930,750	20,825,750

주: 1)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15의 결과임.

2)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92.

## 2)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에 표준원아 수를 적용하여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를 산출한 결과, 전체 유치원의 교육활동경비 총액은 4,526억 48만 1천 원으로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71만 원(연평균), 5만 9천 원(월평균)이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의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은 1,494억 3,382만 8천 원,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84만 5천 원(연평균), 7만 원(월평균)이었다.

〈표 IV-3-4〉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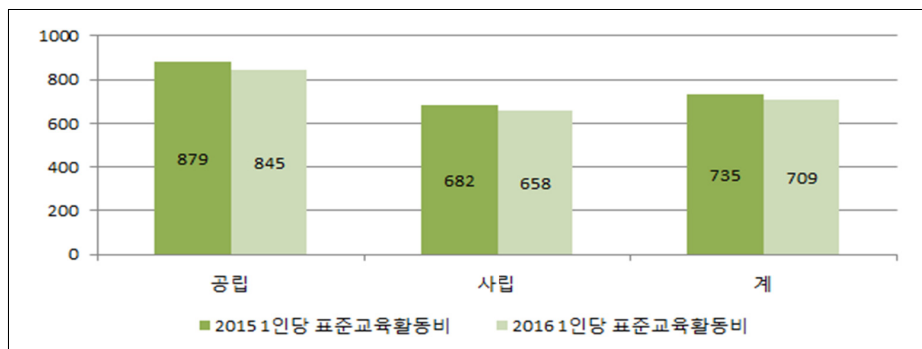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6			2015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유치원단위 계	54,927,180	49,838,688	104,765,868	57,806,674	60,229,090	118,035,764
학급단위 계	82,935,426	223,177,584	306,113,010	78,119,356	219,180,696	297,300,052
원아단위 계	11,571,222	30,150,381	41,721,603	10,929,648	29,614,101	40,543,749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	149,433,828	303,166,653	452,600,481	146,855,678	309,023,887	455,879,565
표준원아 수	176,930	461,015	637,945	167,120	452,815	619,935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월평균)	845 (70)	658 (55)	710 (59)	879 (73)	682 (57)	735 (61)

주: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93의 결과임.

한편 사립유치원의 표준교육활동 경비 총액은 3,031억 6,665만 3천 원,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65만 8천 원(연평균), 5만 5천 원(월평균)으로 산출되었다.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연평균 18만 7천 원, 월평균 1만 5천 원이 더 많았다. 2015년 대비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연평균 2만 5천 원, 월평균 2천 원 낮아졌는데, 이는 실제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 표준원아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단위: 천 원



[그림 IV-3-1]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비교: 2015-2016

## 4.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 가.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의 일관성 및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의 표준공통운영 경비의 개념 및 산출 방식을 수정·보완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 1)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방법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표준인건비에 포함되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표준공통운영 경비에 포함된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학습 보조 및 행정 보조를 위한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교육부(2014b)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한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결과를 준용하고자 한다.

〈표 IV-4-1〉 학습보조 및 행정보조 인건비(1인당 평균)

단위: 천 원

구분	학습보조	행정보조
연봉액	20,754	20,754
명절휴가비	200	200
교통보조비	720	720
장기근무가산금	720	720
4대 보험료(사업자부담분)	2,112	2,112
퇴직금	1,866	1,866
계	26,372	26,372

주: 1) 교육부(2014b)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함.

2) 연봉액은 기본급(1,999만 4천 원)과 기본급의 3.8%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76만 원)를 합한 값이며, 명절휴가비는 월 10만 원씩 2회, 교통보조비와 장기근무 가산금은 60,000원씩 12회, 4대 보험은 기관 부담 요율<sup>16)</sup>을 감안하여 산출함.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95.

16) 2015년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35%, 장기요양보험 6.55%, 고용보험 0.90%임.



## 2)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산출 방법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는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2015)의 연구결과에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나. 산출 결과

#### 1) 비정규직 인건비

전체 인건비 총계는 1~3학급까지 5,274만 4천 원, 학습보조 인력이 1명씩 추가되는 4~6학급에서 7,911만 6천 원, 7학급~9학급 1억 548만 9천 원이었으며, 행정보조 인력이 추가되는 10학급 이상의 경우에는 1억 3,186만 1천 원이었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표 IV-4-2〉 공·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세부항목	유치원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2015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9	105,489	105,489	131,861
학습보조	26,372	26,372	26,372	52,744	52,744	52,744	79,117	79,117	79,117	79,117
행정보조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52,744

주: 학습보조와 행정보조의 인건비 산출 단가 자체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인력 배치에 있어 인원 수가 달라 유치원단위 인건비가 달라짐.  
자료: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0.

#### 2) 공·사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공·사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유치원의 공통운영비(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총액은 1학급 7,652만 1천 원에서 시작하여, 10학급 1억 7,068만 5천 원이며, 10학급인 공립유치원의 공통운영비는 1학급인 공립유치원에 비해 2.2배가량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IV-4-3〉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세부 항목	유치원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b>2016*</b>	<b>76,521</b>	<b>82,389</b>	<b>91,138</b>	<b>104,810</b>	<b>125,480</b>	<b>134,795</b>	<b>145,089</b>	<b>153,463</b>	<b>161,352</b>	<b>170,685</b>	<b>651</b>	<b>29</b>
공공요금(계)	14,814	16,964	19,835	23,802	29,765	32,731	35,870	38,478	40,943	43,534	-	12
기본적경비(계)	61,707	65,425	71,303	81,007	95,715	102,064	109,218	114,984	120,409	127,152	510	-
학생복리비(계)	-	-	-	-	-	-	-	-	-	-	141	17
<b>2015</b>	<b>75,989</b>	<b>81,816</b>	<b>90,504</b>	<b>104,081</b>	<b>124,608</b>	<b>133,858</b>	<b>144,080</b>	<b>152,396</b>	<b>160,230</b>	<b>169,499</b>	<b>646</b>	<b>29</b>
공공요금(계)	14,711	16,846	19,697	23,637	29,558	32,503	35,621	38,211	40,658	43,231	-	12
기본적경비(계)	61,278	64,970	70,807	80,444	95,050	101,355	108,459	114,185	119,572	126,268	506	-
학생복리비(계)	-	-	-	-	-	-	-	-	-	-	140	17

주: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01을 곱한 값임.

자료: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1의 결과임.

〈표 IV-4-4〉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세부 항목	유치원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b>2016*</b>	<b>72,458</b>	<b>78,248</b>	<b>86,586</b>	<b>96,182</b>	<b>104,584</b>	<b>111,528</b>	<b>119,082</b>	<b>125,169</b>	<b>131,238</b>	<b>138,481</b>	<b>651</b>	<b>29</b>
공공요금(계)	12,895	15,056	17,678	20,812	23,487	26,040	28,715	30,968	33,186	35,532	-	12
기본적경비(계)	59,563	63,192	68,908	75,370	81,097	85,488	90,367	94,201	98,053	102,949	510	-
학생복리비(계)	-	-	-	-	-	-	-	-	-	-	141	17
<b>2015</b>	<b>71,954</b>	<b>77,704</b>	<b>85,984</b>	<b>95,513</b>	<b>103,857</b>	<b>110,753</b>	<b>118,254</b>	<b>124,299</b>	<b>130,326</b>	<b>137,518</b>	<b>646</b>	<b>29</b>
공공요금(계)	12,805	14,951	17,555	20,667	23,324	25,859	28,515	30,753	32,955	35,285	-	12
기본적경비(계)	59,149	62,753	68,429	74,846	80,533	84,894	89,739	93,546	97,371	102,233	506	-
학생복리비(계)	-	-	-	-	-	-	-	-	-	-	140	17

주: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01을 곱한 값임.

자료: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2의 결과임.

한편 사립유치원의 공통운영비(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총액은 1학급 7,245만 8천 원이었으며, 10학급 1억 3,848만 1천 원이었는데, 10학급 기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공통운영비(비정규직 인건비 제외)의 차이는 약 3,220만 4천 원이었다.

## 3) 경비지출단위별 표준공통운영 경비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5학급 기준 공통운영비 총액이 2억 459만 6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학교 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5학급 기준 공통운영비가 6,604만 4천 원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의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4-5〉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유치원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2016 (공립단설)	129,265	135,133	143,882	183,925	204,596	213,911	250,577	258,951	266,841	302,547	651	29	
2016 (공립병설)	30,235	35,256	41,409	56,281	66,044	69,051	80,886	83,589	-	-	651	29	
비정규직 인건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9	105,489	105,489	131,861	-	-	
공공요금	14,814	16,964	19,835	23,802	29,765	32,731	35,870	38,478	40,943	43,534	-	12	
기본적 경비	61,707	65,425	71,303	81,007	95,715	102,064	109,218	114,984	120,409	127,152	510	-	
학생복리비	-	-	-	-	-	-	-	-	-	-	-	141	17
2015 (공립단설)	128,733	134,560	143,248	183,197	203,724	212,974	249,569	257,885	265,719	301,360	646	29	
2015 (공립병설)	30,111	35,107	41,227	56,058	65,762	68,748	80,561	-	-	-	646	29	

주: 공립병설유치원은 우명숙 등(2012)이 제안한 단설유치원 대비 1학급 23.39%, 2학급 26.09%, 3학급 28.78%, 4학급 30.6%, 5학급-8학급 32.28%의 비율을 적용함.

자료: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3의 결과임.

〈표 IV-4-6〉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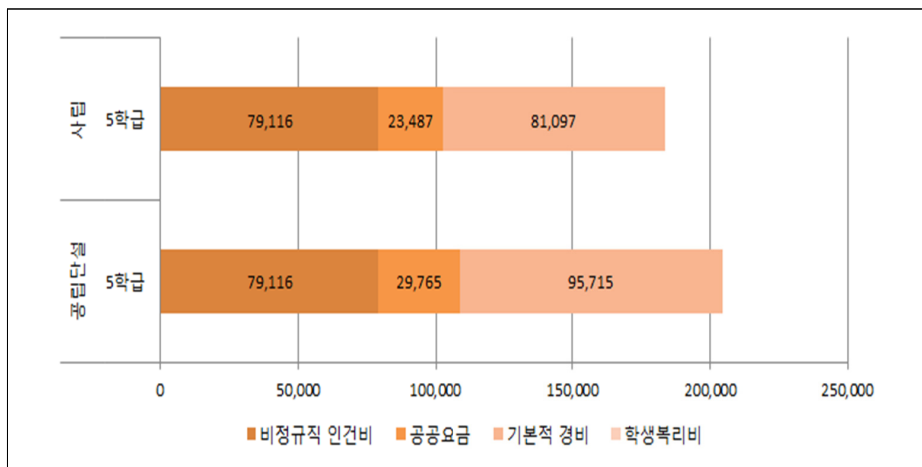
구분	유치원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2016 (사립)	125,202	130,992	139,330	175,298	183,700	190,644	224,571	230,658	236,728	270,342	651	29	
비정규직 인건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9	105,489	105,489	131,861	-	-	
공공요금	12,895	15,056	17,678	20,812	23,487	26,040	28,715	30,968	33,186	35,532	-	12	
기본적 경비	59,563	63,192	68,908	75,370	81,097	85,488	90,367	94,201	98,053	102,949	510	-	
학생복리비	-	-	-	-	-	-	-	-	-	-	-	141	17
2015	124,698	130,448	138,728	174,629	182,973	189,869	223,743	229,788	235,815	269,379	646	29	

주: 공립유치원의 경우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권장 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5년 자료는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4의 결과임.

사립유치원의 공동운영비는 총계(5학급 기준)는 1억 8,370만 원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의 표준공동운영 경비 2억 459만 6천 원에 비해 약 2,089만 6천 원(5학급 기준)이 적은 금액이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동운영비 총액 차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권장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표 IV-4-6 참조).

단위: 천 원



[그림 IV-4-1] 공·사립유치원 공동운영비 항목별 비교

#### 4) 유치원 규모별 표준공동운영 경비

유치원 규모별 표준공동운영 경비를 살펴보면, 공립단설은 3학급 1억 4,740만 1천 원, 5학급 2억 1,046만 1천 원, 7학급 2억 5,878만 8천 원, 10학급 3억 1,427만 7천 원이었으며, 10학급의 표준공동운영 경비는 3학급의 2.1배 수준이다. 한편 공립병설은 3학급 4,492만 8천 원, 5학급 7,190만 9천 원, 7학급 8,909만 7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공립병설은 공립단설 3학급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3학급 1억 4,284만 9천 원, 5학급 1억 8,956만 5천 원, 7학급 2억 3,278만 2천 원, 10학급 2억 8,207만 2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IV-4-7〉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공립단설	130,438	137,479	147,401	188,617	210,461	220,949	258,788	268,335	277,398	314,277
공립병설	31,408	37,602	44,928	60,973	71,909	76,089	89,097	92,973	-	-
사립	126,375	133,338	142,849	179,990	189,565	197,682	232,782	240,042	247,285	282,072

## 다. 표준공통운영 경비 규모

### 1)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 경비

2015년 기준, 유치원 수와 학급 수, 표준원아 수 현황은 <표 IV-4-8>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총 4,675개소로, 1학급 규모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립유치원은 총 4,252개소로 6학급 규모의 유치원이 가장 많았다. 표준원아 수는 사립유치원이 총 461,015명인데 반해 공립유치원은 2.6배가량 적은 176,930명이었으며, 이를 합한 총 표준원아 수는 637,945명이었다.

〈표 IV-4-8〉 공·사립유치원 수·학급 수·표준원아 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수				학급 수			표준원아 수		
	공립 단설	공립 병설	공립 계	사립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1학급	1	2,597	2,598	66	2,598	66	2,664	51,960	1,320	53,280
2학급	0	868	868	261	1,736	522	2,258	34,720	10,440	45,160
3학급	0	661	661	564	1,983	1,692	3,675	36,355	31,020	67,375
4학급	3	160	163	612	652	2,448	3,100	12,225	45,900	58,125
5학급	27	45	72	556	360	2,780	3,140	6,840	52,820	59,660
6학급	100	10	110	719	660	4,314	4,974	12,100	79,090	91,190
7학급	67	5	72	429	504	3,003	3,507	9,360	55,770	65,130
8학급	33	2	35	328	280	2,624	2,904	5,250	49,200	54,450
9학급	9	-	9	201	81	1,809	1,890	1,485	33,165	34,650
10학급	20	-	20	163	200	1,630	1,830	3,700	30,155	33,855
11학급	2	-	2	93	22	1,023	1,045	410	19,065	19,475
12학급	3	-	3	56	36	672	708	660	12,320	12,980
13학급	3	-	3	44	39	572	611	720	10,560	11,280
14학급	2	-	2	30	28	420	448	520	7,800	8,320
15학급	-	-	-	26	-	390	390	-	7,150	7,150
16학급	1	-	1	12	16	192	208	295	3,540	3,835
17학급	-	-	-	11	-	187	187	-	3,465	3,465
18학급	1	-	1	4	18	72	90	330	1,320	1,650
19학급	-	-	-	2	-	38	38	-	700	700

(표 IV-4-8 계속)

구분	유치원 수				학급 수			표준원아 수		
	공립 단설	공립 병설	공립 계	사립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20학급	-	-	-	3	-	60	60	-	1,110	1,110
21학급	-	-	-	6	-	126	126	-	2,310	2,310
22학급	-	-	-	3	-	66	66	-	1,215	1,215
26학급	-	-	-	1	-	26	26	-	480	480
27학급	-	-	-	1	-	27	27	-	495	495
33학급	-	-	-	1	-	33	33	-	605	605
합계	272	4,403	4,675	4,252	9,213	24,792	34,005	176,930	461,015	637,945

주: 1) 유치원 수, 학급 수 한국교육개발원(2015)의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으며, 표준원아 수는 유치원 규모별 표준원아 수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2) 유치원 수는 0학급 115개원(공립 55개원, 사립 60개원)을 제외 값임.

설립유형별로 유치원단위 경비를 살펴보면, 병설유치원은 1학급이 785억 2,029만 5천 원으로 8학급까지의 총 비용은 1,497억 3,291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하여 원당 학급 규모는 크지만 유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총 655억 4,588만 4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큰 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유치원 수가 많아 총 8,214억 156만 5천 원의 유치원단위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 경비

단위: 천 원

구분	유치원단위 경비				학급단위 경비		원아단위 경비	
	단설	병설	공립계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016	65,545,884	149,732,910	215,278,794	821,401,565	5,997,663	16,139,592	5,130,970	13,369,435
1학급	129,265	78,520,295	78,649,560	8,263,332	1,691,298	42,966	1,506,840	38,280
2학급	0	30,602,208	30,602,208	34,188,912	1,130,136	339,822	1,006,880	302,760
3학급	0	27,371,349	27,371,349	78,582,120	1,290,933	1,101,492	1,054,295	899,580
4학급	551,775	9,004,960	9,556,735	107,282,376	424,452	1,593,648	354,525	1,331,100
5학급	5,524,092	2,971,980	8,496,072	102,137,200	234,360	1,809,780	198,360	1,531,780
6학급	21,391,100	690,510	22,081,610	137,073,036	429,660	2,808,414	350,900	2,293,610
7학급	16,788,659	404,430	17,193,089	96,340,959	328,104	1,954,953	271,440	1,617,330
8학급	8,545,383	167,178	8,712,561	75,655,824	182,280	1,708,224	152,250	1,426,800
9학급	2,401,569	0	2,401,569	47,582,328	52,731	1,177,659	43,065	961,785
10학급	6,050,940	0	6,050,940	44,065,746	130,200	1,061,130	107,300	874,495
11학급	628,398	0	628,398	25,952,115	14,322	665,973	11,890	552,885
12학급	980,658	0	980,658	16,158,968	23,436	437,472	19,140	357,280
13학급	1,022,097	0	1,022,097	13,152,040	25,389	372,372	20,880	306,240
14학급	711,480	0	711,480	9,306,210	18,228	273,420	15,080	226,200
15학급	0	0	0	8,385,806	0	253,890	0	207,350
16학급	389,950	0	389,950	4,031,736	10,416	124,992	8,555	102,660
17학급	0	0	0	3,857,216	0	121,737	0	100,485
18학급	430,518	0	430,518	1,466,724	11,718	46,872	9,570	38,280
19학급	0	0	0	768,362	0	24,738	0	20,300
20학급	0	0	0	1,209,888	0	39,060	0	32,190

(표 IV-4-9 계속)

구분	유치원단위 경비				학급단위 경비		원아단위 경비	
	단설	병설	공립계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1학급	0	0	0	2,545,080	0	82,026	0	66,990
22학급	0	0	0	1,341,012	0	42,966	0	35,235
26학급	0	0	0	561,712	0	16,926	0	13,920
27학급	0	0	0	597,429	0	17,577	0	14,355
33학급	0	0	0	895,434	0	21,483	0	17,545

2015 52,982,494 147,926,079 200,908,573 764,923,120 5,605,988 15,728,808 4,846,480 13,131,635

주: 유치원단위의 경우 11학급 이상(11-33학급)은 1학급 증가 시 평균 가중치 0.03을 적용함.

한편 학급단위 경비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59억 9,766만 3천 원, 사립유치원은 161억 3,959만 2천 원이었으며, 원아단위 경비의 경우, 공립유치원이 51억 3,097만 원, 사립유치원이 133억 6,943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5년 대비 공·사립유치원의 학급단위 경비, 원아단위 경비는 모두 다소 증가하였다.

## 2)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공·사립유치원의 유치원단위 공통운영비와 학급단위, 원아단위 공통운영비를 합산하여, 총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원아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를 산출한 결과, 연간 168만 9천 원(월평균 14만 1천 원)이었으며,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은 공립유치원이 2,264억 742만 7천 원, 사립유치원이 8,509억 1,059만 2천 원으로 총 1조 773억 1,801만 9천 원이었다. 이는 2015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712억 8,328만 6천 원이 상승한 액수이나 표준원아 수의 증가로 인해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연평균 6만 6천 원, 월평균 6천 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IV-4-10〉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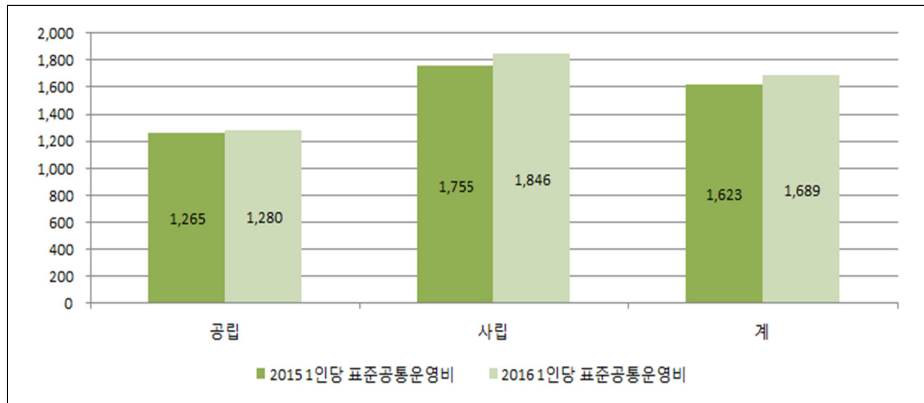
구분	2016			2015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유치원단위 계	215,278,794	821,401,565	1,036,680,359	200,908,573	765,813,249	966,721,822
학급단위 계	5,997,663	16,139,592	22,137,255	5,605,988	15,728,808	21,334,796
원아단위 계	5,130,970	13,369,435	18,500,405	4,846,480	13,131,635	17,978,115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	226,407,427	850,910,592	1,077,318,019	211,361,041	794,673,692	1,006,034,733

(표 IV-4-10 계속)

구분	2016			2015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표준원아 수	176,930	461,015	637,945	167,120	452,815	619,935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월평균)	1,280(107)	1,846(154)	1,689(141)	1,265(105)	1,755(146)	1,623(135)

주: 2015년 값은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7에서 인용함.

단위: 천 원



[그림 IV-4-2]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비교: 2015-2016

## 5. 표준유아교육비 규모

### 가.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 1) 표준 모형에 근거한 표준유아교육비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 활동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를 전체 합산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3조 6,336억 4,404만 6천 원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이 1조 162억 130만 4천 원, 사립유치원이 2조 6,174억 4,274만 2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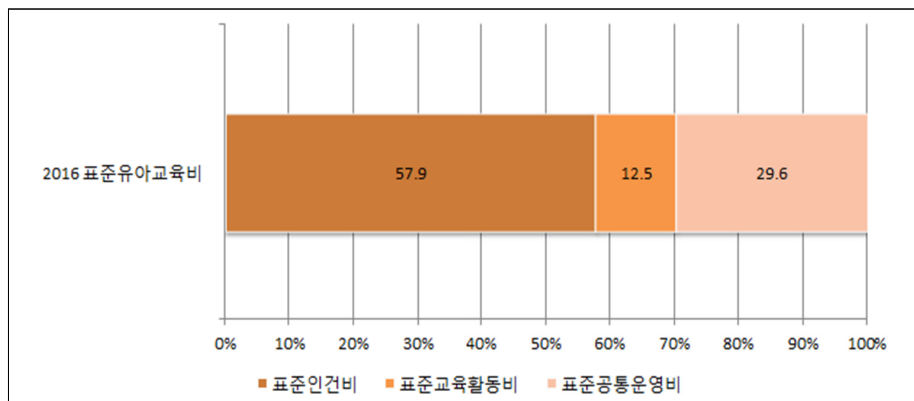


〈표 IV-5-1〉 총 표준유아교육비(표준 모형)

		단위: 천 원		
		공립	사립	계
표준인건비	교원	617,696,212	1,296,657,242	1,914,353,454
	직원	22,663,837	166,708,255	189,372,092
	계	640,360,049	1,463,365,497	2,103,725,546
표준교육활동 경비		149,433,828	303,166,653	452,600,481
표준공통운영 경비		226,407,427	850,910,592	1,077,318,019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1,016,201,304	2,617,442,742	3,633,644,046

표준유아교육비를 구성하는 3가지 항목 중에서는 표준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커서, 총 표준유아교육비의 57.9%가 인건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준공통운영 경비 29.6%, 표준교육활동 경비 12.5% 순이었다.

단위: %



[그림 IV-5-1] 총 표준유아교육비 항목별 비중

2015년 대비 표준유아교육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205억 5,665만 4천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표준공통운영 경비가 712억 8,328만 6천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32억 7,908만 4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준원아 수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실질적인 비용 감소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표 IV-5-2〉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비교: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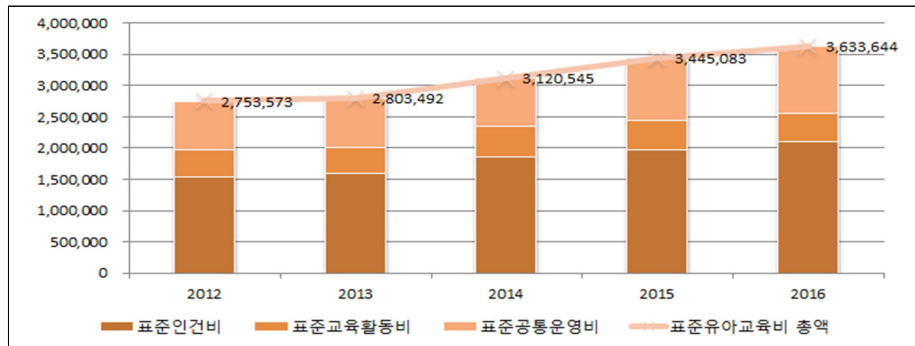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분	표준 유아교육비 (2016)	2015년 대비 증감	표준 유아교육비 (2015)	표준 유아교육비 (2014)	표준 유아교육비 (2013)	표준 유아교육비 (2012)
표준 교원 인건 비	1,914,353,454	▲ 113,619,966	1,800,733,488	1,730,364,542	1,500,651,582	1,365,808,602
표준 인건 비	189,372,092	▲ 6,936,688	182,435,404	131,063,100	92,554,775	166,809,600
표준 교육 활동 경비	452,600,481	▽ 3,279,084	455,879,565	493,850,672	422,922,635	450,668,122
표준 공통 운영 경비	1,077,318,019	▲ 71,283,286	1,006,034,733	765,266,320	787,293,516	770,286,202
표준 유아 교육비 총액	3,633,644,046	▲ 188,560,856	3,445,083,190	3,120,544,634	2,803,492,508	2,753,572,526

주: 1) 2012~2014년도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p. 136의 값을 인용함.  
 2) 2015년 값은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 108에서 인용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표준유아교육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3~2014년 사이의 증가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준인건비 역시 2013~2014년 사이에 상승폭이 컸다. 이는 표준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의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에 의한 것이다.

단위: 백만 원



[그림 IV-5-2]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추이: 2012-2016

한편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569만 6천 원으로, 월평균 47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이 574만 4천 원, 사립유치원이 567만 8천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다소 높았다.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증가폭은 표준유아교육비 총액의 증가액 변화와 연동된다. 2015년 대비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증가액은 13만 9천 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교원의 인건비가 9만 6천 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공통운영비가 6만 6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단위: 천 원		
		공립(월평균)	사립(월평균)	계(월평균)
표준원아 1인당	교원	3,491(291)	2,813(234)	3,001(250)
	직원	128( 11)	362( 30)	297( 25)
표준인건비		3,619(302)	3,174(265)	3,298(275)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845( 70)	658( 55)	709( 59)
표준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1,280(107)	1,846(154)	1,689(141)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5,744(479)	5,678(473)	5,696(475)

주: 표준원아 수는 총 637,945명(공립: 176,930명, 사립: 461,015명)을 적용함.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유아교육비 총액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인건비는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V-5-4〉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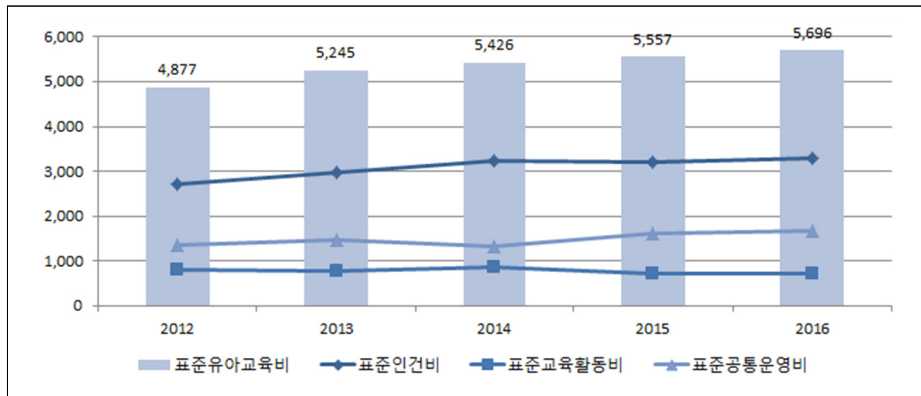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분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6)	2015년 대비 증감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5)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4)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3)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2)
표준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교원	3,001(250)	▲ 96	2,905(242)	3,009(251)	2,807(234)	2,419(202)
	직원	297( 25)	▲ 3	294( 25)	228(19)	173(14)	295(25)
	계	3,298(275)	▲ 99	3,199(267)	3,237(270)	2,981(248)	2,715(226)

(표 IV-54 계속)

구분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6)	2015년 대비 증감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5)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4)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3)	원아1인당 표준유아 교육비 (2012)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709( 59) ▽ 26		735(61)	858(71)	791(66)	798(67)
표준원아 1인당 표준공동운영 경비	1,689(141) ▲ 66		1,623(135)	1,331(111)	1,473(123)	1,364(114)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5,696(475) ▲ 139		5,557(463)	5,426(452)	5,245(437)	4,877(406)

주: 1) 2012~2014년도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p. 137의 값을 인용함.  
 2) 2015년 값은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111에서 인용함.

단위: 천 원



[그림 IV-5-3]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추이: 2012~2016

## 2) 실제 원아 수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

본 연구에서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의한 '표준원아 수', '표준교직원 수', '표준학급 수'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3세, 4세, 5세 각각 연령 단위 학급별로 15명, 20명, 20명씩 유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에 필요한 가장 적정한 교직원 인력을 배치하며 '고등학교 각급 학교 시설·설비 규정'에 제시된 유치원 면적 기준을 준수한 이상적 학교의 형태를 표준유치원 모형으로 설정하고(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이 모형에 의해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산출된 각 항목별 비용을 표준원아 수로 나누어 원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원아 수는 실제 원아 수와의 간극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실제 원아 수는 161,083명, 사립은 521,214명(교육통계연보, 2015)으로 표준원아 수보다 공립유치원은 15,847명 적고, 사립유치원은 표준보다 실제 원아 수가 60,199명 더 많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구성하는 인건비, 교육활동비, 운영비는 실제 값을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 수준을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을 위한 실제 원아 수를 기준으로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재산정하였다.

〈표 IV-5-5〉 총 표준유아교육비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실제 원아 수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실제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월평균)	
표준인건비	공립	교원	617,696,212	
		직원	22,663,837	
	계	640,360,049	3,835(320)	
	사립	교원	1,296,657,242	141( 12)
		직원	166,708,255	3,975(331)
	계	1,463,365,497	2,488(207)	
계	교원	1,914,353,454	320( 27)	
	직원	189,372,092	2,808(234)	
	계	2,103,725,546	2,806(234)	
표준교육활동 경비	공립	149,433,828	278( 23)	
	사립	303,166,653	3,083(257)	
	계	452,600,481	928( 77)	
표준공통운영 경비	공립	226,407,427	582( 48)	
	사립	850,910,592	663( 55)	
	계	1,077,318,019	1,406(117)	
계	공립	1,016,201,304	1,633(136)	
	사립	2,617,442,742	1,579(132)	
	계	3,633,644,046	6,309(526)	

주: 2015년 기준(교육통계연보, 2015), 실제 원아 수는 총 682,297명(공립: 161,083명, 사립: 521,214명)을 적용함.

실제 원아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532만 6천 원, 월평균 약 44만 4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이 630만 9천 원(월평균 약 53만 원), 사립유치원이 502만 2천 원(월평균 약 42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이 월평균 11만 원 정도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표준인건비가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약 100만 원이 높기 때문에 고정력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공립유치원의 인력 구조의 특성이 반영(공립유치원 평균 24호봉, 사립유치원 14호봉이 기본급에 적용)되어 표준인건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표준인건비 역시 공립유치원 호봉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실제 공립유치원 호봉에 근거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실정을 반영하면 공·사립유치원의 표준인건비의 간극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3)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인건비 제외)

표준유아교육비 연구는 1차년도(2013)부터 ‘표준인건비’, ‘표준교육 활동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를 전체 합산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88년 이후 5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는 표준교육비 연구에서는 표준교육비를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조건 즉, 표준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 교육비’로 정의하고 있다(김지하·김용남·김창환·김중환·노선옥·최은영·엄문영·우명숙·김태환·공은배, 2015). 따라서 교육과정 상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교직원을 위한 인건비 소요와 시설·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시설비 소요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이에 정규교직원의 표준인건비와 표준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표준운영비를 의미한다(김지하 외, 2015: 41).

표준유아교육비도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아 1인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 경비’로 건물, 놀이터 등 물적 조건을 갖춘 상태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비 등을 산출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명숙 등(2012)의 표준유아교육비 연구 이전에는 표준교육비의 학교급별 분석에 공립유치원을 포함하여 산출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표준유아교육비 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면서 표준유아교육비는 설립 유형별(공립, 사립)로 산출되어 왔다. 이때부터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 항목으로 표준인건비가 포함되었다.

2015년 기준, 총 8,927개 유치원 중에서 공립이 4,675개원, 사립이 4,252개원(교육통계연보, 2015)으로 기관 수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유사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1, 2학급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공립과 사립의 원아 분담률은 2:8의 비율로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설립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출되는 표준유아교육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에서 표준인건비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산출해보았다.

〈표 IV-5-6〉 총 표준유아교육비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구분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월평균)
표준교육활동 경비	공립	149,433,828	845( 70)
	사립	303,166,653	658( 55)
	계	452,600,481	709( 59)
표준공동운영 경비	공립	226,407,427	1,280(107)
	사립	850,910,592	1,846(154)
	계	1,077,318,019	1,689(141)
계	공립	375,841,255	2,124(177)
	사립	1,154,077,245	2,503(209)
	계	1,529,918,500	2,398(200)

표준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5,299억 1,850만 원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이 3,758억 4,125만 5천 원, 사립유치원이 1조 1,540억 7,724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239만 8천 원, 월평균 2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이 212만 4천 원(월평균 약 18만 원), 사립유치원이 250만 3천 원(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이 다소 높았다. 표준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비 22만 원과 비교하면 공립은 4만 원, 사립은 만 원 정도 적은 상황으로 실제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액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유치원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유치원 규모에 따른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2015년 기준, 유아학급 수 자료(교육통계연보, 2015)를 이용하여 소규모(3학급 이하), 중규모(4~6학급), 대규모(7학급 이상)에 해당하는 유치원 수, 학급 수, 원아 수를 산출한 후 유아교육비 항목별 기준가를 활용하여 총비용과 표준원아 수에 대한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기관 규모에 따른 표준유

아교육비는 대규모 1조 4,215억 248만 3천 원, 중규모 1조 2,866억 8,741만 3천 원, 소규모 9,254억 5,415만 원이었다.

〈표 IV-5-7〉 유치원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단위:천 원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표준 인건비	공립	교원	395,729,358	133,951,382	88,015,472
		직원	0	12,198,165	10,465,672
		소계	395,729,358	146,149,547	98,481,144
	사립	교원	113,768,532	532,679,948	650,208,762
		직원	0	66,718,659	99,989,596
		소계	113,768,532	599,398,607	750,198,358
계	교원	509,497,890	666,631,330	738,224,234	
	직원	0	78,916,824	189,372,092	
		소계	509,497,890	745,548,154	927,596,326
표준 교육활동 경비	공립	113,978,026	21,191,240	14,264,562	
	사립	33,915,471	119,960,401	149,290,781	
	계	147,893,497	141,151,641	163,555,343	
표준 공통운영 경비	공립	144,303,499	42,126,674	39,977,254	
	사립	123,759,264	357,860,944	369,290,384	
	계	268,062,763	399,987,618	409,267,638	
표준 유아교육비	공립	654,010,883	209,467,461	152,722,960	
	사립	271,443,267	1,077,219,952	1,268,779,523	
	계	925,454,150	1,286,687,413	1,421,502,483	

주: 소규모 기관은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함.

기관 규모에 따른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살펴보면, 소규모가 145만 1천 원, 중규모가 201만 7천 원, 대규모가 222만 8천 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공립유치원은 소규모가 369만 6천 원, 중규모 118만 4천 원, 대규모 86만 3천 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원아 1인당 비용이 감소한다.

〈표 IV-5-8〉 유치원 규모별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단위:천 원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표준 인건비	공립	2,237 (186)	826 ( 69)	557 ( 46)
	사립	247 ( 21)	1,300 (108)	1,627 (136)
	계	799 ( 67)	1,169 ( 97)	3,298 (275)



(표 IV-5-8 계속)

구분		소규모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중규모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대규모 표준원아 1인당 (월 평균)
표준 교육활동비	공립	926 ( 77)	680 ( 57)	628 ( 74)
	사립	793 ( 66)	675 ( 56)	621 ( 56)
	계	892 ( 74)	675 ( 52)	622 ( 52)
표준 공통운영비	공립	1,173 ( 98)	1,352 (113)	1,759 (147)
	사립	2,893 (241)	2,013 (168)	1,536 (128)
	계	1,617 (135)	1,914 (160)	1,555 (130)
표준 유아교육비	공립	3,696 (308)	1,184 ( 99)	863 ( 72)
	사립	589 ( 49)	2,337 (195)	2,752 (229)
	계	1,451 (121)	2,017 (168)	2,228 (186)

주: 표준원아 수는 총 637,945명(공립: 176,930명, 사립: 461,015명)을 적용함.

#### 다.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비교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를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산출한 표준교육비(유치원)와 비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규모별로 제시하였다. 1학급 규모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9,874만 8천 원, 2학급은 1억 1,488만 9천 원, 3학급은 1억 3,375만 6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급을 기준으로, 5학급은 1.4배, 7학급은 1.7배, 10학급은 2.1배에 그쳐 표준유아교육비의 증가 수준은 학급 수 증가에 비례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5-9〉 공립유치원 학급 규모별 표준유아교육비

단위: 천 원

구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표준 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4,536	7,200	9,859	12,523	15,192	17,851	20,515	23,179	25,838	28,502
	재료비	3,361	6,722	10,083	13,444	16,805	20,166	23,527	26,888	30,249	33,610
	설비비	13,099	16,116	19,128	22,145	25,167	28,179	31,196	34,213	37,225	40,242
	계	20,996	30,038	39,070	48,112	57,164	66,196	75,238	84,280	93,312	102,354
표준 공통 운영 경비	공공요금	15,054	17,444	20,495	24,702	30,965	34,111	37,490	40,338	42,983	45,814
	기본적경비	62,217	66,445	72,833	83,047	98,265	105,124	112,788	119,064	124,999	132,252
	학생복지비	481	962	1,358	1,839	2,405	2,801	3,282	3,763	4,159	4,640
	계	77,752	84,851	94,686	109,588	131,635	142,036	153,560	163,165	172,141	182,706
표준유아교육비		98,748	114,889	133,756	157,700	188,799	208,232	228,798	247,445	265,453	285,060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준공통운영 경비의 비중이 0.64~0.79으로 높았으며, 학급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0.21~0.36로 학급 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체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표 IV-5-10〉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별 비중

단위: 천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표준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0.05	0.06	0.07	0.08	0.08	0.09	0.09	0.09	0.10	0.10
	재료비	0.03	0.06	0.08	0.09	0.09	0.10	0.10	0.11	0.11	0.12
	설비비	0.13	0.14	0.14	0.14	0.13	0.14	0.14	0.14	0.14	0.14
	계	<b>0.21</b>	<b>0.26</b>	<b>0.29</b>	<b>0.31</b>	<b>0.30</b>	<b>0.32</b>	<b>0.33</b>	<b>0.34</b>	<b>0.35</b>	<b>0.36</b>
표준공통 운영 경비	공공요금	0.15	0.15	0.15	0.16	0.16	0.16	0.16	0.16	0.16	0.16
	기본적경비	0.63	0.58	0.54	0.53	0.52	0.50	0.49	0.48	0.47	0.46
	학생복리비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계	<b>0.79</b>	<b>0.74</b>	<b>0.71</b>	<b>0.69</b>	<b>0.70</b>	<b>0.68</b>	<b>0.67</b>	<b>0.66</b>	<b>0.65</b>	<b>0.64</b>	
표준유아교육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치원 학급 규모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의 증가 수준을 살펴보면, 3학급을 기준으로 5학급은 1.41, 7학급은 1.71, 10학급은 2.13로 규모 증가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3학급에 비해 2배 규모인 6학급의 표준유아교육비는 1.56배, 학급 규모가 3배가 되는 9학급의 표준유아교육비는 1.98배로 학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규모의 경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V-5-11〉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학급 규모별 증가 수준

단위: 천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표준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0.46	0.73	1.00	1.27	1.54	1.81	2.08	2.35	2.62	2.89
	재료비	0.33	0.67	1.00	1.33	1.67	2.00	2.33	2.67	3.00	3.33
	설비비	0.68	0.84	1.00	1.16	1.32	1.47	1.63	1.79	1.95	2.10
	계	<b>0.54</b>	<b>0.77</b>	<b>1.00</b>	<b>1.23</b>	<b>1.46</b>	<b>1.69</b>	<b>1.93</b>	<b>2.16</b>	<b>2.39</b>	<b>2.62</b>
표준공통 운영 경비	공공요금	0.73	0.85	1.00	1.21	1.51	1.66	1.83	1.97	2.10	2.24
	기본적경비	0.85	0.91	1.00	1.14	1.35	1.44	1.55	1.63	1.72	1.82
	학생복리비	0.35	0.71	1.00	1.35	1.77	2.06	2.42	2.77	3.06	3.42
계	<b>0.82</b>	<b>0.90</b>	<b>1.00</b>	<b>1.16</b>	<b>1.39</b>	<b>1.50</b>	<b>1.62</b>	<b>1.72</b>	<b>1.82</b>	<b>1.93</b>	
표준유아교육비		0.74	0.86	1.00	1.18	1.41	1.56	1.71	1.85	1.98	2.13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를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와 비교하면, 5학급은 1.5배, 6학급은 1.6배, 7학급 1.6배, 8학급 1.5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연구에서 설정한 원아 수 기준의 차이, 즉 김지하 등(2015)의 연구에서는 18명, 본 연구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의해 만 3세 15명, 4, 5세 각 20명으로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이 상이하고, 개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 배치(표준공통운영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 배치) 기준, 구성 항목 등의 차이가 전체 비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표준교육활동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비의 경우, 김지하 등(2015)의 연구에서는 공통운영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를 별도로 연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재료비를 교육활동 경비에 포함하고 있고, 연속 과제인 본 연구의 특성 상 항목 간 구성 요소들을 선행 연구에 준해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IV-5-12〉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본 연구 결과	표준교육 활동 경비	20,996	30,038	39,070	48,112	57,164	66,196	75,238	84,280	93,312	102,354
	표준공통 운영 경비	77,752	84,851	94,686	109,588	131,635	142,036	153,560	163,165	172,141	182,706
	<b>표준유아 교육비(a)</b>	<b>98,748</b>	<b>114,889</b>	<b>133,756</b>	<b>157,700</b>	<b>188,799</b>	<b>208,232</b>	<b>228,798</b>	<b>247,445</b>	<b>265,453</b>	<b>285,060</b>
김지하 등 (2015) <sup>1)</sup>	표준교육 활동 경비	-	-	-	-	48,471	55,647	62,822	69,997	-	-
	표준공통 운영 경비	-	-	-	-	239,432	281,498	295,691	306,992	-	-
	<b>표준유아 교육비(b)</b>	-	-	-	-	287,903	337,145	358,513	376,989	-	-
표준유아 교육비 비교	b/a	-	-	-	-	1.52	1.62	1.57	1.52	-	-

주: 단설유치원 5-8학급의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임.

## V.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모형 개발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연구들의 개념, 모형, 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항목에 대해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행정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출모형(안)을 제시하였다.

### 1.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분석

#### 가. 개념 정의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아동 1인당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교육을 위한 교원 및 시설·설비 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한편 김현숙(2008)은 최소 운영비와 최대 운영비를 함께 산출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V-1-1〉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개념 비교

연구자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연구자	표준보육료의 개념
강경석 (2006)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요 경비를 의미. 건물이나 대지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김현숙 등 (2008)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만 0~5세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표 V-1-1 계속)

연구자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연구자	표준보육료의 개념
김현숙 (2008)	유치원을 통해 만 3~5세의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총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유아를 적정수준으로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아동 1인당 비용	김혜금 (2010)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
우평숙 등(2012)	단위 유치원이 표준 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서문희 등 (2013b)	어린이집이 사회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
김은설 등(2014)	유아교육법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육·보육과정(공동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며, 현실적 비용도 고려		

한편 보육료 산출 관련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표준'의 개념 없이 보육비용을 산출 하는 경우가 있다(서문희 외, 2013a;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이는 '표준'의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고, 질 제고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된 보육 비용이나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에는 표준의 개념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준보육료 개념을 정의한 연구는 보육시설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 나. 산출 모형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은 대부분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부 비목별 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원아 1인당 발생하는 운영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설립유형, 수업과정, 시설규모, 아동연령, 지역별 등으로 하고, 표준 모형 기준은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다만 문무경 등(2012)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토대로 연령 및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타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표 V-1-2〉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모형 비교

연구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연구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강경석 (2006)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 세부 비목을 유치원 규모에 따른 원아 수로 나누어 원아 1인당 연간 발생하는 운영비 산출 -설립유형(공립 단설, 병설),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학급 규모(1~6학급)에 따라 소요되는 표준교육비 산출 -만 5세만 대상으로 산출	김현숙 등(2008)	-세부 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유아 1인당 연령별 보육비용 산정 -시설규모(20, 50, 77, 97, 124, 142, 169)에 따른 아동연령별 보육료 산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교사 수 및 급·간식 횟수 조정하여 산정 -지역별 차이는 지역별 시장임금의 차이 및 차량유지비, 지역별 부지구입비를 통해 분석 -현실적 비용투입수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비용 고려한 1안과 국공립 유치원 비용투입수준 및 질향상을 감안한 2안 제시
김현숙 (2008)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 세부 비목을 원아 수로 나누어 원아 1인당 월간 발생하는 운영비를 합산 -시설규모별, 연령별, 지역별, 설립유형별, 서비스 제공시간별 산출	이미화 등(2012)	-영유아 1인당 표준인건비에 영유아 1인당 운영비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 -시설규모 및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산출
우명숙 등 (2012)	-규모별 표준유치원 모형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원아 1인당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합산 -비정규직은 표준인건비가 아닌 교원표준공통운영경비에서 산출	서문희 등(2013a)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아동 1인당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시설규모(20, 50, 77, 97, 124, 142, 169) 및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산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에 차등을 둔 보육비용을 1안, 2안(상향조정)으로 산정
김은설 등 (2014)	-경비지출단위별 총 교육비를 토대로 항목별 표준총액을 산출하고, 표준원아 수로 나누어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 값을 항목별로 합산	서문희 등(2013b)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에 차등을 둔 보육비용을 1안, 2안(인건비 상향조정), 3안(인건비 추가상향, 식단가, 건축비 상향조정)으로 산정 -일반아동,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산정

보육료 산출 모형은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설유형에 따른 평균비용을 제시하는 유아교육비 연구와 달리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로 보육비용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육료의 시설규모는 20, 50, 77, 97, 124, 142, 169인 기준으로 동일하다. 비용 산출을 위한 자료는 재무회계자료나 실태조사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보육료 산출 연구는 현실적인 비용 수준의 산출 뿐 아니라 향상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를 고려하여 항목별 단가 등이 상향조정된 추가의 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다. 산출 항목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는 산출 항목에서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김현숙·서병선, 2008),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 특히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 외,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을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유사하게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며, 급간식비나 차량운영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김현숙, 2008; 문무경 외, 2012).

〈표 V-1-3〉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비교

연구	구성 항목	연구	구성 항목
강경석 (2006)	표준인건비 (기본급, 수당, 복지후생비, 부담금)	김현숙 등 (2008)	종사자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시설설비비, 교구비, 재료비)		아동 급간식비(연령별) 교재교구비(보통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표 V-1-3 계속)

연구	구성 항목	연구	구성 항목
	표준공통운영경비 (관리운영비, 연구장학비, 보건체육비, 입시관리비, 급식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 차량유지비
김현숙 (2008)	인건비 (봉급, 수당, 부담금)	이미화 등 (2012)	인건비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 시청각기자재, 교실설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표준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급간식비 (연령별로 하루 점심비와 1회 간식비)		표준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표준재산조성비(자산취득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설치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유원장 설비비)		표준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우명숙 등 (2012)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사, 정규직 직원)	서문희 등 (2013a)	인건비
	표준교과활동경비 (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식단가
	표준공통운영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김은설 등 (2014)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정규직 직원)	서문희 등 (2014)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표준공통운영 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 복리비)		아동연령별 급간식비 시설비(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원 인건비는 영유아 1인당 운영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45~51%)이다(김현



숙·서병선, 2008; 김혜금, 2010).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들은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유치원 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 산정 시 동일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의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보육료 산출 항목 역시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를 포함하며, 연구자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따로 구성하거나(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관리 운영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 2012).

## 라. 시사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 연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비·보육료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은 인건비, 교육활동비, 공통운영비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보육료는 급간식비와 시설설치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급간식비는 12시간 종일제보육 시간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시설설치비는 시설설치 및 개보수관련 비용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 재산조성비(이미화 외, 2012)나 놀이터 설치비를 포함하기도 한다(김현숙, 2008, 서문희 외, 2013a). 보육료의 업무추진비와 관리운영비는 공통운영비의 세부항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세부 항목에도 차이를 보인다. 유아교육비용의 인건비 구성항목은 정규직 교원 인건비만 포함하고, 기본급, 제수당, 맞춤형복지,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반면 보육비용은 비정규직 교원 인건비를 포함하며,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 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유아교육비는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반면 보육료는 실태조사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의 교원 급여 산정 시 교육통계자료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기준 호봉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비 산출 방법(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과 달리 보육료 산출은 실태조사에 근거한 시설유형별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셋째, 보육료는 시설유형 및 연령별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공·사립에 비하여 시설유형의 구분이 다양하고, 유형별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달리 산출하며, 연령별 범위 역시 보육료가 0~5세로 유아교육비 3~5세에 비하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4〉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항목 및 산출방법 비교

표준유아교육비(결산명 외, 2015)		표준보육료(결산명 외, 2013)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정규직 직원)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급여
	교원 및 직원의 계수당, 맞춤영복거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시간외 수당 등에
표준교육활동경비			공통) 퇴직적립금 포함. 공통) 4대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포함 1) 누리반 교사(월 30만 원), 영아반 교사(월 12만 원), 원장 겸직 교사(월 75000원) 2) 누리반 교사(월 30만 원), 영아반 교사(월 12만 원), 원장 겸직 교사(월 75000원) 보육교사 수당(월 20만 원)
	- 교구비		신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 교구비
	재료비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비품
	살비비		소모품

표준유아교육비(결산명 외, 2015)		표준보육료(결산명 외, 2013)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정규직 직원)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급여
	교원 및 직원의 계수당, 맞춤영복거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시간외 수당 등에
표준교육활동경비			공통) 퇴직적립금 포함. 공통) 4대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포함 1) 누리반 교사(월 30만 원), 영아반 교사(월 12만 원), 원장 겸직 교사(월 75000원) 2) 누리반 교사(월 30만 원), 영아반 교사(월 12만 원), 원장 겸직 교사(월 75000원) 보육교사 수당(월 20만 원)
	- 교구비		신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 교구비
	재료비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비품
	살비비		소모품

1)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전국 교사, 원장 평균 호봉 적용 (교사: 49호봉, 원장 11.3호봉, 취사부: 1호봉, 비담임교사: 1호봉).  
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장 평균 호봉 적용(교사: 59호봉, 원장 15호봉, 취사부: 3호봉, 비담임교사: 1호봉, 보조인력: 월100만 원)

- 평가인증자료, 영아 보육프로그램,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 범위 및 연령 기준 반 규모 설정  
- 연령 단계를 원칙으로 0-2세반은 2만 기준, 3-5세는 1만 기준  
- 체질단가의 중간 가격대 적용하여 내용연수 원형인 연월간 소요되는 비용 환산 후 이월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교재교구 비용 산출  
- 내용연수 5년 이상의 비품상 교재교구(악기) 차폐, 교구장, 에어컨 등) 소모성 교재교구(색종이, 풀, 도화지 등) 별도 구성.

(교원) 설립유형별 인건비 산출 후, 총 표준인건비 산출하여, 이를 총 교원 수로 나누어 평균 인건비 산출(공통) 24호봉, 사립 14호봉)  
(직원) 8급 5호봉 기본급 적용

- 2015년도 시도유아특활회계 분석자료의 계수당, 맞춤영복거비, 법정부담금을 토대로 시도별 평균을 산출.

- 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 구분하여 단가×물량 ÷ 내구연한으로 연평균 산출  
- (연령별 산출식) 유치원단위 교구비+ 학급단위 교구비+ 원아단위 교구비  
- (3-5세 산출식) 3, 4, 5세 유치원단위 교구비(연평균 중복 교재 교구는 1반만 포함) + 3, 4, 5세 유치원단위 교구비 평균(중복되지 않은 연평균 교구) + 3, 4, 5세 학급단위 교구비 평균 + 3, 4, 5세 원아단위 교구비 평균  
- 재료비는 학급단위로 재조정 후 단위단가 × 소요물량으로 연평균 산출  
- (연령별 산출식) 재료비 = 학급단위 재료비 + (3-5세 산출식) 재료비 = 3, 4, 5세 연령별 계단비 평균  
- 최근의 시설 설비기준을 검토하여 1차 설비에 추가된 설비비를 더하여 산출  
- 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 교직원단위로 나누어 재료별 소요물량 × 단위단가 ÷ 내구연한으로 산출  
- (설비비 산출식) 유치원단위 설비비 + 학급단위 설비비 + 원아단위 설비비 + 교직원단위 설비비

(표 V-1-4 계속)

표준유아교육비(최은영 외, 2015)		표준보육료(서문회 외, 2013)		
표준공동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운영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직책급	
	기본적 경비		회의비	
	학생복리비		여비	
			수용비·수 수로 및 공공요금	- 재무회계규칙상의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수수로 및 공공요 금, 연료비, 차량비,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를 포함. - 2013 어린이집 지출 수준에 의거하여 산출.
			연료비	
			차량비	
			- 급간식 재료비	- 재료 분량 반영된 조리표에 시장 조사 통한 식단 표준 단가 산출. 오찬·오후간식, 점심 표준 단가를 합하여 1일 식단가 및 월 단가 산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월 표준급식비 산출. - 플러스 식단, 소매가와 도매가에 따른 차등 산출.
			-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식단가	건축비 및 불이터 건축비	1인 1인당 면적 4.29㎡기준, 지원 단가 1,201,300원/㎡ 적용, 내구연한 30년 가정하여 산출. 2인 1인당 면적 4.29㎡기준, 지 일반공공청사 표준건축비 단가 1,670,000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의 비용 상승률 (30%) 반영하여 산출.
		시설비 (건축비, 시설유지 관리비)	시설유지관 리비	- 건물내부, 건물외부, 전기 소화설비, 급수 위생설비, 난방 급 탕 설비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를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기법 이용하여 산정.

## 2.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 가.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시 필요 항목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을 위해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표준인건비의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이었으며, 표준공통운영비의 학생복리비로 나타났다.

〈표 V-2-1〉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표준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1.8	98.2	100.0(853)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3.3	96.7	100.0(853)
	맞춤형복지비	13.2	86.8	100.0(853)
	법정 부담금	13.7	86.3	100.0(853)
표준교육활동 경비	교구비	2.8	97.2	100.0(853)
	재료비	4.1	95.9	100.0(853)
	설비비	7.5	92.5	100.0(853)
표준공통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8.1	91.9	100.0(853)
	공공요금	6.7	93.3	100.0(853)
	기본적 경비	6.6	93.4	100.0(853)
	학생복리비	11.6	88.4	100.0(853)

표준보육료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교재교구비의 소모품, 관리운영비의 회의비, 여비, 차량비로 나타났으며, 시설비에서는 건축비 및 놀이터건축비로 응답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2〉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보육료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인건비	급여	2.0	98.0	100.0(853)
	퇴직금, 퇴직적립금	3.8	96.2	100.0(853)
	사회보험 부담금	4.8	95.2	100.0(853)
	시간외 수당 정액	7.7	92.3	100.0(853)

(표 V-2-2 계속)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교재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3.5	96.5	100.0(853)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5.0	95.0	100.0(853)
	비품	7.6	92.4	100.0(853)
	소모품	10.1	89.9	100.0(853)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	7.2	92.8	100.0(853)
	직책급	10.2	89.8	100.0(853)
	회의비	19.5	80.5	100.0(853)
	여비	16.1	83.9	100.0(853)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7.7	92.3	100.0(853)
	연료비	10.0	90.0	100.0(853)
	차량비	16.3	83.7	100.0(853)
	급간식 재료비	3.9	96.1	100.0(853)
식단가	조리기기 및 소모품	9.3	90.7	100.0(853)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13.4	86.6	100.0(853)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7.0	93.0	100.0(853)

## 나. 수정 및 추가해야 할 항목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항목 및 구성요소 중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가 모두 표준보육료의 비품 및 소모품은 관리운영비로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표준인건비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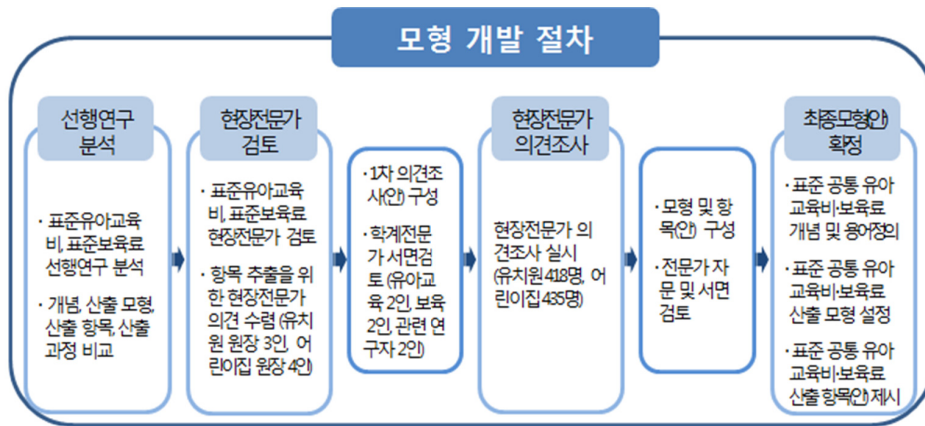
〈표 V-2-3〉 세부 구성요소 중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

구분	내용
유치원	- 표준보육료의 시설유지관리비 → 관리운영비
	- 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방과후 전담사) 및 제수당은 표준인건비
	- 표준교육활동경비: 설비비 → 관리운영비로 이동 표준공통운영비: 비정규직 인건비 → 비정규 및 일용직 인건비 항목 및 정규직 교원 및 직원의 기타 항목으로 이동
	- 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
어린이집	- 조리기기 및 소모품 → 관리운영비
	- 표준보육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 → 표준인건비
	- 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

### 3.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

#### 가. 모형 개발 절차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그림 V-3-1]과 같다.



[그림 V-3-1] 모형 개발 절차

#### 나.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의 개념 및 용어 정의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표준보육료는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를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로 명명(이후 동일)하고자 한다.

## 다.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표준 누리과정운영비)<sup>17)</sup> 산출 모형

### 1)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구성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인건비, 교육활동 경비, 공통운영 경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원과 시설 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므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2)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

#### 가) 표준학급 수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은 현재 어린이집 법적 기준인 3세 15명, 4, 5세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2015년 기준, 공·사립유치원의 평균 학급당 원아 수는 공립 16.5명, 사립 19.4명으로 평균 17.9명(교육통계연보, 2015) 약 18명과 유사한 수치이며,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학급편성 기준으로 가용하고자 한다. 표준 유치원·어린이집의 규모별,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V-3-1〉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단위: 학급

구분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3세반	1	1	1	2	2	2	3	3
4세반	1	1	2	2	2	3	3	3
5세반	1	2	2	2	3	3	3	4

3학급의 경우,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3세반, 4세반, 5세반이 1개 학급씩 구성된 것으로 한다. 연령별로 학급당 이용아 수는 3세 15명, 4, 5세는 각각 20명으로 설정했다. 연령별 학급당 이용아 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연구진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이후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로 명명함.

〈표 V-3-2〉 규모별 이용아 수

단위: 명

구분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계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3세반	15	15	15	30	30	30	45	45
4세반	20	20	40	40	40	60	60	60
5세반	20	40	40	40	60	60	60	80

**라.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산출항목 구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항목 각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인건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이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 항목만으로 구성하였다. 교재교구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구와 설비, 재료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며,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표 V-3-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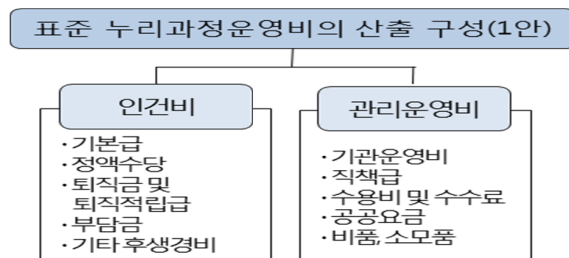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표준누리과정 운영비		비고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표준 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급여	인건비	기본급	1안에서 제외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정액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시간외 수당 정액				
표준 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구비	비품 및 소모품은 운영비에 포함	
	재료비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실외 설비비		
			비품		재료비		



(표 V-3-3 계속)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표준누리과정 운영비		비고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설비비		소모품			
표준 공통 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운영 비	기관운영비	관리 운영 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여비, 차량비 제외/ 교재교구 비의 비품, 소모품 포함
			직책급		직책급	
	회의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수용비·수수료			
기본적 경비	연료비	공공요금	<b>비품, 소모품</b>			
학생복리비	차량비					
	식단 가	식단 가	급간식 재료비	식단 가	급간식 재료비	1안에서 제외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시설 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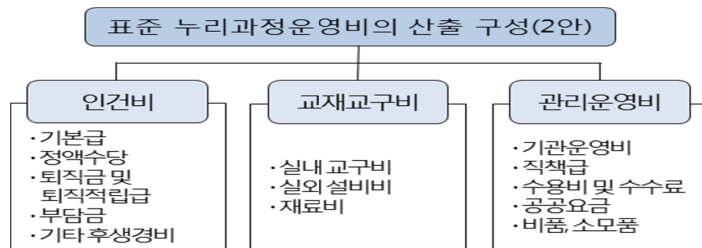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기에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한 안을 1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V-3-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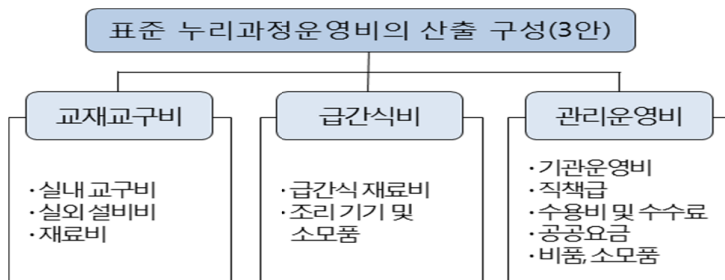
1안을 토대로 전문가 현장자문과 서면검토를 거친 결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요인인 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이 제시한 1안을 포함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구성(안)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한 바 있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다면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안으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수준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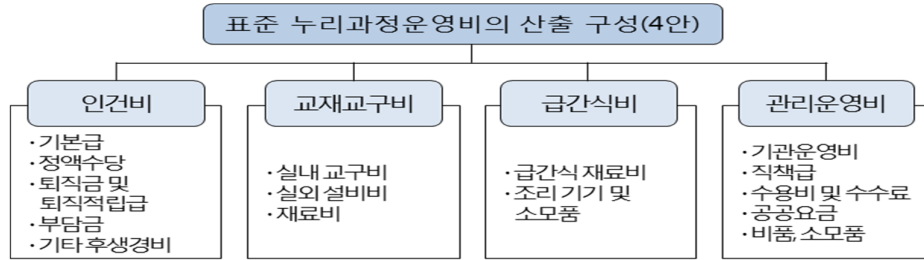
[그림 V-3-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2안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2015. 2. 2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급간식비를 포함한 항목을 3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V-3-4]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3안

4안은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고려하고,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림 V-3-5]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4안

#### 4. 소결

본 장에서는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질적 수준을 고려한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연구를 분석한 결과,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구성 항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간식비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제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보육료 항목인 시설설치비와 개보수 관련 비용 등도 표준유아교육비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이 일정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를 전제한 상태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산출은 비용 산출을 위한 개념에서부터 기관의 설립 배경,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항목, 산출 기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 개발을 위해서 동일한 조건(상황)을 전제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공통 항목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표준인건비의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이었으며, 표준공통운영비의 학생복지비로 나타났다.

다.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항목 및 구성요소 중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가 모두 표준보육료의 비품 및 소모품은 관리운영비로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 산출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현장의 요구,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VI. 논의 및 제언

###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에 대한 논의

#### 가. 표준유아교육비 개념에 대한 오해: 표준유아교육비 vs 1인당 지출 비용

##### 1)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산출방식은 연구자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강경석, 2006)로 규정하기도 하고,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총 투입비용을 추산하여 소요되는 아동 1인당 비용으로 규정(김현숙, 2008)하기도 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은 산출 목적과 연계되므로 연구들이 지향하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산출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실제 소요되는 유아교육비와는 차이가 존재하기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서 선행연구인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2014)가 제시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률 상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19)'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에 근거하였기에 실제 학급당 원아 수, 교직원 수의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가 일정 수준이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 2) 유아교육 지출에 대한 유아 1인당 비용

본 연구에서는 기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와 현실 수준의 유아교육비를 비교하기 위해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비용함수에 의해 산출된 유아교육비는 공·사립유치원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비용투입 수준을 감안하여 산출된 비용이다. 비용함수 모형은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와 실제 교육비 지

출 변수,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수준을 산출하는 것으로(엄문영·오범호·윤홍주, 2013) 성취도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유아교육 단계에서 산출시 적용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 변수를 정원충족률로 대체하여 산출하였으나 유치원이 지역별로 편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원충족률을 기관의 질적 수준과 연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표준교육비 산출연구(즉,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 가상적인 학교 또는 협력 학교를 통해 인적, 공간적, 활동적, 물적 자원 등을 도출하고, 이들의 단가, 횡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본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산출한 방식과 비교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의 활용: 예산 배분 vs 예산 확보

### 1) 원비 인상을 상한제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비의 현실 수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는 원비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2017년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결정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11. 1). 따라서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교육부 보도자료, 2016. 11. 1)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 산출된 유아교육비를 활용하게 된다.

### 2) 유아교육비 현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임을 감안하면 향후 유아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준유치원 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이 된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 17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2. 유아교육비 지원의 쟁점

### 가. 예산 관련 법령상 쟁점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무상교육의 대상을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법령이 무상교육 대상을 ‘유아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보육’을 받는 유아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감사원, 2016).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커리큘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을 일원화한 것이다. 유아 대상의 교육과 보육은 학령기 이상의 형식적 교육과는 개념적 속성을 달리하므로 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교육의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는 보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법률이며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감사원, 2016).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비용의 책임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하위 법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책임분배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는 입장(김아름, 2015: 148)도 있다. 정남철과 정선아(2015)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한 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5세 누리과정은 기관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며 누리과정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것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재정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공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만 3~5세 대상의 교육·보육과정의 일원화를 통해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는 OECD에서 권고하고, 지향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향후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가속화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

## 나. 유한한 재정 총량으로 인한 반복적인 갈등

### 1) 지방교육재정의 유한한 총량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편성하지 않는 등 보육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연합뉴스, 2016)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교육청 교부예산을 전년 대비 4조 6,834억원 증액하여 총 45조 9,118억원으로 책정하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11.01.; 서울신문, 2016.10.03.). 그러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신설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나누어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서울신문, 2016).

2016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광주, 전북, 강원 교육청은 유치원 일부와 어린이집 전부의 예산을,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는 유치원 일부와 어린이집 일부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감사원, 2016) 최근 경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예산을 편성(2016. 10. 21 기준)한 상황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공방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어



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거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유한한 재정 총량과 시·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본질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갈등으로 법적 쟁점보다 근원적인 것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중 어느 재원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교육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원을 제한하고 교부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내년도 누리과정 재정 편성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6).

3~5세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 여부 및 정도 안정성 등이 달라지는 것은 차별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럽에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재정지원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와 시간의 특정 양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할당하기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 정부가 필수 시간(예를 들어, 주당 20시간)에 해당 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지원을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과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 항목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다. 유아교육재정 지원체계 개편

### 1) 질 제고를 지향점으로 하는 재정지원 체계 개편

본 연구에서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공립 47만 9천 원, 사립 47만 3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표준인건비를 제외하면 공립 17만 7천 원, 사립 20만 9천 원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지원되

고 있는 유아학비 22만 원은 사실상 표준유아교육비에 근접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이에 따라 누리과정지원비가 일정 조건(인적, 물적)을 갖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지원비 외에 유치원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월평균 46만 원으로 이는 누리과정지원비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 교육비(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 7만 원), 이 외에도 교육활동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비를 포함한 비용이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인건비 미지원 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당 지원 예산은 평균 456백만 원(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40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유아교육에 적지 않은 재정(GDP의 1%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최은영·최효미·김정민, 2015). 정부지원의 최소시간을 설정하고, 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 2)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근거한 비용 지원

누리과정지원비 22만 원은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4~5시간, 어린이집의 법적 운영시간인 12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 상의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비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현장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정부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라 고도 인식한다(신은수·박은혜, 2012). 유럽의 경우도, 취학전 무상교육·보육은 주로 주당 무상교육 시간으로 제공되며, 무상교육·보육 시간 안에 급간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인 4~5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설정하여 누리과정 운영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지원 시간에 따른 비용지원 체계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 3) 누리과정 이외 시간에 대한 차등 지원

정부는 누리과정지원비 22만 원 외에 방과후 과정 교육비(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 7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유아에게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기준, 취원아의 67.5%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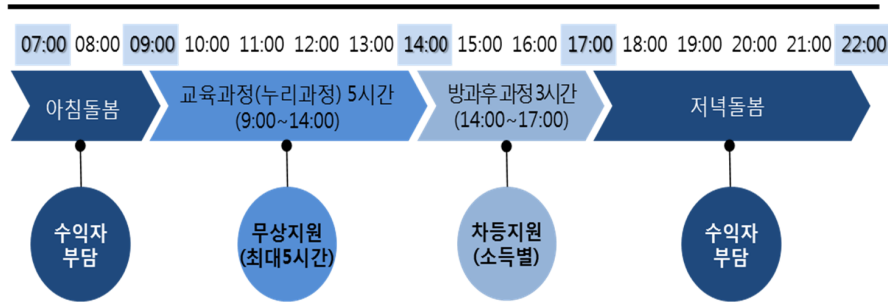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어 현재 모든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방과후 과정의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중요한 요소는 부모를 위한 선별적 지원이다. 부모 수당, 세금 경감은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이용과는 무관한 보편적 권리며, 기관 이용에 따른 세금경감 혜택, 바우처 제공 등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이용을 장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육 지원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재정립하고, 이용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4) 돌봄 시간의 수익자 부담

교육기관으로써 유치원이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누리과정은 무상지원을, 이후 시간은 소득별 차등지원을 선호(58.1%)하는 것으로 나타난(장명림, 2013. 1. 10; 최은영·김은영·이세원, 2013) 결과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한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2013년 5세 누리과정이 3, 4세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보편 교육복지의 시대를 맞이했으나 전체 유아교육 재정의 50% 이상이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에 배분되고 있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집단의 지원은 최소화된 상태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보편지원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유아교육 재정지원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면 [그림 VI-2-1]과 같다.



[그림 VI-2-1] 유아교육재정 지원체계 개편(안)

###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제언

2013년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고, 양 기관이 동일하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5세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과 산출 항목을 설정하였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산출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나.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의 정교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은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따른 학급 수, 이용아 수를 제시하였다.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의 표준학급 수는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수치로 학급 편성을 고연령 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표준이용아 수는 만 3세 15명, 만 4, 5세 각각 20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이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모형으로 판단되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향후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 및 구성요소의 적합성 재검토

비용 산출을 위한 산출항목 및 구성요소에 따라서 산출결과가 달라지게 때문에 항목에 대한 객관성 담보도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보육료 개념에는 12시간 전일 보육이 포함되어 급식비, 차량비 등이 모두 '보육료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급식비와 차량비 등이 대부분 '수익자부담 경비'이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는 반면(보건복지부, 2012), 유아교육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 외,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2015. 2. 2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에 급식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1인)을 크게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로 구분하였으며, 표준보육료의 구성 요소인 급간식비, 차량운영비는 제외하고, 기타 안을 포함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과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감사원(2016). 감사보고서-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 강경석(2003). 유치원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 따른 표준유아교육 활동경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1-24.
- 강경석(2005).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4), 175-198.
- 강경석(2006).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103-133.
- 공은배·서혜애·김규태·권재현(2011). 유 초 중 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 지원 결산 및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16.11.01).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 -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자율성 확대 중점 -
- 교육부(2013.12.31). KERIS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 실적. 내부자료.
- 교육부(2014.09.30).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 교육부(2014a). KERIS 2014년도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 수.
- 교육부(2014b).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
- 교육부(2015a).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부자료
- 교육부(2015b). 유치원 14년 결산. 내부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02.14.).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발족.

- 김아름(2015). 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9, 129-164.
- 김영태·심익섭(2014).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5, 45-68.
-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 (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재규·공은배·백성준·이원영(1994).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29-50.
- 김지하·김용남·김창환·김중환·노선옥·최은영·엄문영·우명숙·김태환·공은배(2015).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숙(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46-57.
- 김현숙(2008). 표준유아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일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161-188.
- 김현숙(2009). 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21-40.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승실대학교.
- 김혜금(2010). 보육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김혜금·임양미·조혜영(2013). 가정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정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7-78.
- 남수경·윤홍주·이희숙·안미라·이쌍철·이호준(2016).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성은·이진경(2013).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4), 461-481.
- 민인식·최필선(2012). 패널 데이터 분석 STATA. 서울: (주)지필미디어.
- 백일우·권재현(2006).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분석을 통한 규모 및 운영의 적정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1), 243-226.

- 보건복지부(2012).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b). 표준 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a).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신은수·박은혜(2012). 유아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구성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정 비교를 기반으로. 유아교육학 논집, 16(3), 71-91.
- 엄문영·오범호·윤홍주(2013).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연구, 22(1), 113-138.
- 우명숙·박은혜·김지하·김현철·김중환·김지만·이정식·김상희(2012). 유치원 표준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윤홍주(2003). 교육재정 적정성의 논의 및 공평성과의 관련성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1(3), 147-168.
- 윤홍주(2012).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145-171.
- 윤홍주(2014). 전문가판단모형 및 비용함수모형에 의한 초등학교 적정교육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1), 103-129.
-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승희·박지은(2006)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연구, 15(1), 57-79.
- 임양미(2010). 경기도 민간가정시설보육료 산정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양미(2013).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 45-69.
- 장명림(2013). 누리과정 비용 지원, 현실적 방안 마련되어야...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숙·강경석(2005). 종일제 유치원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413-434.
- 정남철·정선아(2015).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토지



공법연구, 69, 303-328.

- 최은영·김은영·이세원(2013). 유아교육·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2014).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분석자료. 내부자료.
-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한용기·최준렬·서금택(2009). 시·도간의 초등학교 표준교육비 비율 및 배분준거 분석. 가정보육연구, 2(1), 52-73.
- 홍지영·정동욱(2012).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 교육비의 산출 분석: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1(4), 1-26.
- Downes, T. (2004). School finance reform and school quality: Lessons form Vermont I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evelopments in School Finance: 2003 (pp. 93-116).
- Duncombe, W., & Lukemeyer, A. (2002). Estimating the Cost of Educational Adequacy:A Comparison of Approaches. American Education Finance Association 2002 Annual Conference.
-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4 Edition.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Imazeki, J. (2008). Assessing the costs of adequacy in California public schools: A cost function approach. Cambridge:: MIT Press.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3.1. A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2011).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6. 5. 6  
인출.

[신문기사]

서울신문(2016.10.03.). [월요 정책마당] 누리과정 특별회계 안착 힘 모으자/이영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2016.09.21.). '보육대란' 위기 올해로 끝나나... 누리과정 해법 주목.

파이낸셜뉴스(2016.10.06.). 14개 시·도교육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  
성 거부”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유치원 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est.go.kr/>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tat.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Abstract

### Estimating the Standard Cost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2016

Eun-Young Choi, Nayoung Kim, Yoonkyung Choi, Moonyoung Eom

The study on calculating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cost aimed at finding out the demand for additional fin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oviding reasonable and scientific data about it. This is the fourth-year study for calculating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For this, we examined the law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for the expense, and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In addition we analyzed settlement of accounts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of kindergartens in 2014 obtained through "e-childschoolinfo" site. Data from 196 public and 413 private kindergartens of 804 kindergartens which had been recruited in 2013 were analyzed. In addition, we interviewed 853 directors in charge of account from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to construct standard calculation item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child care fee. We asked experts from academia and field for advice in reviewing contents and validity of questionnaires, and diagnosing and suggesting the policies.

The major result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the annual average expenditure of public kindergartens was 475.8 million won and the monthly expenditure per child was 410,000 won. The annual average expenditure of private kindergartens was 547.7 million won, and the monthly expenditure per child was 446,000 won. Second, the monthly expense per child of private kindergarten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public kindergarten by analysis of recent three-year financial statements(2012-2014) using statistical method such as cost function model. Third, we calculated standard labor cost, standard education activity cost, and standard common operation cost from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in 2016. The total standard labor cost of kindergartens was 2.103.7 billion won, and the cost per child was 3,290,000 won a year and 275,000 won a month in 2016. The total standard education activity cost was 452,600,481,000 won, and the cost per

child was 710,000 won a year and 59,000 won a month. On the other hand, the total standard common operation cost of public kindergartens was 226,407,427,000 won and that of private kindergartens was 850,910,592,000 won, totalling up to 1,773,180,190,000 won. Fourth, the total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was 3,633,644,046,000 won, of which it was 1,016,201,304,000 won for public kindergartens and it was 2,617,442,742,000 won for private kindergartens. Of the three composing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standard labor cost accounted for 57.9%, followed by standard common operating cost 29.7% and standard education activity expense 12.5%.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by the size of institution was estimated. It was 1,421,502,483,000 won for large institutions, 1,286,687,413,000 won for medium institutions, and 925,454,150,000 won for small institutions.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per child was 1,451,000 won for small institution, 2,017,000 won for medium institution and 2,228,000 won for large institution. The larger the institution was, the higher the expense was. Finally, to estimate standard comm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childcare fee, we examined existing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we defined standard comm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child care fee as 'minimum expense necessary for carrying out educational activities of 3-5 year Nuri curriculum, ensuring their quality'. According to this, standard operation expense calculation items of Nuri curriculu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 discussed and suggested as follows. First, we pointed out that there was misunderstanding of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and that the concept of the expense could be differed depending on utilization of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 Second, we reviewed legal issues to support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nse(Nuri curriculum expense) and suggested the revision of financial supporting system for the education. Finally, for further study on estimating standard operation expense of Nuri curriculum, we suggested conceptual definition and examination of suitability for elaboration and validation of the calculating model.

## 부 록

---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6년 연구과제인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 대상은 각 기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원장, 원감, 교사 등으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등 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통계법」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02-398-7782) 부연구위원, [eyny@kicce.re.kr](mailto:eyny@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02-398-7761) 연구원, [yjy465@kicce.re.kr](mailto:yjy465@kicce.re.kr)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 항목의 구성 요소**

1. 다음에 제시된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 및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용어설명> 표준유아교육비 :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때 적정 교육수준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20(3세는 1:15)임을 가정)

산출 항목	표준유아교육비(I)		구성 요소	내용	필요 여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I-1.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정규직 직원)	①	②	가.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①	②
			나. 교원 및 직원의 체수당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①	②
			다. 맞출형복지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 기준	①	②
			라. 법정 부담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 기준	①	②
I-2. 표준교육활동경비	①	②	가. 교구비	교육과정 수행 시 필요한 1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지닌 교재·교구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②
			나. 재료비	교육과정 수행 시 필요한 즉시 소모되거나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재료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②
			다. 설비비	교육과정 수행 시 필요한 설비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②
			가. 비정규직 인건비	연봉액,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 가산금, 법정부담금, 퇴직금	①	②
I-3. 표준공통운영비	①	②	나. 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검사수수료	①	②
			다. 기본적 경비	학교일반운영(일반운영비, 일속직비, 여비, 임무추진비, 유치원위생 관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 학습지원실운영(교육정보실 운영, 도서관 운영), 교육여건개선사업(사무집기 및 비품, 급식기구), 시설물유지관리	①	②
			다. 학생복지비	학교안전공제회비, 약품구입, 학급운영비, 유치원생 건강관리	①	②



2. 다음에 제시된 기존의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에 모두 체크** 하여 주십시오.

※ <용어설명> 표준보육료 : 어린이집이 사회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

표준보육료(II)					
산출 항목	필요 여부		구성요소	필요 여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II-1. 인건비	①	②	가. 급여	①	②
			나. 퇴직금, 퇴직적립금	①	②
			다. 사회보험 부담금	①	②
			라. 시간외 수당 정액	①	②
II-2. 교재교구비	①	②	가.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①	②
			나.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①	②
			다. 비품	①	②
			라. 소모품	①	②
II-3. 관리운영비			가. 기관운영비	①	②
			나. 직책급	①	②
			다. 회의비	①	②
	①	②	라. 여비	①	②
			마. 수송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①	②
			바. 연료비	①	②
II-4. 식단가	①	②	사. 차량비	①	②
			가. 급간식 재료비	①	②
			나. 조리 기기 및 소모품	①	②
II-5. 시설비 (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①	②	가.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①	②
			나. 시설유지관리비	①	②

3.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산출 항목	구성요소	필요 여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표준 유아 교육비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정규직 직원)	가.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①	②
		나. 교원 및 직원의 계수당	①	②
		다. 맞출항목지비	①	②
	표준교육활동경비	라. 법정 부담금	①	②
		가. 교구비	①	②
		나. 재료비	①	②
	표준공통운영비	다. 설비비	①	②
		가. 비정규직 인건비	①	②
		나. 공공요금	①	②
		다. 기본적 경비	①	②
		라. 학생복리비	①	②
		가. 급여	①	②
인건비	나. 퇴직금, 퇴직직립금	①	②	
	다. 사회보험 부담금	①	②	
	라. 시간외 수당 정액	①	②	
	가.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①	②	
	나.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①	②	
	다. 비품	①	②	
교재교구비	라. 소모품	①	②	
	가. 기관운영비	①	②	
	나. 직책급	①	②	
	다. 회의비	①	②	
	라. 여비	①	②	
	마. 수용비·수수로 및 공공요금	①	②	
관리운영비	바. 연료비	①	②	
	사. 차량비	①	②	
	가. 급간식 재료비	①	②	
	나. 조리 기기 및 소모품	①	②	
	가.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①	②	
	나. 시설유지관리비	①	②	
표준보육료	식단가	가. 건축비 (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①	②

4. 위에 제시된 항목 외에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구성 요소를 적어주십시오.**

--

5.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각각의 세부 구성요소 중에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예: 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 → 표준인건비)

--

6. **표준유아교육·보육 통합 비용 산출을 위한 기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II. 응답자 일반정보**

(1) 성 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2) 연 령	만 _____ 세
(3) 경 력	유치원: _____ 년		어린이집: _____ 년	총: _____ 년
(4) 전 공	<input type="checkbox"/> ①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가족)학	<input type="checkbox"/> ③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④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
(5) 기관소재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③ 읍면지역	
(6) 기관 실험유형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① 공립단실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법인 <input type="checkbox"/> ④ 사립사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 <input type="checkbox"/> ⑤ 직장 <input type="checkbox"/> ⑥ 가정
(7) 직 위	<input type="checkbox"/> ① 원장	<input type="checkbox"/> ② 원감	<input type="checkbox"/> ③ 부장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_____ )

##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부록 표-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2.7	97.3	3.0	97.0	3.3	96.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4.3	95.7	4.8	95.2	4.5	95.5	100.0(418)
어린이집	1.1	98.9	1.4	98.6	2.1	97.9	100.0(435)
$\chi^2(df)$	8.097(1)**		8.365(1)**		4.118(1)*		
지역규모							
대도시	2.6	97.4	3.4	96.6	3.4	96.6	100.0(468)
중소도시	1.3	98.7	2.6	97.4	2.6	97.4	100.0(233)
읍면	5.3	94.7	2.6	97.4	3.9	96.1	100.0(152)
$\chi^2(df)$	5.611(2)		0.483(2)		0.606(2)		
설립유형							
유치원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5)
공립병설	6.9	93.1	2.7	97.3	3.2	96.8	100.0(188)
사립법인	1.7	98.3	8.5	91.5	6.8	93.2	100.0(59)
사립사인	2.6	97.4	6.4	93.6	5.8	94.2	100.0(156)
$\chi^2(df)$	5.905(3)		na		na		

\*  $p < .05$ , \*\*  $p < .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2〉 표준인건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교원 및 직원의 세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 부담금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함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1.9	98.1	1.8	98.2	14.5	85.5	17.5	82.5	100.0(830)
기관유형									
유치원	0.8	99.3	1.5	98.5	12.0	88.0	13.8	86.3	100.0(400)
어린이집	3.0	97.0	2.1	97.9	16.7	83.3	20.9	79.1	100.0(430)
$\chi^2(df)$	5.664(1)*		0.411(1)		3.771(1)		7.410(1)**		
지역규모									
대도시	2.4	97.6	1.5	98.5	17.8	82.2	21.7	78.3	100.0(456)
중소도시	1.7	98.3	1.3	98.7	10.4	89.6	13.9	86.1	100.0(230)
읍면	0.7	99.3	3.5	96.5	10.4	89.6	9.7	90.3	100.0(144)
$\chi^2(df)$	na		na		8.940(2)*		13.701(1)**		

(부록 표-2 계속)

설립유형										
유치원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	6.7	93.3	100.0(15)
	공립병설	1.1	98.9	1.1	98.9	6.3	93.7	7.4	92.6	100.0(175)
	사립법인	0.0	100.0	1.7	98.3	13.8	86.2	13.8	86.2	100.0(58)
	사립사인	0.7	99.3	2.0	98.0	19.1	80.9	21.7	78.3	100.0(152)
$\chi^2(df)$	na		na		14.846(3)**		14.653(3)**			

\*  $p < .05$ , \*\*  $p < .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3〉 표준교육활동경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함	
전체	1.3	98.7	3.7	96.3	4.1	95.9	100.0(827)
기관유형							
유치원	1.0	99.0	1.5	98.5	4.0	96.0	100.0(398)
어린이집	1.6	98.4	5.8	94.2	4.2	95.8	100.0(429)
$\chi^2(df)$	0.618(1)		10.679(1)**		0.016(1)		
지역규모							
대도시	1.5	98.5	4.6	95.4	4.9	95.1	100.0(452)
중소도시	0.9	99.1	3.5	96.5	2.2	97.8	100.0(227)
읍면	1.4	98.6	1.4	98.6	4.7	95.3	100.0(148)
$\chi^2(df)$	na		3.398(2)		2.896(2)		
설립유형							
유치원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5)
공립병설	0.5	99.5	1.1	98.9	5.5	94.5	100.0(183)
사립법인	0.0	100.0	0.0	100.0	1.9	98.1	100.0(54)
사립사인	2.1	97.9	2.7	97.3	3.4	96.6	100.0(146)
$\chi^2(df)$	na		na		na		

\*\*  $p < .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4〉 표준공통운영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7.0	93.0	7.8	92.2	5.0	95.0	5.3	94.7	100.0(825)
기관유형									
유치원	7.3	92.7	6.3	93.7	4.0	96.0	2.0	98.0	100.0(399)
어린이집	6.8	93.2	9.2	90.8	5.9	94.1	8.5	91.5	100.0(426)
$\chi^2(df)$	0.067(1)		2.404(1)		1.507(1)		16.954(1)***		

(부록 표4 계속)

지역규모									
대도시	7.5	92.5	8.6	91.4	6.2	93.8	6.6	93.4	100.0(452)
중소도시	6.2	93.8	7.9	92.1	3.1	96.9	2.2	97.8	100.0(227)
읍면	6.8	93.2	4.8	95.2	4.1	95.9	6.2	93.8	100.0(146)
$\chi^2(df)$	0.433(2)		2.280(2)		3.375(2)		6.128(2)*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5)
공립병설	6.6	93.4	4.9	95.1	6.0	94.0	1.6	98.4	100.0(182)
사립법인	5.5	94.5	9.1	90.9	0.0	100.0	0.0	100.0	100.0(55)
사립사인	9.5	90.5	7.5	92.5	3.4	96.6	3.4	96.6	100.0(147)
$\chi^2(df)$	na		na		na		na		

\*\*\*  $p < .001$ , \*  $p < .05$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5〉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식단가		시설비		계(수)
	불필요	필요함	불필요	필요함	불필요	필요함	불필요	필요함	불필요	필요함	
전체	2.3	97.7	4.0	96.0	4.2	95.8	4.5	95.5	7.3	92.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3.6	96.4	5.5	94.5	7.7	92.3	6.7	93.3	9.6	90.4	100.0(418)
어린이집	1.1	98.9	2.5	97.5	0.9	99.1	2.3	97.7	5.1	94.9	100.0(435)
$\chi^2(df)$	5.539(1)*		4.925(1)*		23.927(1)***		9.694(1)**		6.438(1)*		
지역규모											
대도시	2.8	97.2	4.5	95.5	5.1	94.9	5.6	94.4	8.3	91.7	100.0(468)
중소도시	0.9	99.1	3.0	97.0	3.9	96.1	3.4	96.6	4.7	95.3	100.0(233)
읍면	3.3	96.7	3.9	96.1	2.0	98.0	2.6	97.4	7.9	92.1	100.0(152)
$\chi^2(df)$	3.224(2)		0.895(2)		2.926(2)		3.090(2)		3.119(2)		
설립유형											
국공립	1.3	98.7	4.0	96.0	1.3	98.7	1.3	98.7	4.0	96.0	100.0(75)
어 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8)
린 법인/단체	2.8	97.2	5.6	94.4	5.6	94.4	5.6	94.4	5.6	94.4	100.0(36)
이 민간	1.9	98.1	3.2	96.8	0.6	99.4	1.9	98.1	6.3	93.7	100.0(158)
집 직장	0.0	100.0	2.3	97.7	0.0	100.0	4.7	95.3	7.0	93.0	100.0(43)
가정	0.0	100.0	0.0	100.0	0.0	100.0	1.9	98.1	3.8	96.2	100.0(105)
$\chi^2(df)$	na		na		na		na		na		

\*  $p < .05$ , \*\*  $p < .01$ , \*\*\*  $p < .0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6〉 인건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급여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시간외 수당 정액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0.4	99.6	2.3	97.7	3.0	97.0	7.8	92.2	100.0(833)
기관유형									
유치원	0.5	99.5	3.0	97.0	4.0	96.0	7.2	92.8	100.0(403)
어린이집	0.2	99.8	1.6	98.4	2.1	97.9	8.4	91.6	100.0(430)
$\chi^2(df)$	na		1.700(1)		2.518(1)		0.400(1)		
지역규모									
대도시	0.0	100.0	2.9	97.1	3.7	96.3	9.0	91.0	100.0(455)
중소도시	0.9	99.1	1.7	98.3	1.7	98.3	4.8	95.2	100.0(231)
읍면	0.7	99.3	1.4	98.6	2.7	97.3	8.8	91.2	100.0(147)
$\chi^2(df)$	na		1.549(2)		2.163(2)		4.114(2)		
설립유형									
국공립	0.0	100.0	0.0	100.0	1.4	98.6	2.7	97.3	100.0(74)
어 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0.0	100.0	5.6	94.4	100.0(18)
린 법인/단체	0.0	100.0	5.7	94.3	5.7	94.3	11.4	88.6	100.0(35)
이 민간	0.6	99.4	0.6	99.4	1.9	98.1	8.4	91.6	100.0(155)
집 직장	0.0	100.0	4.7	95.3	4.7	95.3	4.7	95.3	100.0(43)
가정	0.0	100.0	1.9	98.1	1.0	99.0	13.3	86.7	100.0(105)
$\chi^2(df)$	na		na		na		na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7〉 교재교구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살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살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비품		소모품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0.5	99.5	2.8	97.2	4.4	95.6	7.7	92.3	100.0(819)
기관유형									
유치원	0.3	99.7	1.5	98.5	3.5	96.5	5.6	94.4	100.0(395)
어린이집	0.7	99.3	4.0	96.0	5.2	94.8	9.7	90.3	100.0(424)
$\chi^2(df)$	na		4.647(1)*		1.316(1)		4.842(1)*		
지역규모									
대도시	0.2	99.8	3.4	96.6	4.5	95.5	8.7	91.3	100.0(447)
중소도시	1.3	98.7	3.1	96.9	5.3	94.7	6.6	93.4	100.0(226)
읍면	0.0	100.0	0.7	99.3	2.7	97.3	6.2	93.8	100.0(146)
$\chi^2(df)$	na		2.972(2)		1.409(2)		1.506(2)		

(부록 표-7 계속)

설립유형										
국공립	0.0	100.0	1.4	98.6	1.4	98.6	4.2	95.8	100.0(72)	
어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8)	
린법인/단체	2.9	97.1	2.9	97.1	8.8	91.2	14.7	85.3	100.0(34)	
이민간	0.7	99.3	3.3	96.7	7.8	92.2	12.4	87.6	100.0(153)	
집직장	0.0	100.0	4.8	95.2	2.4	97.6	7.1	92.9	100.0(42)	
가정	1.0	99.0	7.6	92.4	4.8	95.2	10.5	89.5	100.0(105)	
$\chi^2(df)$	na		na		na		na			

\*  $p < .05$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8〉 관리운영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여비		수용비·수주료 및 광고요금		연료비		차량비		계(수)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진체	4.2	95.8	6.5	93.5	16.6	83.4	12.7	87.3	4.5	95.5	6.9	93.1	15.1	84.9	100(817)
기관유형															
유치원	2.6	97.4	8.3	91.7	20.2	79.8	10.4	89.6	3.4	96.6	6.0	94.0	9.8	90.2	100(386)
어린이집	5.6	94.4	4.9	95.1	13.5	86.5	14.8	85.2	5.6	94.4	7.7	92.3	19.7	80.3	100(431)
$\chi^2(df)$	4.527(1)*		3.921(1)*		6.687(1)*		3.690(1)		2.281(1)		0.920(1)		15.534(1)		
지역규모															
대도시	4.5	95.5	6.1	93.9	16.9	83.1	14.6	85.4	4.5	95.5	8.1	91.9	20.7	79.3	100(444)
중소도시	3.1	96.9	4.5	95.5	12.9	87.1	10.7	89.3	4.0	96.0	4.0	96.0	8.0	92.0	100(224)
읍면	4.7	95.3	10.7	89.3	21.5	78.5	10.1	89.9	5.4	94.6	7.4	92.6	8.7	91.3	100(149)
$\chi^2(df)$	0.842(2)		6.070(2)*		4.735(2)		3.228(2)		0.379(2)		3.981(2)		24.444(2)		
설립유형															
국공립	9.5	90.5	6.8	93.2	13.5	86.5	10.8	89.2	0.0	100.0	8.1	91.9	31.1	68.9	100(74)
어 사회복지법인	5.6	94.4	5.6	94.4	11.1	88.9	11.1	88.9	0.0	100.0	0.0	100.0	0.0	100.0	100(18)
린 법인/단체	5.9	94.1	14.7	85.3	20.6	79.4	20.6	79.4	11.8	88.2	5.9	94.1	20.6	79.4	100(34)
이 민간	6.4	93.6	3.2	96.8	15.9	84.1	17.8	82.2	7.6	92.4	7.6	92.4	10.8	89.2	100(157)
집 직장	4.7	95.3	7.0	93.0	11.6	88.4	9.3	90.7	7.0	93.0	11.6	88.4	37.2	62.8	100(43)
가정	1.9	98.1	1.9	98.1	8.6	91.4	14.3	85.7	2.9	97.1	7.6	92.4	21.0	79.0	100(105)
$\chi^2(df)$	na		na		4.666(5)		4.218(5)		na		na		26.719(5)		

\*  $p < .05$ , \*\*\*  $p < .0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단위 : %(명)

〈부록 표-9〉 식단가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급간식 재료비		조리 기기 및 소모품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0.7	99.3	7.6	92.4	100.0(815)
기관유형					
유치원	0.3	99.7	7.2	92.8	100.0(390)
어린이집	1.2	98.8	8.0	92.0	100.0(425)
$\chi^2(df)$	na		0.195(1)		
지역규모					
대도시	0.9	99.1	8.1	91.9	100.0(442)
중소도시	0.4	99.6	3.1	96.9	100.0(225)
읍면	0.7	99.3	12.8	87.2	100.0(148)
$\chi^2(df)$	na		12.414(2)**		
설립유형					
국공립	0.0	100.0	9.5	90.5	100.0(74)
어사회복지법인	0.0	100.0	5.6	94.4	100.0(18)
린법인/단체	0.0	100.0	17.6	82.4	100.0(34)
이민간	1.3	98.7	8.4	91.6	100.0(155)
집 직장	2.4	97.6	4.9	95.1	100.0(41)
가정	1.9	98.1	4.9	95.1	100.0(103)
$\chi^2(df)$	na		na		

\*\*  $p < .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록 표-10〉 시설비 구성요소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9.0	91.0	1.3	98.7	100.0(791)
기관유형					
유치원	6.6	93.4	1.1	98.9	100.0(378)
어린이집	11.1	88.9	1.5	98.5	100.0(413)
$\chi^2(df)$	4.944(1)*		na		
지역규모					
대도시	9.6	90.4	1.2	98.8	100.0(429)
중소도시	8.1	91.9	0.9	99.1	100.0(222)
읍면	8.6	91.4	2.1	97.9	100.0(140)
$\chi^2(df)$	0.410(2)		na		

(부록 표-10 계속)

설립유형					
국공립	6.9	93.1	0.0	100.0	100.0(72)
어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100.0(18)
민법인/단체	8.8	91.2	2.9	97.1	100.0(34)
이민간	6.1	93.9	2.0	98.0	100.0(148)
집직장	7.5	92.5	2.5	97.5	100.0(40)
가정	25.7	74.3	1.0	99.0	100.0(101)
$\chi^2(df)$		na		na	

\*  $p < .05$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연구보고 2016-30

---

---

##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선우정보인쇄 02-2272-6105~6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01-5 93370